2019년도 개정판

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똑똑누림



Global Inspiration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NURIM

일러두기

1.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2019.7.기준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활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책자는 복지정보 표기 시 서비스 기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기하였으며,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의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괄호 안에 등급을 표기하였습니다.
2. 본 책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장은 장애인복지 주요 이슈, 두 번째 장은 장애인·가족대상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생활영역별로 유형화하고, 마지막은 부록을 통해 복지용어와 장애인복지 개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하였습니다.
3. 발달장애인 및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책」, 「우리동네 복지시설」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www.ggnurim.or.kr

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똑똑누림

「똑똑누림」 활용가이드

01 WHY

「똑똑누림」은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 경기도 내 장애인 담당 공무원 및 장애인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장애인·가족 대상 복지정보 제공 시, 신속하고 간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중앙·도·31개 시·군의 복지정보 등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02 WHAT

「똑똑누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 2019년 장애인복지 이슈

장애인복지 정책 트렌드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Ⅱ. 장애인·가족 대상 복지서비스

- 2018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제도 및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 장애인·가족이 꼭 필요로 하는 주요 제도 및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 중앙·도·31개 시·군의 복지 제도 및 서비스를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Ⅲ. 부록

- 장애인·가족 상담 시,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용어를 설명하였습니다.
- 장애유형 및 개념 등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 장애등록·심사 절차와 이를 위한 지원 제도 및 서비스를 소개하였습니다.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을 소개하였습니다.

03 HOW

「똑똑누림」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장애인'** 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 를 확인하세요.
- **'경기인(人)'** 만 누릴 수 있는 서비스는 경기인 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도 중앙 서비스 내 '경기도 자체 사업' 혹은 '경기도 추가 지원사업' 등을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를 통해 중앙 서비스와 유사한 '시·군 자체 지원 서비스'를 담았습니다.
- '참고하기' 란을 통해 서비스 안내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함께 담았습니다.
- 「똑똑누림」 내용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1522-0420, 031-299-5034)**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똑똑누림」은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변경된 사항 혹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똑누림」 활용 시 참고하세요!

01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02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408,265원(2,152,214원(7인 기준) + 256,051원(7인 기준-6인 기준))

03 장애인·가족 상담 시 최다 문의 복지정보 ('18.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상담기준)

순위	상담분야	관련내용	페이지	비고
1순위	생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혜택, 긴급지원사업, 장학금, 학자금,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35, 50-52, 57, 150-152, 166-167, 230-231	
2순위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37, 54, 75, 77-78, 188	
3순위	취업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 창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	172, 174-175, 178	

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똑똑누림

contents 목차

「똑똑누림」 활용가이드

I 2019년 장애인복지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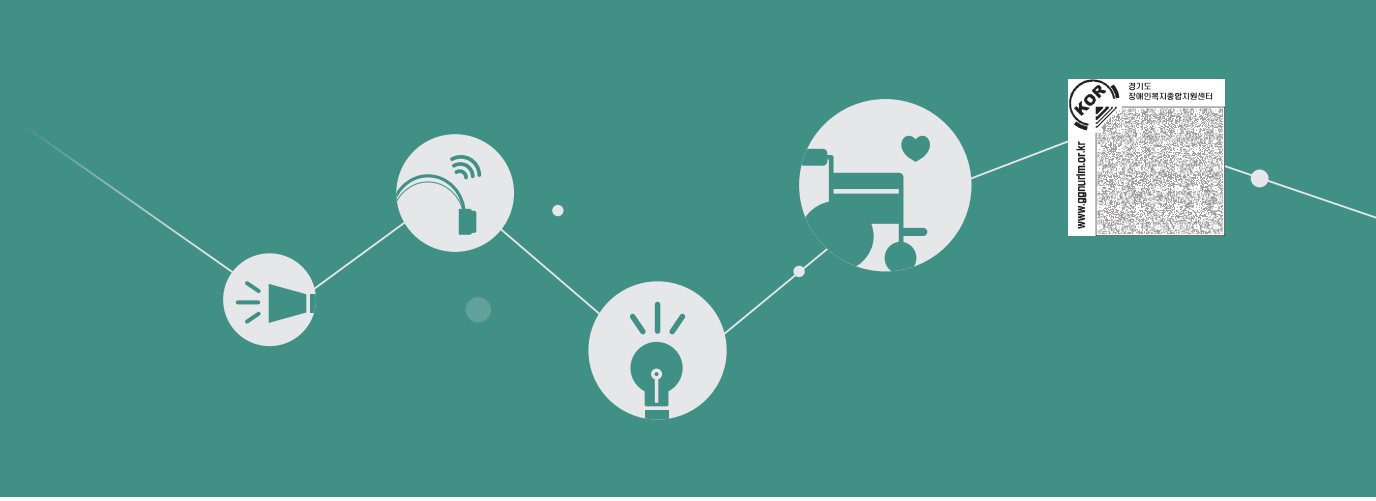
1. 장애등급제 폐지 011
2.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014
3.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017

II 장애인 · 가족 대상 복지서비스

PART 1 2019년 주요 변경사항 024

PART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03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035
2) 차상위지원 041
3)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050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4) 장애인 활동지원 052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054
6) 장애인 세제혜택 057



PART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060

1) 임신기(태아기) 061
2) 영유아기(0~6세) 091
3) 학령기(7~18세) 137
4) 성인기(19~64세) 163
5) 노년기(65세 이상) 197
6) 전생애 227

Ⅲ 부록

PART 1 복지용어 이해하기 316
PART 2 장애유형 320
PART 3 장애등록 · 심사 322

1) 장애등록 · 심사 323
2)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등 328

PART 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30

1)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소개 331
2)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안내 334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www.gdrtm.or.kr

I

2019년 장애인복지 이슈

01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내용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영역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세부내용	· 장애등급 → 장애정도로 개편 · 장애등급 폐지 – 1~6급 폐지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한 평가 매뉴얼 개선	· 장애특성, 생애주기별 서비스 선별 안내 시스템 구축 · 누락서비스 발굴 안내 · 서비스 이력관리 제도 확대
취지	· 의학적 기준에 의존한 획일적 서비스 탈피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가구 환경 등 보다 세밀한 고려	· 지원 필요 장애인 및 서비스 연계지원 강화
효과	· 장애등급 기준으로 지원되는 23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 서비스 탈락 후 소득·가구 구성 등 상황 변동시 자동 확인하여 재신청 안내

주요 제도 변경사항

• 장애 등록 및 심사

구분	기존	개편
심사결과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 2급, 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 5급, 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외	장애정도 미해당
추가심사사항	–	보행상장애,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서비스 재판정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인등록증	(명칭) 복지카드 (주요표기내용) 장애등급, 유효기한	(명칭) 복지카드 (주요표기내용) 장애정도*, 유효기한 등 * 장애정도는 '중증', '경증'으로 표기

※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기존의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 되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할 필요 없음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종합조사 개념: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욕구 ·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구분	기존(활동지원 인정조사)	개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서비스	· 활동지원	·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신청자격	· (활동지원) 장애등급 1~3급	·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모든 장애인 · (응급안전) 활동지원수급자
조사대상 유형	· 아동: 6~14세 · 성인: 15~64세	· 아동: 6~18세 · 성인: 19~64세
조사지표 구성	· 기본조사(성인 24개, 아동 22개) – 일상생활 기능평가, 장애특성, 사회환경 · 생활환경	· 기본조사(성인 36개, 아동 27개) –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 생활환경
조사주체	· (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 활용	· (활동지원) 인정 조사 점수 활용	· (활동지원, 응급안전) 종합조사점수 활용 · (보조기기, 거주시설, 주간활동) 일부 지표를 최소기준으로 활용

※ 지자체에서 교부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서비스가 대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2019년 7월		2020년		2022년
일상생활지원 분야		이동지원 분야		소득 · 고용지원 분야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알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특별교통수단, 주차구역 이용 등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등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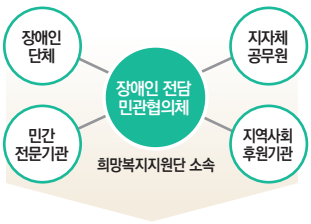


•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구분	기존	개편
초기상담	· 장애인복지서비스 안내문	· 맞춤형 서비스 안내문
타기관 서비스 연계	· 서비스 단순 안내	· 대상기관으로 의뢰 – 장애인고용공단, 보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사각지대에 포함되어 빈곤층 중심 서비스	· 장애인복지사각지대 개념 도입, 공적급여 누락 안내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	· 장애인연금 – 선정기준액 변경	· (미신청자 누락서비스 연계) 진단비, 검사비 등 각종 서비스 · (수급탈락자 사후관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 선정기준액 변경 – 사망 등 가구원 수 변경 · 장애인활동지원 – 독거가구
동행상담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실시	· (대상) 발달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시청각 중복 장애인 등 · (동행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민관협의체	–	· 시 · 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례관리

읍면동 → **시군구**





· 학대, 생계곤란 위기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
  * 독거 중증장애인,
  장애인·노인·아동 등으로 구성된 취약가구 등
·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동행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연계
· 장애인복지관과 전문적·지속적 사례관리

02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의미
  -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선도사업 추진 목적
  -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발굴 및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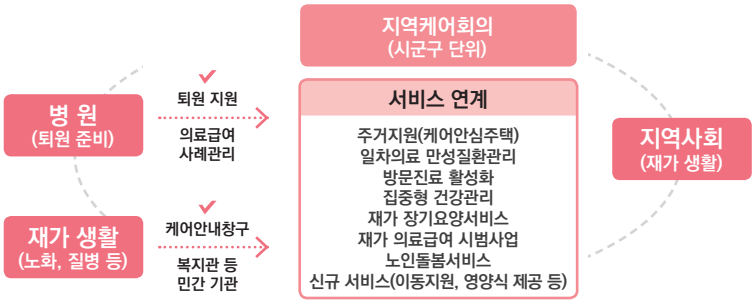
[초고령사회 진입('26.)]

1단계 ('18.~'22.)	2단계 ('23.~'25.)	3단계 ('26. 이후)
선도사업 실시('19.~) 및 핵심인프라 확충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커뮤니티케어 제공 보편화

노인 통합 돌봄 모델

- 예방·건강관리, 재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대상: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지역사회복귀를 희망하는 노인
- 지원 서비스
  -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여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구성·운영
  - 제공서비스 예시

· 병원의 '지역연계실': 퇴원계획 수립, 퇴원 전 미리 각종 서비스 연결
· 집 안에서 불편없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안전바닥재 설치 등)
· 거처가 없는 노인에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협력을 통해 케어안심주택 제공
· 저소득층 퇴원환자에게 재택의료, 돌봄, 가사 등 재가 의료급여와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식사 배달서비스 및 병원 외래 시 차량 지원
· 24시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



  - 선도사업 지자체: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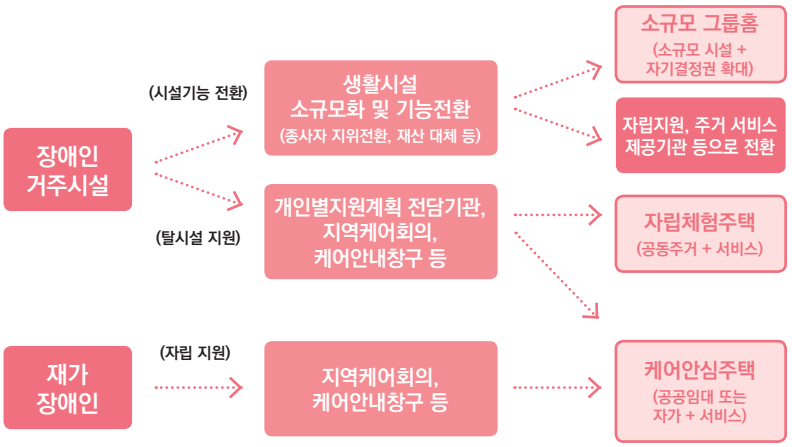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모델

• 개인별 지원계획에 근거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지원 통해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인권 제고

• 사업대상
-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장애심화, 부양가족 부재 등) 등으로 거주시설 입소를 불가피하게 고려하는 장애인

• 지원 서비스
-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 시설 욕구 조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담당자와 케어안내창구의 담당자가 협력하여 전문 상담 제공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구성·운영
- 제공서비스 예시

· 주거지원: 자립생활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의 주거모델 운영
· 소득지원: 자립정착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특례 등
· 고용지원: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등
· 보건의료: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및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활용 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 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이동지원 등
· 안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법률 지원, 스마트홈 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장애인건강주치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이동 지원
	지역사회중심재활	맞춤형 취업지원	자립정착금
	장애인활동지원	기초수급 특례	스마트홈서비스 등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법률자문 지원	

- 선도사업 지자체: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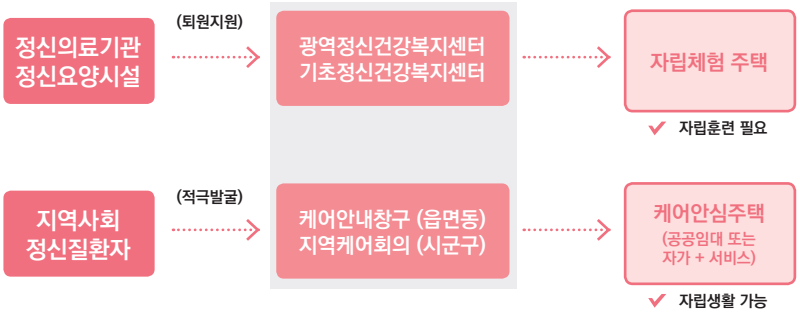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모델

•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 정신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호전되어 지역사회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

• 지원 서비스
-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생활 지원이 목적
- 병원 지역연계실 시범 설치·운영 및 퇴원예정자 정보 연계 등을 통한 통합 환자평가 및 퇴원계획 수립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구성·운영
- 제공서비스 예시

· 자립체험주택: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중간시설 운영
· 방문건강관리 및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주 수요자 적극 발굴
·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 정신재활시설 주간프로그램 연계 등 서비스 신규개발 및 연계
· 정기적 방문관리를 실시하여 퇴원자 및 지역사회 수요자에 대한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 정신질환자의 훈련 및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입소정원 확대 등
· 퇴원예정자 정보 제공 동의율 제고, 외래치료명령제 등 제도개선 노력



서비스 연계		
	정신질환자 특화 프로그램	동료 상담가 지원
	정신건강 종합케어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맞춤형 직업재활	재가의료급여('20.) 등
	절차보조인 지원	

- 선도사업 지자체: 경기 화성시

03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
- 사업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과 그 가족

영유아기

-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교육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관리 체계 구축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조기개입 강화
    - ·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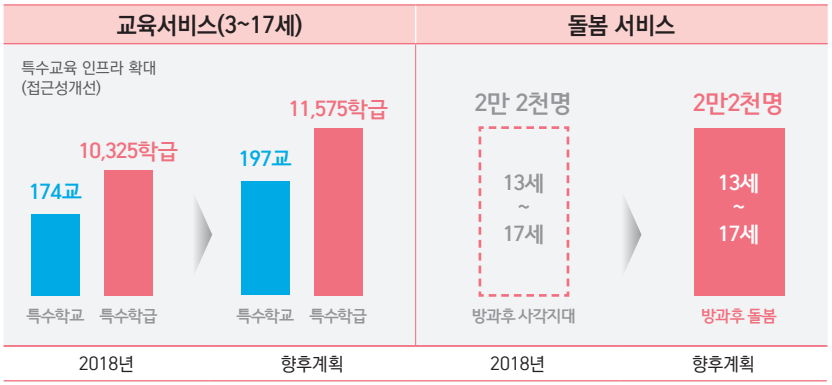
2018년	»	2019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하위 3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하위 50%** ※ 점차적으로 전체 영유아로 확대

  - 발달장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서비스 접근성 확대
    -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확대(2022년까지 60개소 신설)
    - ·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 구축
  - 발달장애 영유아 양육 역량강화 등 조기개입 체계 구축
    - ·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에게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교육 제공
  - 멘토링 등 발달장애 영유아의 부모교육 지원
    - ·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적응 지원, 부모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 지원

학령기

-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방과후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
    -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 · 방학기간 복지관·장애인단체 등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증원

특수교육기관 확충	특수학교 23교, 특수학급 1,250학급
주간(방과후) 돌봄바우처 도입	2만2천명 (청소년 방과후 수요 100%)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및 부모 역량 강화 지원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훈련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자유학년제 확대('18. 48교 ⇒ '22. 139교)
      ※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17개까지 확대
  – 개인별 적합 진로 모색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성인전환기 자녀 부모 대상,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프로그램 실시
  – 교육 · 복지 · 고용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지원
    · 지원가능한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

> 진로지도 ⇒ 능력평가 ⇒ 취업지원 ⇒ 복지서비스
> ※ 특수교육원·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간 협업

청장년기

• 주간활동(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한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구분	주요내용
지원기준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장애인 20% 이상 선정
제공인원	· 목표: 1,500명('19.)
제공시간	· 기본형(월 88시간), 단축형(월 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제공 서비스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이용 ·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재가 발달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

※ '19. 사업수행 모델 개발 ⇒ '20. 임대주택 50호로 시작 ⇒ 연차별 확대추진 검토

– 시설거주 발달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

• 직업재활, 일자리 지원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장애인을 '동료지원가'로 참여시키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 발달장애인 맞춤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 및 맞춤 훈련과정 확대

·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확대 및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 지원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5개소 ⇒ '21. 20개소)

– 고용 유지 지원 및 사업장 인식 개선

· 부수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확대

2018년	»	2019년	»	2022년
1,200명		3,000명		1만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현장훈련기간 및 적응지도기간 연장

· 장애인식 개선교육 및 장애인 강사 활동 지원을 통한 직장내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 조성

중노년기

•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건강서비스 확대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재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장애인 검진기관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 중증장애인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단계적 확대

•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

– 장애인연금 확대 등 소득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방안 강구('18. 25만원 ⇒ '21. 30만원)

–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으로 안정적 소득 관리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사후 대비,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신탁기관 통한 안정적인 신탁자산 관리 지원

※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시범사업 추진

전주기

• 재활 및 문제행동 치료 등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개설

·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 치료 지원 위한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

2018년	»	향후 계획
2개소(부산, 서울)		8개소(전국 권역별)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 발달장애를 비롯한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연계

※ '22. 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확충

•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부모·가족 정서적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 법률지원 확대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확대

2018년	»	2022년
400명		1,000명

· 발달장애인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법률자문)–보건복지부(대상자발굴)–모금기관(재원) MOU 체결

–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성교육 강화

· 발달장애인의 특수성 이해 및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역량을 갖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전문가 양성('20. 100명)

· 성교육전문가가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성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강사 대상 보수교육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 가족 부담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부모·가족 휴식지원서비스 확대

2018년	»	2022년
1만명		2만명

• 종합대책 시행 후 달라지는 모습 | **사례 유형**

A씨 방과후 돌봄 바우처 서비스 지원으로 인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구직에 성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B씨 멘토링 프로그램(부모교육 지원)을 이용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부모들과 자조모임을 통해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어 우울감이 감소하였다. 아이도 인근 지역에 생긴 '행동발달증진센터'에 다니면서 도전적 행동이 많이 완화되었다.

C씨 동네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생겨 아들이 매일 밖에 나가 볼링도 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되어 걱정이 사라졌다.

D씨 지역에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개소하여, D씨는 훈련센터에서 친화력이 좋은 성격을 살려 1년 동안 직업훈련을 받았다. 실무 중심의 직업체험, 기업체 현장체험을 통해 항공서비스직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D씨는 현재 항공발권, 예약업무 및 서류 전달하는 직무를 담당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www.gdrrc.or.kr

II

장애인·가족 대상 복지서비스

PART 01

2019년 주요 변경사항

01 2019년 주요제도 변경사항

생계비, 병원비, 일자리 걱정 경감

저소득층 사회안정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생계·의료급여)가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노인(생계급여)이 포함된 경우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생계·의료급여) 또는 보호종료 아동(생계·의료급여)인 경우

• 자활급여 인상 및 자활장려금 도입
- 자활단가 인상(26.6%)

2018년	»	2019년
월 최대 109만원 지급		월 최대 139만원 지급

-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30%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청년희망키움통장 연령기준 확대

2018년	»	2019년
만 15세~만 34세		만 15세~만 39세

• 긴급지원 대상 확대
- 긴급지원 재산 기준 완화

2018년	»	2019년(재산기준 40% 완화)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 저소득층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
- 소득하위 20% 노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 인상

2018년	»	2019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25만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0만원**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및 처치·시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MRI·초음파 검사비 부담 완화
-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 확대(827개 ⇒ 927개)
-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및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3대 비급여 완화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한 병실료·간병비 부담 완화 ('19.5만 병상 ⇒ '22.10만 병상)

	'19년	'20년	'21년	'22년
의학적 비급여	응급실·중환자실, 암, 소화기, 뇌혈관 등	척추·근골격계 등	근골격,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MRI	흉부·복부 등	척추	근골격	
초음파	하복부,비뇨기, 남성·여성 생식기	흉부, 심장	근골격, 두경부, 혈관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 보건복지 일자리 증가
- 보육·돌봄·여가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22년까지 34만명 확충
-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육성 등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	바이오헬스 일자리
· 돌봄·보육·여가 등 · 사회서비스원 · 지역사회 통합 돌봄	·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의료인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집중 지원 ·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미래 의료기술 선도
34만명 ('19년 9.5만명)	**5.5만명**('19년 1.1만명)	**4.2만명**('19년 0.8만명)

'18~ '22년간 40만명 + α ('19년 10.7만명)

• 사회서비스원 시범운영('19. 4~, 경기·서울·대구·경남), 「사회서비스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일자리 공공성과 질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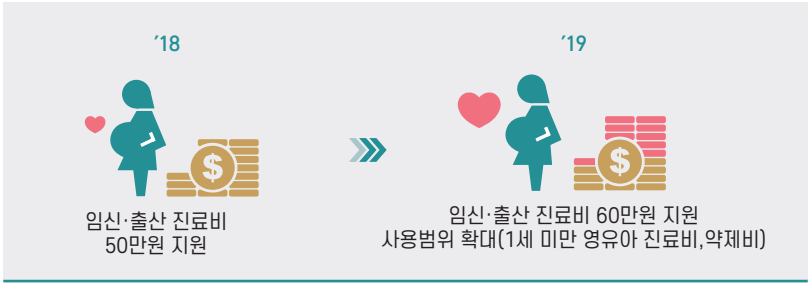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투자 강화

• 아동수당 지급 확대(월 10만원)



• 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 인하: 21~42% ⇒ 5~20%
  (진료비 약 165,000원 ⇒ 약 56,000원)

•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 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
- 이차 1개당 부담 평균 100,000원 ⇒ 25,000원

•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확충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설치 의무화
-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22년 ⇒ '21년)

•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 추가 확충('22년, 1,800개소)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매월 보호종료아동에게 30만원 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19. 7.)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발표 계획

노후생활 지원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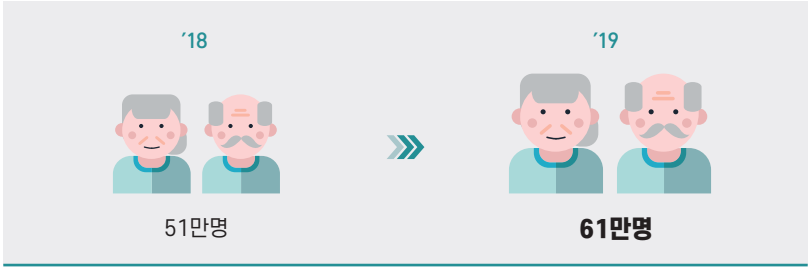
• 국민연금 제도 개선
- 국민연금 연금액 인상: 1인당 연 17,000원 추가 수급
- 두루누리 지원 확대: 월 190만원 ⇒ 210만원(17만명 확대, 115만명 ⇒ 132만명)
-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40%로 인상

•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 치매전문병동 확충('17년 50개소 ⇒ '19년 이후 매년 5개소)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19년 69개소 ⇒ '22년까지 344개소 확충)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 방문건강 확대

2018년		2019년
저소득 노인	»	저소득 노인 + 독거노인, 75세 이상 노인부부

- '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목표

•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2018년		2019년
기본서비스: 24만명 종합서비스: 4.1만명	»	기본서비스: 29.5만명 종합서비스: 4.8만명

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19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등
'20 ▸ 이동 지원
'22 ▸ 소득·고용 지원

-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 지원
- 감면할인 혜택,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중·경증 기준은 활용

•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설('19. 2,500명 ⇒ ~'22. 1.7만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개소 ⇒ 8개소), 장애인 검진기관(8개소 ⇒ 28개소) 확충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확대(하위 30% ⇒ 50%)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통합유치원	• 주간(방과후) 돌봄바우처 ('19년) 4천명 ⌄⌄ ('22년) 2만2천명	• 주간활동서비스 ('19년) 2,500명 ⌄⌄ ('22년) 1.7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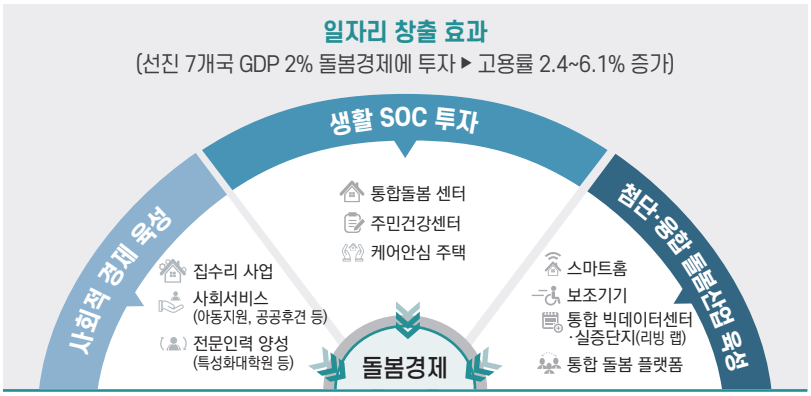
전주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18년 2개 ▸ '19년 8개)

살던 곳에서의 통합적인 돌봄 (돌봄·요양·의료 등) 기반 마련

•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19. 6.)하여 통합 돌봄 모델 마련
• 핵심 기반시설 확충
- 케어안심주택('22년까지 4만호)
- 종합재가센터('22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해 돌봄경제 육성 전략 마련('19.)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

예방·건강 투자 확대

-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지원
- 국가폐암검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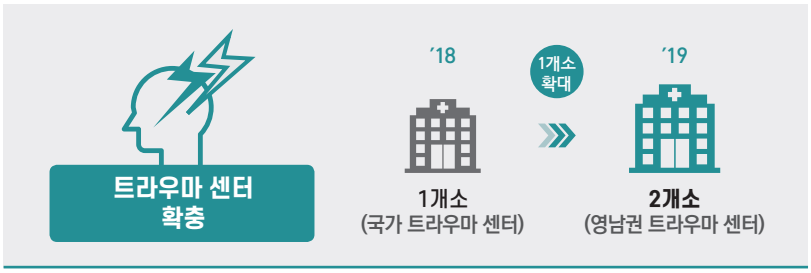
2018년		2019년
5대 암검진 (위, 대장, 간, 유방, 자궁 경부암)	»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폐암 포함 (만 54세~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 매 2년마다 실시)

-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확대(870개소 ⇒ 1,200개소 이상)
-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확대(70개 보건소 ⇒ 100개 보건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충(66개소 ⇒ '19. 75개소 ⇒ '22. 250개소)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 강화 및 자살유족 지원(법률·임시거처 등) 실시
  * 자살유발정보: 유해정보 감시(모니터링), 시정요구(정보삭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
- 퇴원 환자 정보연계·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를 통한 자·타해 위험환자 관리
-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신설을 통한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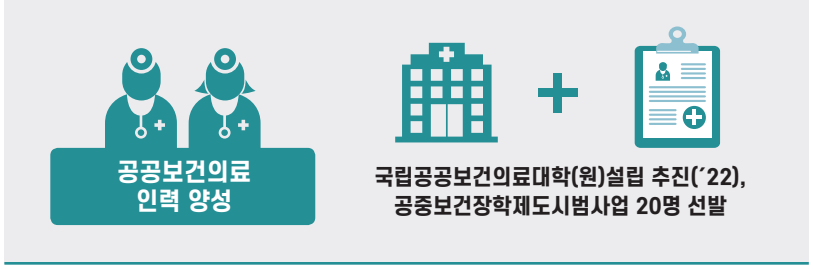




공공·필수의료 접근성 향상

-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권역외상센터 확대(13개소 ⇒ 15개소),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19. 하반기)
-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 지원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 마련
-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 지원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19. 상반기) 추진





감염병 대응체계도 고도화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지침)' 개선
- 부처-지자체 표준행동 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 개선
- 다부처 협력 강화

바이오헬스, 국가 전략산업 육성

-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
-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 발굴·육성 기반 강화
-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발표 계획('19. 4.)

업무혁신으로 정책 체감도 향상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통한 스마트복지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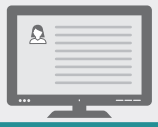
• 제도 개선, 시스템 설계·개발('19.~'21.), '22. 시스템 개통 예정



국민의 편의 제고

개인별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가칭)'구축 계획.

▸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편의 제고 효과**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

복지대상자 조사·선정업무 간소화 및 민원
안내·설명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 구축 계획

▸ **지자체 업무 효율화 효과**

	기 존	개 선
국민	복지산업별 신청	**[복지멤버십]** 유형별로 한번의 신청으로 필요서비스 제공
	주민등록지 읍면동 신청	전국 읍면동
지자체	공무원이 대상자 개별확인	기준에 맞는 대상자 자동선정
	120여종 350개 사업 공무원이 직접확인	**[AI 비서]** 시스템 자동감지·알림으로 수급자 관리 지원

정보통신기술 활용 통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 통합형·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돌봄·건강·문화 등 생활 SOC 확충·복합화
지역 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빅데이터·지리정보 활용
지역·생활권 단위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PART 02

주요제도 및 서비스

02 주요제도 및 서비스

0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참고하기

맞춤형 급여란?

-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 12. 30.)의 별칭
- 맞춤형 급여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식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가구단위 보장 원칙,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 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보장 불가

<table>
<tr><td>조사</td><td>조사내용</td><td>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table>
<tr><th>구분 / 가구규모</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h>7인 가구</th></tr>
<tr><td>기준 중위소득</td><td>1,707,008</td><td>2,906,528</td><td>3,760,032</td><td>4,613,536</td><td>5,467,040</td><td>6,320,544</td><td>7,174,048</td></tr>
</table>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table>
<tr><th>구분 / 가구규모</th><th>1인 가구</th><th>2인 가구</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h>5인 가구</th><th>6인 가구</th><th>7인 가구</th></tr>
<tr><td>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td><td>512,102</td><td>871,958</td><td>1,128,010</td><td>1,384,061</td><td>1,640,112</td><td>1,896,163</td><td>2,152,214</td></tr>
<tr><td>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td><td>682,803</td><td>1,162,611</td><td>1,504,013</td><td>1,845,414</td><td>2,186,816</td><td>2,528,218</td><td>2,869,619</td></tr>
<tr><td>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4%)</td><td>751,084</td><td>1,278,872</td><td>1,654,414</td><td>2,029,956</td><td>2,405,498</td><td>2,781,039</td><td>3,156,580</td></tr>
<tr><td>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td><td>853,504</td><td>1,453,264</td><td>1,880,016</td><td>2,306,768</td><td>2,733,520</td><td>3,160,272</td><td>3,587,024</td></tr>
</table>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td></tr>
</table>

생계급여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는 생계급여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금전지급 원칙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긴급 생계급여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 실시
- 긴급 생계급여 지원대상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파탄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외의 지역(노숙·공원·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 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급여액: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지급액(원)	256,051	435,979	564,005	692,030	820,056	948,082	1,076,107

※ 긴급 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 가능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치료 등)제공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등록자(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 급여절차(3단계) 의원/보건기관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체계 (1차) → 의뢰 / 회송 → 병원 종합병원 (2차) → 의뢰 / 회송 → 상급 종합병원 (3차)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 상한 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 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주거급여법」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 임차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나 임차급여산정급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

-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 부담분 지원**

- 실제임차료: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 월환산액과 월차임을 모두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

[2019년기준임대료] (단위: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가구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가구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가구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가구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가구	441,000	389,000	296,000	267,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지원
  - 주거약자 편의시설 추가지원
    - · 장애인: 380만원
    - · 고령자: 50만원

    ※ 단차제거, 문폭확대, 안전손잡이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등
  -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수선내용	마감재 개선	기능 및 설비 개선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수선예시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80%, 90%, 100%로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교육급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 학교급별 지원내용

(단위: 원)

구분 \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132,000	71,000	-	-
중학생	209,000	81,000	-	-
고등학생	209,000	81,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지원방식	수급자 현금 지급		학교로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교육부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6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 비용을 지원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지원내용	• 가구당 75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02. 차상위 지원

참고하기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 제3호 라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17조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외래입원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요양급여비용의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만성질환자·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가구
※ 수원시 관내 이사 및 전입자
지원내용 · 가구원 중 장애인 1명 10만원, 2명 이상 20만원
※ 변동일 30일 이내 신청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안산시

◈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안산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일반융자금: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학자금: 가구당 400만원 이내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장애인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0,500원 이하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면제)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031-412-2057

안양시

◈ 저소득장애인 학습재료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초·중·고등학생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학교생활을 위한 학습재료비 1인 6만원(분기별)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사업, 전세자금)

지원대상 ·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 또는 하려고 하는 자, 천재지변 및 기타 재난을 당한 자,
· 무주택자 또는 기타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1세대당 2,000만원
※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안정 융자금 지원(학자금)

지원대상 · 본인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중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중 학자금을 필요로 한 자

지원내용 · 연 400만원 한도
※ 4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고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이어야 함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최대 월 60,000원/현장학습비 최대 분기별 90,000원

문 의 · 안양시 가족여성과 ☎031-8045-5588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저소득 주민 중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가구
※ 65세 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 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 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문 의 · 안양시 건강보험공단 ☎031-478-8136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2세 미만 아동당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미혼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5세 이상인 만 5세 이하 아동당 5만원
· 학용품비: 중고생 1인당 연 5만원
· 학습재료비: 초중고생 월 1만5천원
· 교육비 지원: 수업료 및 입학금
· 신입생 교복비: 중고생 연 30만원
· 생활필수품비: 가구당 명절 2회 10만원(1회 5만원)
· 고등학생 학비: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분기별 지원
· 동절기 난방비 지원: 1회 10만원(연 2회/1, 2월)
· 졸업앨범비 지원: 초·중·고 졸업생 1인 5만원(연 1회)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광명시

◈ 이동세탁차량 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3급 중복),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용 · 대형 세탁물(이불) 수거 및 세탁, 배달
문 의 · 광명시자원봉사센터 ☎02-2687-1365

◈ 조손가정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조손가정 세대
※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 가구 에서 제외된 경우와 그 부모의 실제 소득이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
※ 다만, 손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조손가정 세대: 월 7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군포시

◈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지원내용 · 초등학생 월 10만원(10개월)
· 중·고등학생 월 30만원(10개월)
문 의 · 군포시 청소년교육과 ☎031-390-0784

김포시

◈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내용 · 월 17,000원
※ 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문 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628

이천시

◈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독거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3급 중복) 중 단독가구
※ 결식아동급식지원, SK하이닉스 도시락 지원자 제외 / 마장면, 대월면 미시행
지원내용 · 월 2회 이상 밑반찬 배달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행복보일러지원사업

지원대상 · 화목·연탄보일러: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한부모가구
· 기름보일러: 급박한 위기상황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각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의 연계로 보일러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중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지원내용 · 보일러 구입, 설치비 1인 100만원 이내 지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오산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지원(장학금, 교복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인 중·고등학교 재학생
※ 장학금: 학교성적 및 봉사활동 우수자
※ 교복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지원내용 · 장학금: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교복비: 15만원

문 의 · 오산시 희망복지과 ☎031-8036-7418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지원대상 · 치아소실로 의치시술이 필요한 60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지상) 및 부분 틀니(본인부담: 1종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 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문 의 · 오산시 희망복지과 ☎031-8036-7417

하남시

◈ 저소득층 생일잔치 및 명절위문

지원대상 · 생일잔치: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 명절위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 생일잔치: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실정에 맞게 생일잔치 추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생일선물 세대 방문 전달(5만원 상당)
· 명절위문: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3만원) 개별 가정방문 전달

문 의 ·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6101

의왕시

◈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내용 · 영어, 수학 학습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여주시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
※ 무주택자, 재산세 5천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해야 함

지원내용 · 최대 1,000만원 대출
※ 3년거치 4년 상환(연리 0.8%)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과천시

◈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70미만인 자
※ 총 재산 7,7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차량이 있을 경우 사업용이 아닌 2000cc이하 차량 제외

지원내용 · 도시가스·연탄·석유 등의 난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건강보험료에서 부과금액 내 부과금액 내 부과기관에 지원
· 지원기간
– 필요비용에 대해 연간 3개월 이내에서 지원(1개월 한도 연장 가능)
– 건강보험료는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연중지원 가능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이사비용 지원: 관내 이사 시 20만원 지원(2년 단위)
· 월동난방비 지원: 월 5만원(11월~3월)
·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 월 880원(가구원별, 분기별)
·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연 40만원(반기별)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남양주시

◈ 저소득층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그룹홈아동 등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

지원내용 · 월 10만원
※ 남양주시 희망케어 학원비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불가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사설학원비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3급 중복) 부모세대의 자녀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장애인 대상

지원내용 · 월 최대 7만원 학원비 지급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일반융자금: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1년거치 후 5년 균등분등상환
· 학자금융자금: 연 1회 등록금 납부고지서 명시 금액
※ 4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파주시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일반융자: 최대 1,000만원
※ 연 3%의 이율로 자금 융자(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 학자금융자: 최대 800만원
※ 무이자(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리시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월 1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관리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일반융자금(사업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1세대당 1,000만원 이하
· 학자금 융자금: 1인 400만원 이하
※ 거치기간
– 일반융자금(사업자금, 생계자금, 전세자금): 1년거치 6년분할 상환, 이자 1%
– 학자금융자금: 3년거치 3년균등 상환, 무이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14,700원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문 의 ·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2216

양주시

◈ 취약계층 이동목욕, 빨래 지원

지원대상 · 이동목욕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령의 노인 및 독거노인
– 장기질환 등으로 중병인 사람
– 지적장애, 척추마비, 근디스트로피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3급 중복)
– 와병 중에 있는 환자
· 빨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가정,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보호대상자 목욕서비스, 사례관리 등
· 취약계층 빨래서비스
문 의 · 양주지역자활센터 ☎ 070-4006-427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일반융자: 세대당 1천만원 이내
· 학자금: 세대당 500만원 이내
※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문 의 · 양주시 복지지원과 ☎ 031-8082-5761

동두천시

◈ 복지대상가정 자녀 학원 수강 교재비

지원대상 · 저소득 복지대상자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학원과 직업훈련학비 일부 지원
문 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379

◈ 대학생 멘토링 지원

지원대상 ·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가구의 중학생 자녀
지원내용 · 동두천시 거주 대학생과 저소득계층 중학생 1:1 매칭을 통한 학습지도 및 정서 지지 서비스 제공
문 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379

연천군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지원대상 · 생활안정을 위한 농·축산자금 및 사업자금
·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본인 및 직계비속의 2년제 대학 이상 학자금

지원내용 · 일반융자금: 1세대당 1,000만 한도 내
※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자: 연 1%)
· 학자금융자금: 대학교 재학생 연 500만원 한도 내
※ 3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무이자)

문 의 · 연천군 복지지원과 ☎ 031-839-2238

◈ 보호아동 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생필품비: 세대별 3만원(설, 추석)
· 생계비: 세대별 5만원(분기별)

문 의 · 관할 읍·면사무소

03.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추진근거	• 「장애인연금법」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 만 18세~20세 이하로 학교에 재학중인 중증장애인은 졸업한 월의 다음 달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재판정 대상
선정기준	• 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계 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 기초금여+부가급여

구분		계	기초	부가
기초 (생계·의료급여)	18~64세	330,000원	250,000원	80,000원
	65세 이상	330,000원	-	330,000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18~64세	323,750원	252,750원	70,000원
	65이상	70,000원	-	70,000원
차상위 초과	18~64세	273,750원	253,750원	20,000원
	65세 이상	40,000원	-	40,000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희망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관계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장애인에게 경제적 수준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제외대상 –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자(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는 제외 ※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재판정 대상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월 2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수급희망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관계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구분	장애수당(생계, 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성격	의무지급(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신청주의)
급여액	월 4만원	월 2만원	월 4만원

참고하기

경기도장애수당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
*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 지원내용: 월 4만원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이천시

행복장애수당

지원대상 저소득 재가 장애수당 지급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월 2만원 지급
문 의 이천시 복지정책과 ☎031-645-3511

장애아동수당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 (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는 포함(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포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4인 가구 기준 230만6,768원 이하) • 중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수급자별 장애수당지급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희망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관계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구분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04.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만 6세~만 64세의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의 자 중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자 • 시설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살다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유사급여 수급자 ※ 발달재활서비스는 동시 이용 가능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지원 • 지원기준 –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 가능 ※ 등급결정 유효기간: 3년 – 연령기준: 아동(19세 미만), 성인(19세 이상) – 월 한도액: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차등. 활동지원급여+특별지원급여의 범위에서 제공 · 활동지원급여: 서비스지원종합조사의 점수를 구간별 적용하여 15등급으로 차등 지원 ·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일시부재 시 지원 – 월 지원시간: 최소 60시간~최대 480시간 지원 ※ 특별지원급여 제외 – 긴급활동지원: 120시간 ※ 13등급 수준(105점~135점 미만) – 응급안전: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13등급 대상자 우선 순위 • 본인부담금 –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 수급희망자 또는 대리인, 관계공무원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경기도장애인활동지원 도 자체 추가지원

- 지원대상: 국비 추가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국비추가 급여액의 50% 추가지원
  - 국비기본, 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 소진, 이월 불가)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용가능
- 집행기준: 국비 추가급여 기준 적용
- 본인부담금(월): 면제
- 지원내용: 월 4만원

긴급활동지원

- 지원대상: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 장애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의 사유로 신청인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전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 2등급의 기본급여(1,219,000원)
- 본인부담금: 무료
- 지원기간: 60일
  - 장애등급 심사 지연 등에 따라 급여 개시가 늦어질 경우 30일 연장하여 최대 90일까지 지원
  - 지원기간(60일 원칙, 최대 90일) 이내에서 활동지원급여 개시일 전일까지 지원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정보가 전송된 다음 달부터는 심의결과에 따라 급여량이 적용되며, 긴급활동지원 급여 잔액은 이용 불가
- 결제 방법
  -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하게 단말기를 통한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바우처 카드를 수급자가 수령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이전까지의 급여비용은 소급결제 방식 적용
-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에 긴급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과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긴급활동지원 신청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전제로 함 (동시 신청)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0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음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 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자립기반과-6904)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 지원대상: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액이하인 등록 장애인(가구소득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인	1,356,600	47,966	14,539	48,044
2인	2,325,600	82,301	65,730	83,303
3인	3,008,000	105,496	103,050	106,740
4인	3,691,200	130,945	135,870	132,686
5인	4,373,600	154,014	165,887	156,479
6인	5,056,800	178,903	190,833	182,246
7인	5,739,200	205,088	223,449	210,010
8인	6,422,400	228,922	249,883	236,818
9인	7,104,800	256,587	278,970	269,242
10인	7,788,000	283,125	308,874	302,123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 지원내용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150만원/인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
- 보장구 및 보조기기 구입 본인부담금: 150만원/인 이내(1개 품목 한정)

구분	세부 지원내용
의료비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회 한정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식대 및 제증명 비용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검사비 지원 - 부득이 입원기간 전 혹은 타병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경우 병원의 증빙자료를 갖추면 지원가능 (입원 전 1개월 이내, 타 병원의뢰 시 의뢰서 첨부) •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 - 외래·통원치료비·약값 연150만원 이내, 횟수제한 없음(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입원 중에 사망한 경우도 지원 가능 • 대상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일반병원 입원이 불가하여 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입원기간 인정 • 응급상황 또는 질병치료 목적으로 내원한 자가 의료기관의 진료편의 및 입원실 미확보 등의 사정으로 의료기관 내에 입원 대기 중인 기간도 입원기간으로 인정 • 낮병동 입원의 경우 연속된 기간을 1회로 인정 - 의료기관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 낮병동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기간을 연속된 기간으로 인정 • 상기 입원기간, 의료비용 등 적정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산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의 원본을 받아 판단하되 반환을 요구할 시 원본을 확인한 후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 사본을 보관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및 보조기기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개 품목 한정 • 장애인 보장구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품목, 보험급여 기준액의 본인부담금(10%) 지원 -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7)「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서 정한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준수 ※ 전년도 기지원자 제외, 내구연한 미도래품목 제외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만 신청 가능 -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2016-15호) - 전년도 기지원자 제외, 국비 교부품목(28개) 제외 ※ 국비 소득기준,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이 국비 보조기기 교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비 교부품목을 도비 의료비 예산으로 지원하며, 국비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 - 하나의 장애유형에 2개 이상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의견을 받아 국비, 도비 각각 지원 가능 - 차량에 설치하는 보조기구는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공동명의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 수동휠체어에 부착하여 자동운행이 가능한 품목 신청시, 휠체어 사용으로 팔 또는 어깨에 추가 증상이 나타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보장구 처방(진료기관, 처방전) ▶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 자격 여부 판단 ▶ 보장구 구입(판매업소, 영수증) ▶ 보장구 검수(진료기관, 검수확인서) ▶ 구입비용 지급 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보조기기 중 자문이 필요한 품목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읍·면·동 신청 ▶ 시·군 검토 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자문 신청서 제출 ▶ 상담·평가 후 결과 시·군 송부 ▶ 시·군 자문 결과 반영하여 교부 ▶ 교부 후 '보조기기 납품확인서' 센터로 회신(판매업체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안내) ※ 그 외 보조기기는 시·군 검토 후 직접 구매 교부

※ 의료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 장애등록 전 입원 비용 지불 불가

06. 장애인 세제혜택

장애인공공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대상 다양한 감면제도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방송요금	· 시·청각 장애인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 읍·면·동 주민센터
통신요금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지정자	· 이동통신 가입비 면제 · 이동통신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30% 감면	
교통비	· 등록 장애인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50% 할인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30% 할인	· 장애인등록증 제시
	· 등록장애인	· 국내여객공항 이용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연안여객선 및 여객운임 20% 할인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각종요금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시가스(주택용) 요금 감면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천원 감면 (하절기 2만원)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 한국전력 ☎123
		· 장애인 지역난방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평균 월 5천원)	· 한국지역난방공사지사 · 읍면동 주민센터
		· 상하수도 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 지자체별 상이함	· 읍·면·동 주민센터 · 환경부 ☎1577-8866
문화활동비	· 등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 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영 제외),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감면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자동차 관련	· 등록장애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 하이패스 차로: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 시·군·구 교통담당과
		· 등록장애인	·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30% 감면	· 교통안전공단에 문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의 30% 한도)	· 자동차 판매인 상담 · 관할세무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시·군·구 세무과
		· 등록장애인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건강보험공단지사
	기타	· 등록장애인	·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의 15% 소득공제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 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교육비 대상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 등록장애인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미적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 신청
		· 등록장애인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 장애인에게 상속공제	· 관할 세무소

PART 0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임 신 기
태 아 기

경제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임신· 출산 진료비(의료급여)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고용·직업
- 출산 전·후 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보건·의료
- 영양플러스사업
-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일상생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드림스타트

01 임신기 (태아기)

경 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한 경우
선정기준	• 2019.1.1. 이후 출산, 유산, 사산(임신4개월 이상,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했을 경우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자녀 출산 및 입양지원금**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출산일 기준)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입양일 기준)

지원내용 · 출산자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 입양자녀: 첫째,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父)가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하여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성남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 180일 미만 거주시: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300만원

※ 첫째아와 둘째아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다자녀사랑안심보험(셋째아 이상) 7세까지 지원

※ 단체보험 7년납, 7년 보장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 성남시 관내 거주 중인 등록장애인

※ 180일 미만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100만원(쌍생아 15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부천시

◈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2017. 1. 1. 이후 부천시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출생일 당시 1년 미거주시 거주기간 1년 충족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넷째아 이상 신청시 400만원 일시 지급 후, 신청 1년 후 월 50만원씩 12회 지급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 또는 입양아
지원내용 · 1인당 월 2만원 이내(5년 납입, 10년 보장)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아기환영 북스타트 서비스

지원대상 · 신생아~만 1세 아기
지원내용 ·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부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문 의 · 부천시립도서관 ☎032-625-4737

◈ 아기환영 출산축하선물 지원

지원대상 · 부천시 등록 임산부의 출생아로 신생아 출생지 주소가 부천시로 등록된 부 또는 모
· 신생아 부부 중 부천시민인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내용 · 출산축하선물 지원(1인 10만원 상당)
문 의 · 부천시보건소 ☎032-625-4189

용인시

◈ 셋째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180일 이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출산용품 지원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으면서 2019. 1. 1. 이후 출생신고 가정(2018. 1. 1. 이후 출생아 포함)
지원내용 · 출산용품 지원(10만원 상당)
문 의 · 여성가족과 ☎031-324-2608

안산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단,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국가 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 70만원 이내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 불가
※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는 그 차액을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입양일) 기준으로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의 첫째아 이상인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넷째아 이상인 경우,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출산축하용품 축하카드

지원대상 · 2018. 1. 1. 이후 출산일 기준 관내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축하용품(5종) 1박스 및 축하카드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안양시

◈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2018. 1. 1. 이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신축하금(상품권) 지급

지원대상 · 안양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조례공포일(2018. 3. 29.) 이후 출산한 임산부

지원내용 · 10만원(안양사랑상품권)

문 의 · 관할 보건소

평택시

◈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단,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상장려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 출산지원금(장애가정)
– 모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4급)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5~6급) 70만원
– 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4급) 70만원
※ 단,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양부모가 장애인일 시에는 지원금액이 높은 쪽을 우선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문 의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시흥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한 신생아 가정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문 의 ·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031-310-5916

화성시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할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셋째아 이상 미아방지목걸이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로,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지원내용 · 코리요 미아방지 목걸이(티타늄 소재)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광명시

◈ 출산가정지원(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입양으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입양'과 '출산'을 동일하게 봄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 쌍생아의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군포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첫째아 이상 가정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임신축하금

지원대상 · 군포시 주민등록 3개월 이상의 출산 전의 임산부

지원내용 · 10만원 지급

문 의 · 군포시보건소 ☎031-390-8915

◈ 출산 축하 유아도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출생아

지원내용 · 관내 출생아에게 출생신고시 유아 도서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광주시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대상 · 광주시 1년 이상 거주한 1~5급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비용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5급) 70만원 이내
※ 쌍생아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 가산 지급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여성장애인출산비용사업과 중복 불가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김포시

◈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지원내용 · 첫째아 5만원,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생아 건강보험료(셋째아 이상)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셋째이상 자녀만 해당
지원내용 · 보험료 5년간 지원(질병, 상해입원비, 암진단비, 골절탈구 등의 발생위로금 등)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천시

◈ 출산축하금 지원(셋째아 이상)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6개월 또는 출산일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부 또는 모(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한 경우)
지원내용 ·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셋째아 이상 3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안성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등록시 보호자와 함께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상 자녀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오산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과 상이등급(1~7급) 국가유공자 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 70~100만원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 30~70만원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인 경우 50~70만원
※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
문　　의 ·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031-8036-7453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 입양 신고를 한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5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 오산시에 출생등록을 하는 모든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축하용품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하남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의왕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 6개월 이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출생신고한 경우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후 40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신고 시 관할 동주민세터에서 아기용품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여주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300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4급): 200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5급): 150만원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6급): 100만원 이하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양평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 출산일 현재 6개월 미만 거주 시 12개월 경과 후 지원

지원내용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과천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2회 분할),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4회 분할)
· 입양장려금: 자녀수 2명 이하 100만원, 3명 이하 300만원(2회 분할), 4명 이상 500만원(4회 분할)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고양시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남양주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남양주 시민의 둘째아 이상 자녀로서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거주기간이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1~2급) 중 출산한 자

※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50만원 지원(시비 추가 지급)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1인 50만원(1회)
· 키움수당 1인 60만원(5만원씩 12개월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파주시

◈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한 가정에서 셋째 이후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1회 80만원

※ 출생신고시 신청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리시

◈ 신생아출생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장애인 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1~5급)인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5급): 7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양주시

◈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포천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월 2만원 이하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지원대상 · 포천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영아동
지원내용 · 출생신고시 기념품 지급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동두천시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장애정도에 따라 50만원~100만원 지원
· 양육비: 월 10만원씩 출생일로부터 2년간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가평군

◈ 출산장려지원(자녀출산,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가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400만원(2회 분할), 셋째아 1,000만원(5회 분할), 넷째아 이상 1,000만원(10회 분할)
문　　의 · 관할 읍·면사무소

연천군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의 출생아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1,00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사무소

◈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지원대상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지원내용 · 매월 보험기준액(19,000원 이내) 5년간 납입 10년간 보장
문　　의 · 연천군 복지지원과 ☎031-839-2266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지원대상 · 부모 중 1인 이상이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생신고 신생아
지원내용 · 출산용품(기저귀, 내의, 베넷 가운, 타올)
문　　의 ·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9-4072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조, 41조, 제49조, 제50조
지원대상	•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 중 출산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선정기준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제외대상 – 해외출산,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
지원내용	• 출산비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전화 또는 팩스신청 • 제출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출산확인서 등), 건강보험증,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임신 16주 이상 사산·출생후 즉시 사망한 경우 '시체매장(화장) 사고필증'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조, 제41조, 제49조, 제50조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100만원) ※ 분만 취약지 거주(30일 이상) 임신부는 2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 ·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 지원방법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제공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 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BC,삼성,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가능

	<table><tr><th>카드사</th><th>BC카드</th><th>롯데카드</th><th>삼성카드</th></tr><tr><td>접수처</td><td>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영업점</td><td>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td><td>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공단</td></tr></table>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임산부 건강챙기기

지원대상 · 수원시 임산부
지원내용 · 가정방문 건강관리(임산부 및 영유아) · 우울검사 및 관리
문 의 · 수원시보건소(☎031-228-5799, 6755, 7799, 8799)

안양시

◈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문 의 · 관할 보건소

광명시

◈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 6~10주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 간염, 소변, 혈당, 풍진 등
문 의 · 광명시보건소 ☎02-2680-5523

여주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1회 진료시 5만원, 총 30만원 이내 지원
문 의 · 여주시보건소 ☎031-887-3614

의정부시

◈ 임산부 교실 운영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중 24주~28주 첫 출산 예정의 임부
지원내용 · 태교, 산전관리, 임산부요가, 출산과정 이해 등 교육
문 의 · 의정부시보건소 ☎031-870-6075, 6116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과한 규정」 제26조~제30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1, 2종 구분없이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100만원) ※ 분만 취약지 거주(30일 이상) 임신부는 2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 · 한의원, 한방병원 등은 관련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사용 가능 · 영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경우 모든 병원에서 사용 가능 • 지원방법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제공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8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의2 • 「국민행복카드 통합카드 운영관리 사용 계약」 제2조, 제3조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 연령은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8세이며, 소득·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 청소년 산모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임신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접수 • 문의: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

추진근거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용품, 산모 및 신생아용품, 산모건강관리비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혜택 지원

추진근거	• 「국민연금법」 제19조
지원대상	•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
지원내용	•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자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3명 이상 30개월, 4명 이상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 추가 인정 ※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 ※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 포함)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고용보험법」 제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원대상	• 임신한 여성근로자(유산·사산 포함)
지원내용	• 휴가지원 – 출산 전·후 휴가: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확보), 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출산 후 60일 확보) ※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 유산·사산 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 부여

구분	기간	비고
~1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주~21주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원(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시 최저임금액 지원)

구분		단태아	다태아
전체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출산후 45일)	120일 (출산후 60일)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최대 540만원	120일(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	60일(사업주 지급) 30일(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최대 180만원	75일(사업주 지급) 45일(고용보험 지급) ※ 고용보험 최대 180만원

신청방법	•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참고하기

임산부 법적 권리 및 지원제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 태아검진시간 허용(「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청구 가능.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음

• 시간 외 근로 금지 및 업무 전환 가능(「근로기준법」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 함

• 육아시간(「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시 남성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 가사참여를 장려하기 위함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지원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계약직, 파견직 근로자 모두 해당)
지원내용	• 사용일수: 3~5일(최초 3일 유급휴가)
신청방법	• 배우자가 출산한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비 고	• 관할부: 고용노동부

보건 · 의료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지원대상	• 영유아(만 6세 미만, 생후 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선정기준	• 가구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성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 거주자 • 우선순위 기준 –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2순위: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3순위: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임신기에 영양 의학적 위험이 판정되었지만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 – 4순위: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유아 – 5순위: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6순위: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7순위: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영양의학적 위험 : 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신체계측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판정된 영양위험 및 임신/출산경력 관련 사항 등 기타영양 위험요인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섭취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및 기타 식생활 요인과 관련된 영양위험 요인을 말함
지원내용	• 대상자별 자격기간

구분	자격기간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만 6세 미만(72개월 미만)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 비용부담: 무료 ※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하는 경우 • 보충식품패키지 배송 – 월 1회 배송 –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한 식생활 관리방법, 모유수유 실천방법 등 교육 • 영양상태 평가관리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 섭취상태조사 등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임산부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태아와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함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지원대상	• 엽산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1인당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1인당 최대 5개월분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화성시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급**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지급: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 엽산제 지급: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문 의 · 화성시보건소 예방접종팀 ☎031-369-3559

군포시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군포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임신 4주~12주 이하의 임산부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분만 시까지
문 의 · 군포시보건소 ☎031-390-8915

남양주시

◈ 출산준비교실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관내 28주 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 전 운동수업, 기부태교
문 의 · 관할 보건소

◈ 모유 수유 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예비 산모 및 모유 수유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산모
지원내용 · 모유 수유 자세 지도 및 교정 등
문 의 · 남양주보건소 ☎031-590-8128

파주시

◈ 엽산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 초기~16주까지의 여성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최대 3개월)
문 의 · 파주시보건소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031-940-521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 / 최대 4회 지원(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신선 최대 4회, 동결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지원 –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신청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광명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체외 수정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총10회
– 최대 50만원/회

문 의 · 광명시 보건소 시민보건과 ☎02-2680-5493

군포시

◈ **영구피임 복원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 6개월 이상된 주민으로 영구피임(정·난관) 복원 시술자

지원내용 · 정·난관복원술 건강보험급여 적용 본인부담금 최대 60만원(1회)
※ 여자: 자궁난관이식술, 난관문합술/남자: 정관단단문합술, 정관부고환문합술

문 의 · 군포시보건소 ☎031-390-8917

◈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

지원대상 · 군포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여성: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 중 난임진단을 받은 자
- 남성: 정액 검사결과 아래의 항목 중 2항목 이내 해당자
  - ① 정액 내 총 정자수 1천5백만/ml 이하
  - ②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 ③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지원내용 · 한약지원(여성 6회, 남성 3회)
※ 침구치료비는 본인부담(건강보험적용)

문 의 · 군포시보건소 ☎031-390-89173

파주시

◈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대상 · 파주시 주소의 첫아이 임신 전 예비·신혼부부

지원내용 · 풍진, 톡소플라즈마, B형간염, A형간염, 갑상선기능, 매독, 에이즈 총7종

문 의 · 파주시보건소 ☎031-940-5731
· 운정보건지소 ☎031-940-5691
· 문산보건지소 ☎031-940-5216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의무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9조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산모 태아의 발육과 모체의 변화, 임신 주수별 산전검사 시행 시기, 임신초기 기본검사 및 임신기간 중 검사 안내, 임신 중 응급상황 및 영양관리, 출산 징후들, 분만과정 및 산욕기 관리, 출산 후 임산부의 건강관리 등 – 어린이 건강 성장기록, 건강검진 기록, 진료기록, 표준예방접종일정표 및 기록표, 치아발달 그림 및 개월별 영유아 구강설명, 안전한 예방접종 바로알기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등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비 고	• 임신기, 영유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 포함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는 지원 제외대상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내용

구분	표준서비스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산모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기타	- 제공기록 작성	- 특이사항 보고

- 이용시간
  - 1주 5일/평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연속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이용자와 제공기간 간 계약을 통해 서비스 시간, 요일 조정가능(계약서상 명시)
- 본인부담금: 서비스 총 가격 - 정부지원금

(단위: 천원)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 가격 상한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A-가-①형	5	10	15	560	1,120	1,680	491	840	1,134
		100% 이하	A-통합-①형							432	739	998
		100% 초과 (예외지원)	A-라-①형							344	588	794

선정기준	단태아	둘째아	자격확인	A-가-②형	10	15	20	1,120	1,680	2,240	1,009	1,294	1,552
			100% 이하	A-통합-②형							888	1,138	1,366
			100% 초과 (예외지원)	A-라-②형							706	906	1,087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A-가-③형	10	15	20	1,120	1,680	2,240	1,048	1,344	1,613
			100% 이하	A-통합-③형							923	1,183	1,419
			100% 초과 (예외지원)	A-라-③형							734	941	1,129
	쌍생아	둘째아	자격확인	B-가-①형	10	15	20	1,450	2,175	2,900	14,08	1,805	2,166
			100% 이하	B-통합-①형							1,239	1,589	1,906
			100% 초과 (예외지원)	B-라-①형							986	1,264	1,516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B-가-②형	15	20	25	2,175	2,900	3,625	2,112	2,407	2,708
			100% 이하	B-통합-②형							1,859	2,118	2,383
			100% 초과 (예외지원)	B-라-②형							1,478	1,685	1,896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자격확인	C-가형	15	20	25	2,505	3,340	4,175	2,433	2,772	3,119
			100% 이하	C-통합형							2,141	2,440	2,744
			100% 초과 (예외지원)	C-라형							1,703	1,941	2,183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제공인력

- 응모자격: 만 18세 이상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자
- 교육과정: 신규자 60시간(교육비 20만원), 경력자 40시간(교육비 15만원)
- 채용주체 및 시기: 제공기관장/연중 수시
- 급여: 기준(일반)가격의 80% 이상 지급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성남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서비스 이용권 지급

문 의 ·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031-729-3843

용인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문 의 · 처인구보건소 ☎031-324-4866
· 기흥구보건소 ☎031-324-6914
· 수지구보건소 ☎031-324-8834

평택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문 의 · 평택보건소 ☎031-8024-4351

김포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셋째아 이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자 중 예외지원(라형) 적용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단, 산모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 유지)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미혼모 시설 입소 중인 만 24세 초과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문 의 ·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31-980-5482

고양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고양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문 의 · 관할 보건소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지원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로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 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만 12세 연령 도래로 인한 종결 심사시점에 위기개입·집중사례관리 등급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례회의 및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례관리 기간 연장 가능(최대 만 15세까지)
지원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프로그램 예시
신체 · 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인지 · 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 · 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교육	·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등
부모 · 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 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신청방법	• 시·군·구 내 드림스타트에 신청(개별의뢰, 행복e음, 자진내방, 관련 기관의뢰 등) • 문의: 드림스타트 사업단 ☎02-6901-0290 • 참고: www.dreamstart.go.kr
비 고	• 임신기, 영유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영 유 아 기

0~6세

경제
- 장애아동수당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 자녀장려세제(자녀장려금)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입양비용지원(알선 및 철회)
- 입양아동양육수당
- 가정위탁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고용·직업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보육·교육
- 장애아보육료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료
- 만 0~5세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 시간연장형 보육료
- 아이돌봄서비스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 유아학비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보건·의료
- 영양플러스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지원
- 소아암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 어린이 불소도포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문화·여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일상생활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사업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드림스타트
- 소년소녀가정지원

02 영유아기(0~6세)

경 제

장애아동수당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

비 고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 3.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추진근거	• 「아동수당법」
지원대상	•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신규 출생자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성남시

◈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 셋째이상 자녀(7세까지)
지원내용 · 월 10만원/1인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안산시

◈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자의 셋째 이상 자녀
※ 부 또는 모와 함께 1년 이상 계속 거주

지원내용 · 매월 3만원
※ 만 5세까지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다자녀)행복플러스카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의 자녀 1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8개 분야 공공시설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안산시 관내 공영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료, 누에섬 등대전망대 이용료,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프로그램 관람료 등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군포시

◈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대상 ·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6세 미만의 아동 중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월 1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광주시

◈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로 부모와 자녀 3명이 모두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1인당 월 209,000원
※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천시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아동이 만 1세~만 6세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월 5만원 지원

문 의 · 이천시보건소 ☎031-644-4082

오산시

◈ 다자녀 가정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 셋이상 가정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첫째, 둘째, 셋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 다자녀가정 첫째, 둘째, 셋째 방과 후 수업비 지원
· 오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월 상수도 요금 2,250원 할인
· 맑음터 공원 캠핑장 이용료 50% 감면
· 시립도서관 가구당 도서 10권 추가 대출
· 오산문화재단 기획공연 관람료 최대 10% 할인(4인)
※ 오산사랑담은카드 발급, 신청 필요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구리시

◈ 다자녀가정 지원품 지원(종량제봉투 지원, 영화관람권 지급)

지원대상 · 구리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자녀 가정에서 막내자녀가 만 18세가 된 가정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20L 50매, 영화관람권 지급
문 의 · 구리시 여성가족과 ☎031-550-2978

가정양육수당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지원내용	• 월령별로 양육수당 1인당 10~20만원 월 정액지원

<table>
<tr><th>연령(개월)</th><th>양육수당</th><th>연령(개월)</th><th>농어촌양육수당</th><th>연령(개월)</th><th>장애아동 양육수당</th></tr>
<tr><td>0~11</td><td>20만원</td><td>0~11</td><td>20만원</td><td rowspan="3">0~35</td><td rowspan="3">20만원</td></tr>
<tr><td>12~23</td><td>15만원</td><td>12~23</td><td>17만 7천원</td></tr>
<tr><td>24~35</td><td>10만원</td><td>24~35</td><td>15만 6천원</td></tr>
<tr><td rowspan="2">36 이상
~86 미만</td><td rowspan="2">10만원</td><td>36~47</td><td>12만 9천원</td><td rowspan="2">36 이상
~86 미만</td><td rowspan="2">10만원</td></tr>
<tr><td>48 이상
~86 미만</td><td>10만원</td></tr>
</table>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 정지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미만)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신청방법	•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자녀장려세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추진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제100조의27,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 부양자녀 요건 –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 요건 – 2018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제외자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2,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ARS신청, 모바일앱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우편접수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우편접수 • 문의: 국세청 ☎126
비 고	• 관할부처: 국세청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선정기준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복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미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조·석식 연중 지원: 지방자치단체 – 중식 지원 · 학기중 중식 지원: 교육청(학교급식)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교육청과 협의) ·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 ※ 취학 아동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급식방법으로 지원 * 지자체별 지원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담당공무원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시·군·구(읍·면·동)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월 62만 7,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 월 55만 1,000원 • 지원시기 – 장애아동의 만 18세까지 양육보조금을 지원 – 장애아동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 도모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
지원대상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 입양 당시 장애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지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 • 지원시기 – 장애아동의 만 18세까지 양육보조금을 지원 – 장애아동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 장애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13조, 제33조
지원대상	• 지원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예정)한 미혼·이혼 한부모
선정기준	•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구분	2019년도	
	지원내용	지원단가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신청방법	• 미혼·이혼 한부모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방문신청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관계인이 대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입양비용 지원(알선 및 철회)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32조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
선정기준	• 입양알선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 •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 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을 정액 지원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철회비용 – 아동 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 철회비용 산정기준

아동보호기간	2주 미만	2주 이상 ~4주 미만	4주 이상 ~6주 미만	6주 이상 ~8주 미만	8주 이상~
지원액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3만원

신청방법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신청 • 입양동의 철회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청구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시·군·구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추진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 가능 • 제외대상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15만원/인 지원
신청방법	•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이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성남시

◈ 입양아동 양육수당 추가 지원

지원대상 · 1년 이상 성남시 거주 입양가정 중 만 16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양육수당 추가지원: 50,000원/월/인

문 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031-729-2945

◈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으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장애입양아동 1명당 700만원)

문 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2947

광명시

◈ 입양가정 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입양 및 가정위탁을 결정한 부모

지원내용 · 신규 입양, 위탁가정 비용 보조: 1회 100만원

문 의 ·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2382

의왕시

◈ 입양가정장려금

지원대상 · 만 16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00만원(1회)

※ 타 지역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 의 · 의왕시청 아동복지과 ☎031-345-2257

구리시

◈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입양가정

지원내용 · 100만원

문 의 · 구리시 여성가족과 ☎031-550-2145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table>
<tr><td>추진근거</td><td>•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제59조</td></tr>
<tr><td>지원대상</td><td>•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용</th><th>비고</th></tr>
<tr><td>양육보조금</td><td>· 1인당 월 20만원 이상(지방이양) 권고</td><td>거주지 시·군·구청 신청</td></tr>
<tr><td>자립지원정착금</td><td>·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지방이양)</td><td></td></tr>
<tr><td>대학진학자금</td><td>·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td><td></td></tr>
<tr><td>상해보험료</td><td>· 1인당 연 6만 5천원 이내</td><td>거주지 시·도 신청</td></tr>
<tr><td>심리치료비</td><td>·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 심리정서치료비: 월 20만원 이내
·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원 이내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td><td>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신청</td></tr>
<tr><td>전세자금</td><td>·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일반: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외 6,000만원
– 공공 임대주택: 월 임대료 전환금액</td><td>거주지 시·군·구청 신청</td></tr>
</table>
</td></tr>
<tr><td>신청방법</td><td>•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td></tr>
<tr><td>비 고</td><td>• 관할부처: 보건복지부</td></tr>
</table>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이 적절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위탁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완화

<table>
<tr><td>추진근거</td><td>• 「아동복지법」 제59조</td></tr>
<tr><td>지원대상</td><td>•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유사가정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다른 가정에 맡긴 경우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td></tr>
<tr><td>선정기준</td><td>•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될 경우에 중지함. 단, 아동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졸업이 속하는 달) 지원
※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인해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중지</td></tr>
<tr><td>지원내용</td><td>•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아동 1인당 월 200,000원 이상(지방이양) 권고
• 양육보조금 지급 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td></tr>
<tr><td>신청방법</td><td>•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급여 신청,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급여 지급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td></tr>
<tr><td>비 고</td><td>•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td></tr>
</table>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대상	수행기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지방자치단체
	·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상담 및 정보제공 등	미혼모·부자 가족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시설 기능보강: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방자치단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단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여성가정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안산시

◈ 한부모 가정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 연 150,000원
※ 1월, 2월, 12월 50,000원씩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오산시

◈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만 15세 이하 아동(만 18세까지)

지원내용 · 월 3만원(1:1매칭)
※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아동개인별 적금통장을 개설하여 한달에 한번씩 1:1매칭 적립을 통해 자립자금 목돈 마련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용 · 연 1회, 10만원 연료비 지원

문 의 · 오산시 가족보육과 ☎031-8036-7486

◈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별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원 중 건강검진 희망자

지원내용 · 1인 4만원

문 의 · 오산시 가족보육과 ☎031-8036-7486

의왕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학습 장려수당)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 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 청소년(해당자)

지원내용 · 월 10만원

문 의 · 의왕시 사회복지과 ☎031-345-2453

고양시

◈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교양도서비)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만원

문 의 · 고양시 여성가족과 ☎031-8075-334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선정기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희망키움통장' 과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 매칭 및 적립 – 기본매칭 : 아동이 월 4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동일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 – 추가적립 : 4만원 적립 후 월 46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연간 552만원 한도 내) ※ 추가적립액은 국가 매칭 없음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 : 자립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없이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고용 · 직업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table>
<tr><td>추진근거</td><td>•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제95조4항, 「근로기준법」 제60조</td></tr>
<tr><td>지원대상</td><td>•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자</td></tr>
<tr><td>선정기준</td><td>• 제외대상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자</td></tr>
<tr><td>지원내용</td><td>•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부 1년, 모 1년 사용가능
• 육아휴직급여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h>비고</th></tr>
<tr><td>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td><td>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td><td rowspan="2">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td></tr>
<tr><td>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td><td>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td></tr>
</table>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경우 합산하여 지급</td></tr>
<tr><td>신청방법</td><td>• 육아휴직: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 육아휴직급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td></tr>
<tr><td>비 고</td><td>•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td></tr>
</tabl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를 동시에 달성

추진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2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30일 미만은 무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내용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30시간 이하 – 기간: 최대 1년(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수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참고하기

가족돌봄휴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기간: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 신분보장: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가족돌봄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장에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보육 · 교육

참고하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보호자의 사전동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즉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집단, 평가 회부

30일 이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평가 실시

진단, 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2주 이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개최, 심사(보호자의 의견 수렴)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최종 결정
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심사결과(선정,배치)를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서면 통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30일 이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90일 이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① 사회성숙도검사 ② 적응행동검사 ③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① 기초학습기능검사 ② 시력검사 ③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 (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④ 청력검사 (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① 지능검사 ② 사회성숙도검사 ③ 적응행동검사 ④ 기초학습검사 ⑤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성장애	① 적응행동검사 ② 성격진단검사 ③ 행동발달평가 ④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① 구문검사 ② 음운검사 ③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① 지능검사 ② 기초학습기능검사 ③ 학습준비도검사 ④ 시지각발달검사 ⑤ 지각운동발달검사 ⑥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장애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추진근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28조
선정기준	•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등록 장애아동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 ※ 등록 장애아동: 만 6세~만 12세까지 지원/특수교육 대상자: 만 6세~만 8세까지 지원
지원내용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462,000원/월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등록 장애아동 (방과후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상 이용자)
지원내용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32,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료

만 12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지원대상	•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지원가능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지원내용	•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 지원단가 ※ 연령관계 없음 (단위: 원) 구 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율 장애아동 / 4,100 / 246,000 / 기준액 × 100% –기준 시간: 평일은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 –지원한도: 월 60시간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만 0~5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지원대상	• 0~2세반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 – (종일반)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 시설 보육 필요가 큰 아동 – (맞춤반) 그 외의 아동 •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 취학유예: 만 6세아('12.1.1.~'12.12.31. 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질병 등 사유) ※ 조기입학: '19.1.2.~3.1.까지의 기간 중 만 3세에 도달한 아동('16.1.2.~3.1. 출생)
선정기준	• 제외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 중인 아동 중 '17.1.1.일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입양대상 아동 중 '17.1.1.일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단가

연령	기준일자	지원단가 (단위: 원)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0세반	'18.01.01 이후 출생	454,000	354,000	454,000	681,000
1세반	'17.01.01 ~ '17.12.31	400,000	311,000	400,000	600,000
2세반	'16.01.01 ~ '16.12.31	331,000	258,000	331,000	496,500
3세반	'15.01.01 ~ '15.12.31	220,000	-	220,000	330,000
4세반	'14.01.01 ~ '14.12.31	220,000	-	220,000	330,000
5세반	'13.01.01 ~ '13.12.31 (취학유예'12.01.01~'12.12.31)	220,000	-	220,000	330,000

※ 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셋째아 유치원비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관내 사립 유치원 재원아동 중 셋째아 이상 아동 학생
지원내용 · 유치원 교육비 중 정부지원 교육비(누리과정비)를 제외한 차액 지원 (최대 월 10만원)
문 의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031-2428-3196

성남시

◈ 저소득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내용 · 1인 1년 1회/100,000원(재입소로 인한 수납시 입소료의 50%이내)
문 의 · 성남시 보육정책팀 ☎031-729-2931~7

안양시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이 생애 최초로 어린이집 입소 시 입학준비금 지원
※ 부모 중 1명 이상과 아동이 안양시 거주자이며, 관내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최대 10만원(최초 1회)
※ 입학준비금 10만원 미만 시 지원아동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금액만 지원
문 의 · 안양시 가족여성과 ☎031-8045-5588

군포시

◈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군포시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이고, 2019. 1. 1. 이후 군포시 소재 어린이집에 생애 최초 입학한 아동
지원내용 · 1인당 1회, 최대 1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광주시

◈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아동
지원내용 · 1인 연 10만원(1회)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등)
문 의 · 광주시 여성보육과 ☎031-760-3710

오산시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중 오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1개월 미만 이용 아동, 취학유예 만 5세아 제외
지원내용 · 입학금: 신입생 10만원, 재원생 5만원 지원(아동 1인당 연 1회)
· 현장학습비: 104,000원(분기)
· 특별활동비: 68,000원(월)
※ 각 원에서 실제 수납한 금액 지원
문 의 · 오산시 가족보육과 ☎031-8036-7502

하남시

◈ 법정 저소득층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으로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지원
※ 선정기준: 하남시 관내 아동으로 법정 저소득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입소료 및 상해보험료 10만원 지급
※ 1인 연 1회 최초 입소 시
문 의 · 하남시 여성보육과 ☎031-790-6215

구리시

◈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다자녀(셋째아)아동, 입양아동 중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
지원내용 · 입소료 5~10만원
문 의 · 구리시 여성가족과 ☎031-550-2968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 활동 지원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 – 한부모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 월 10만원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시간연장형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지원대상	• 만 0~2세 종일반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은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분	지원단가	기준시간	지원기준	비고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단가 3,100원 · 지원한도액 186,000원 · 지원율 기준 × 100% ※ 연령 관계없이 동일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야간 보육료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	19:30 ~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24시간 보육료		7:30 ~익일 07:30	· 부모가 야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 중 주간 보육 이용과 함께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 판단되는 아동	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휴일 보육료 (토요일 제외)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

(단위: 원)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만 0세반	454,000	354,000	454,000	681,000
만 1세반	400,000	311,000	400,000	600,000
만 2세반	331,000	258,000	331,000	496,500
만 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 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 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신청방법	•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맞춤형 보육시행(2016.7.~)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하여 지원
- 종일반(07:30~19:30, 12시간)
  - 지원대상
    1) 부와 모 모두의 자격사유를 증빙해야 '종일반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 형제자매), 학업
    2)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해도 '종일반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 농·어업인, 장애, 임신(모), 입원(부모), 장기부재
    3) 가구특성을 증빙하면 '종일반자격'을 부여받는 자격사유
       : 다자녀, 한부모,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 맞춤반(09:00~15:00, 6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제공)

긴급보육 바우처

- 어린이집의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질병,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 수요발생시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맞춤형 보육료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
- 지원내용: 매월 15시간(월 6만원)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이용방법
  - 이용시간
    · 맞춤반 보육시간*(09:00~15:00) 이외의 보육시간
      *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면서 09:00~15:00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종일반 보육시간(07:30~19:30)에는 재원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시간(19:30~24:00) 에는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재원어린이집 또는 타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
  - 이용사유: 아이와 부모의 병원이용, 자녀학교방문 등 필요한 경우
  - 이용신청: 이용시간 전 어린이집에 구두 또는 서면신청
  - 결제방법: 익월에 아이행복카드로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시간 일괄 결제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선정기준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종류	돌봄활동 범위	이용시간	이용요금	정부지원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기본) 1회 3시간 이상 · (추가) 최소 30분 단위	9,650원 /시간	· 월 60~200시간 이내 지원 · 가형 80%, 나형60%, 다형 15%
시간제	· 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아동 관찰 사항 보고 등 · 종합형 :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기본) 1회 2시간 이상 ·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일반형 9,650원 /시간 종합형 12,550원 /시간	· 연 720시간 이내 기본 요금 일부 지원 · A형(가형 85%, 나형 55%, 다형 15%) · B형(가형 75%, 나형 20%, 다형 15%)
질병감염 아동지원	·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아동 관련 보고	· (기본) 1회 2시간 이상 · (추가) 최소 30분 단위	11,580원 /시간	· 가형(A형 85%, B형 50%) · 나~라형(A형, B형 50%)
기관 연계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돌봄 보조	· (기본) 1회 2시간 이상 · (추가) 최소 30분 단위	16,500원 /시간	-

• 소득기준

소득기준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3,460천원	5,536천원	6,920천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아이돌봄센터에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1577-2514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여성가족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안성시

◈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만 12세 이하 막내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맞벌이 및 한부모
지원내용 · 월 4회(주 1회 4시간) 가사돌보미 파견, 가사서비스 제공
문 의 ·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677-7191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 돌봄 문화를 정착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장애아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제1항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가정
선정기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제공: 월 100시간 이내 지원 원칙/아동당 연 600시간 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장애아돌보미

- 자격기준: 장애아 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한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조인 참여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는 양성교육 면제
- 양성교육: 총 20시간(이론 10시간, 실습 10시간)
- 양성교육기관: 장애아돌보미 사업시행기관
- 장애아 돌보미 수당: 시간당 8,400원
  - 교통비 지급기준: 1일 1회(2시간 이상) 기준, 동일 시·군·구 3,000원, 타 시·군·구 4,000원
    ※ 이동시간 1시간당 5,000원(타 시·군·구)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아돌보미의 주요임무
  -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
  - 장애아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장애아돌보미 1명당 돌볼 수 있는 아동 인원 수: 동일시간대 최대 2명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화성시

◈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헬퍼사업)**

지원대상 · 화성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200% 이하 자
※ 장애인활동지원, 맞춤형도우미,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경기도)와 중복 불가

지원내용 · 이동지원, 생활지원, 정서지원, 학습지원, 부모상담 등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아학비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학비지원

추진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원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1·2월생으로 만 3세반 취원한 유아 포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지원내용	•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유아학비 지원 •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 분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60,000	220,000
방과후 과정비**	50,000	70,000

* 유아학비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유아학비에서 특성화 활동비 지급불가

** 방과후 과정비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원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 단,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
– 방과후과정 이용 원아가 1일 기준시간(일일 8시간 또는 조건 충족시 7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유치원으로 입금 • 유아학비지원콜센터 ☎1544-0079 •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www.childschool.go.kr
비 고	• 관할부처: 교육부

공동육아나눔터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아웃간 돌봄 품앗이 연계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제1항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1항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3항
지원대상	•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
지원내용	• 공간제공: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장소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내 상시프로그램 운영(주 2회 이상) • 공동육아 지원: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참여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놀이 활동 촉진 교구 지원 –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지원
신청방법	•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참고: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or.kr/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여성가족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대상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시민
※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지원내용 · 장난감, 도서, DVD 등 대여

문 의 ·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255-5614, 233-5031, 248-9575, 298-8458
·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031-273-6690

시흥시

◈ **다문화가정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니는 유·초등학교(어린이집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으로 배부한 월보, 주보, 식단표, 편지 등에 대한 번역 지원
※ 총 5개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문 의 ·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7-4522

화성시

◈ 유아용품 나눔방 운영

지원대상 · 누구나
지원내용 · 시민들이 기증한 유아용품 판매 및 수익금으로 저소득 가정 어린이 후원
문 의 · 유아용품나눔방 ☎031-267-8766

오산시

◈ 장난감 대여사업

지원대상 · 취학 전 아동을 둔 오산시 거주민
※ 연회원 가입 필요
지원내용 · 장난감 대여
문 의 · 장난감대여점 ☎031-8036-8788

하남시

◈ 장난감도서관

지원대상 · 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하남시민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장애아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우선 모집대상
지원내용 · 장난감 대여
문 의 · 희망장난감도서관 ☎031-795-4687

파주시

◈ 장난감 도서관

지원대상 · 파주 관내 거주자 및 파주시 소재 직장인(0~7세 미취학 아동 가정)
지원내용 · 장난감 대여
문 의 ·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954-4800

보건 · 의료

영양플러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1) 임신기(태아기) » 보건·의료 » 영양플러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의무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1) 임신기(태아기) » 보건·의료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지원대상	•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사업량 초과 신청 시) • 제외대상 –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
지원내용	• 경기도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본인부담금 1인 600만원 지원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인 이내(시·군 지원) • 재활지원(협약사업)
신청방법	• 병원사전검사(본인부담) 후 수술가능 확인서 발급받아 시·군청에 신청 • 문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협약사업의 경우, '사랑의 달팽이'에 신청, '사랑의 달팽이'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경기도에 통보 • 사)사랑의 달팽이: ☎02-541-9555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공통사업

협약기관	역할
경기도(지자체)	수술 후 3년간 1인당 매년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등
사)사랑의 달팽이	대상자 선정, 수술비 지원 등
아주대학교 의료원	동 의료원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을 시 재활치료비 30% 부담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부천시

◈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자로 선정되어 수술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재활치료비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 지원
문 의 ·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032-625-2896

용인시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받은 대상자
지원내용 · 수술 후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비 1인 연 300만원
※ 3년간 지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안양시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등록 청각장애인으로, 경기도 사업으로 수술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연 300만원 이내(3년간)
※ 수술 다음연도부터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평택시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에 수술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1인당 300만원 범위 내)
문 의 · 평택시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31-8024-3325

광명시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지원대상 · 경기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로 선정된 등록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연 300만원 이내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군포시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지원대상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을 통해 수술한 대상자
지원내용 · 연 300만원
※ 3년간 지원/재활치료센터 치료비로 지원
문 의 · 군포시 사회복지과 ☎031-390-0675

광주시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자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으로 수술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재활치료비 1인당 300만원 이내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천시

◈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지원대상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을 받은 대상자
※ 재활치료비를 지원받는 동안 언어, 청능 관련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재활치료비 300만원 범위 내 지원
※ 수술 당해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오산시

◈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청각장애아동 중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백만원 이내 지원(3년간)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의왕시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선정된 자
지원내용 · 300만원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문 의 · 의왕시 사회복지과 ☎031-345-2414

남양주시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 경기도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대상자
지원내용 · 재활치료비 지원
문 의 ·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031-590-2667

파주시

◈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대상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연 300만원 범위 내 지원
문 의 · 파주시 사회복지과 ☎031-940-8414

동두천시

◈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재활치료

지원대상 · 경기도 지원을 받아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한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추진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의료급여법」 제1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적용자 영유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의료급여수급권자(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건강보험적용자(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수행)
지원내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 (신장·체중·머리둘레) 공통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 건강검진 주기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표」 발송 ※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 검진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비용 청구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구분	검진주기	
	일반	구강
1차	생후 4~6개월	–
2차	생후 9~12개월	–
3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4차	생후 30~36개월	–
5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6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7차	생후 66~71개월	–

참고하기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검진 (4~6개월)	2차검진 (9~12개월)	3차검진 (18~24개월)	4차검진 (30~36개월)	5차검진 (42~48개월)	6차검진 (54~60개월)	7차검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손전등 검사	시각이상 (사시)	●	●	●	●	●	●	●
	시각 문진		●	●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 (약시)				●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신체 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몸무게		●	●	●	●	●	●	●
	머리둘레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문진	영양결핍 (과잉)	●	●	●	●	●	●	●
	영아돌연사 증후군 예방	영아돌연사 증후군	●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구강 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기타 검사 및 문진: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 등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 지원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21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28조, 시행령 제20조,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4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8-1호)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 • 2019년 지원대상 백신(17종)

지원내용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일본뇌염(약독화 생백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IIV(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043-719-6848,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저소득층 선택 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0세, 만 6세~만 15세
지원내용 · 0세(6개월 이내): 로타바이러스
· 만 6세~만 15세: A형간염
문 의 · 수원시보건소 ☎031-228-579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하여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에 기여

추진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로 평가된 대상 ※ 발달장애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사업대상 제외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 제출 후 검사 •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시, 정밀검사비 선 지급 후 보건소에 후 청구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및 관할 보건소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의료기관 찾는 방법

- 건강IN 사이트(건강정보/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165개 기관정보 열람 가능
- 경기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의료기관: 36개 기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B형간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 실시 등 지원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6조, 시행규칙 23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8-1호) • 「예방접종의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9조
지원대상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지원내용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의료비 전액 지원 • 예방처치 기본 일정 – 면역글로불린 투여 1회, B형간염 예방접종 기초 1~3회,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1회
신청방법	• 산모의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항원 검사 결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 (HBeAg)양성인 경우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산모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 시 사업참여 가능 • 문의: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043-719-6848,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 http://nip.cdc.go.kr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재활서비스 등의 연계실시 및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2019년) (단위: 원)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선정기준					
	5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보건소)
  - 의료기관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해,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중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1인당 최고지원금액 5백만원)
    ※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최대 500만원)
-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지원액	5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지원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신청방법

- 의료비 신청: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서: 보건복지부 1~3회,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1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지원대상	• 2019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선정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미스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6종 ※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6종을 포함한 광범위 대사이상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20,000원~50,000원 지원

지원내용	– 정밀 검사비(확진검사): 본인부담금 7만원 범위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항목: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미스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6종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환아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식품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지원 가능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250,000원 범위내 지원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가능, 소급지원 불가 – 희귀난치성 질환 중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 특수분유 지원: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소아암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진근거	• 「암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시행령 제9조, 시행령 제10조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중 만 18세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최대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지원범위: 암진단검사관련 의료비, 암치료비,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기간: 최대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 백혈병은 연 3,000만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연 2,000만원 – 해당 연도에 조혈모세포이식 연 3,000만원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국립암센터 ☎1588-811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20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과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지원대상	• 난청검사비: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보청기 지원: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 확진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내용	• 난청검사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5,000원~25,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7만원 내 지원 • 보청기 지원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부천시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생후 28일 이내 외래검사비가 발생한 신생아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문 의 · 부천시보건소 ☎032-625-4472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시각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지원대상	• 전국 취학전 만 2세~6세 아동
지원내용	• 실명예방홍보사업 • 자가시력검진사업 – 가정에서 자가시력검진키트로 검진, 보건소에서 2차 정밀검진대상자 선별·안내 • 어린이 눈 건강 교육사업 – 보육기관에 눈건강 전문 간호사와 시력검사요원이 방문하여 교육, 시력검사 실시, 교육환경 조도 측정 등 • 소아안과 취약지역 정밀검진 사업 • 경기도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지원내용	–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본인부담금 1인 600만원 지원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300만원/인 이내(시·군 지원) • 재활지원(협약사업) – 소아안과 전문의 및 검진요원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정밀검진 실시 • 안질환(약시) 어린이 추후관리 사업 – 자가시력검진을 통해 약시로 판정된 어린이 등에게 가림치료 제공 및 부모상담, 질환이해를 위한 정보제공 • 안질환(약시) 어린이 추후관리 사업 –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사시, 안검하수, 선천성 백내자 등) • 저시력 어린이 시각재활사업 – 저시력 어린이 의료상담, 시기능 효율성 개발훈련, 시지각 발달검사 훈련, 시각사용 기술 훈련,저시력 보조기구 적응훈련, 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어린이 불소도포

치아우식증(충치)에 취약한 아동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지원대상	•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우선대상자 – 저소득층 아동, 우식발생가능성이 높은 아동, 우식이 다수 발생된 아동, 아직 광하가 불완전한 영구치가 새로 맹출한 아동, 치열이 변화하는 시기인 3·7·10·13세 ※ 생활터 및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을 방문하여 불소도포하는 것을 권장 ※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과 치아홈메우기를 함께 병행하는 것을 권장
지원내용	• 대상자 구강건강 상태 등 확인 후 처치 시행 • 불소도포 방법: 불소 겔 도포, 불소 바니쉬 도포, 불소이온도입 만 3세 이후, 6개월에 1회(환자의 구강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결정) • 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치과의사(공중보건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서 문의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관할 보건소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원대상	• 지역사회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등 •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지원내용	• 조기발견: 학교 등 유간기관 연계를 통해 고위험군 발굴 • 심층사정평가: 정밀검사 및 전문의상담으로 확진 • 사례관리: 개인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 진료비 지원: 진단검사비, 정신의료기관 외래 치료비 등 지원(1인 40만원 이내) • 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교사 및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교육 등
신청방법	• 관할 시·도·군·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문화 · 여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스포츠복지사회 구현에 기여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중에서 경찰청이 추천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스포츠 강좌 월 최대 8만원 지원 • 이용가능 시설 조회: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www.svoucher.kspo.or.kr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참고하기

스포츠 강좌이용권 시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이 스포츠강좌이용권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강좌이용권 시설로,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된 스포츠 시설
- 신청대상: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시설 또는 스포츠강좌 운영자
  - 시설: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 사설체육관 등
  - 강좌운영자: 체육강좌 프로그램 운영자(축구교실, 어린이 야구단, 키드농구단 등)
-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의 신청기간을 확인 후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상생활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중복장애 인정 ※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다른 법령에 따라 본 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 1회 27,500원, 월 8회(주 2회)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경기도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지원

- 사업내용: 교육 수요에 따라 재활치료 제공,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 교육내용: 음악, 미술, 놀이, 인지, 언어치료 등
- 교육센터: 총 21개소 / 도 장애인재활협회 11개소, 시·군 10개소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안산시

비장애 및 장애아동 보육 통합지원

지원대상 · 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언어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 비장애 아동 중 발달지연 등으로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 장애위험 영유아 발견 조기중재(선별진단)
· 언어발달지연아동 개별 및 통합적 언어치료
· 특수교사 및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순회지원 및 교육
· 치료영역 역량강화를 위한 방문 치료 자문
· 부모상담 등

문 의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415-2273

과천시

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아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이 과천시 거주 180일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가정
※ 만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월 3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제59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부모 중 1인 또는 조손가정의 부모 중 1인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서비스단가: 1회 27,500원, 월 8회(주 2회))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	월 22만원	+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지원내용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 소득 65% 이하(나형)	월 22만원	=	월 18만원	+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신청방법	• 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파주시

◈ **언어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2019년 기준 2007년 3월 이후 출생)
※ 단,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지원조건의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지원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의 해체 예방

추진근거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치매환자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 실종 및 유괴예방 방문교육 실시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 지원 • 기타 실종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1) 임신기(태아기) » 일상생활 » 드림스타트

소년소녀가정지원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9조, 제59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만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 •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입소 등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 다만, 1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1인 이상 포함된 세대로서, 당해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 지원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031-234-3980
비 고	• 영유아기, 학령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구분	내용
생계·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부가급여	1인당 월 20만원이상(지방이양) 권고 – 부가급여액은 소년소녀가정 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중지가 결정된 달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전세자금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소년 소녀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년소녀가정 종료 아동 – 대출대상 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포함)을 받아 지원 대상 가정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추천
정서적 후원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대학생 멘토 등을 후원자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해결

학 령 기

7~18세

경제

- 장애아동수당
- 아동수당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 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 학교우유 급식
- 입양아동 양육수당
- 가정위탁아동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고용·직업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 내일배움카드

보육·교육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료
- 방과후 보육료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Wee클래스 상담지원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학자금 대출

보건·의료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 어린이 불소도포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소아암 의료비 지원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문화·여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일상생활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소년소녀가정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청소년디딤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내일이룸학교

03 학령기(7~18세)

경 제

장애아동수당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

비 고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 3)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경제 » 아동수당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경제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양육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경제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정기적으로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경제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상생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지원대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내용	• 자립수당: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 문의: 아동자립지원사업단 ☎02-715-463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상생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3호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경기도의 경우 1인 1회 500만원 지원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 원칙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아동자립지원사업단 ☎02-715-463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광주시

◈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종결 및 시설퇴소아동(만 18세) 중 자립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등 주거안정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 주거안정비 1인 500만원(1회)

문 의 · 광주시 희망복지과 ☎031-760-5992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 제62조, 제6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 7, 제106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부터 제92조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 경기도 지원기준
지원내용	• 고교학비: 입학금 전액,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학교운영지원비 • 급식비: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내외 • 정보화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신청방법	• 학부모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인터넷접수: 원클릭신청 시스템(행복e음) • 문의: 경기도교육청 ☎031-1396
비 고	• 관할부처: 교육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	
			컴퓨터	인터넷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교장 추천자			의료급여, 난민	교육급여, 한부모, 난민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경제 »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교우유 급식

성장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 •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 •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선정기준	•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우유단가: 430원/개)
신청방법	• 희망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신청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044-201-2341
비 고	• 관할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경제 » 입양아동 양육수당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경제 » 가정위탁아동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경제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고용 · 직업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고용·직업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 달리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 경력단절방지를 동시에 달성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고용·직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추진근거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79호)」

지원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95% 지원 (훈련비의 5~7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부담)
	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부담)

- 훈련장려금 지급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출석일수)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보육 · 교육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육·교육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료

만 12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육·교육 »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 활동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육·교육 » 방과후 보육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장애대학생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제31조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학생을 지원 ※ 심사 등을 거쳐 필요성이 큰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기준 외 학생 추가 포함 가능
선정기준	• 대학별 지원계획 수립시 중증 및 취약계층을 우선지원 •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 • 도우미 가족 지정 및 활동보조인 겸직을 지양 • 대학의 20% 이상 대응투자시 지원

지원내용	• 장애대학생의 학내 이동편의 및 교수학습활동을 보조해주는 캠퍼스 도우미에게 책정된 금액을 지급
신청방법	• 대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에 지원 •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77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22
비 고	• 관할부처: 교육부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 참여 지원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법」 제29조
지원대상	• 만 13세~만 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 월 44시간 방과후 돌봄 이용권(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 – 방학기간 복지관·장애인단체 등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방학기간 돌봄 사각지대도 개선
신청방법	• 시·군·구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 공공성·학생 복지지원 강화

추진근거	•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
지원대상	• 도내 교복을 입는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이내 현물 지원
신청방법	• 재학 예정인 학교를 통해 신청 • 문의: 재학(예정) 중인 학교에 문의
비 고	• 관할부서: 경기도 교육협력과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수원시 내·외 고등학교 입학 신입생
※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하나, 외국 거주 등 미신청 사유 소명시 신청 가능
지원내용 · 1인 30만원
문 의 · 수원시 교육청소년과 ☎031-228-2440, 2441, 2442

성남시

◈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지원대상 · 성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1인 3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입학 고등학교

용인시

◈ 고등학교·대안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2019. 3. 4.)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고등과정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교복구입비 지원금 30만원
문 의 ·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324-2484

안산시

◈ 다자녀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
지원내용 · 30만원(1회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안양시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대상 · 2019. 3. 4.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한 2019학년도 신입생
지원내용 · 1인 30만원
문 의 · 안양시 교육청소년과 ☎031-8045-2265

평택시

◈ 수급자 자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 고등학교 신입생(수급자)
지원내용 · 1인 3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화성시

◈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2019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셋째이상의 자녀로 2019. 3. 1.기준 180일 이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생
※ 단, 180일 미만인 경우, 전입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1인당 교복비 30만원 지원(1회, 타 사업 중복지원 불가)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광명시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1인당 3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군포시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대상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지원내용 · 중학생: 학교를 통한 30만원 상당의 교복 지원
· 고등학생: 30만원
문　　의 · 군포시 청소년교육과 ☎031-390-0784

이천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교급여 수급자) 고교 신입생
지원내용 · 40만원 지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안성시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30만원 지원
문　　의 · 안성시청 교육체육과 ☎031-678-6833

오산시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3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과천시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지원대상 · 최종학교 배정일에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30만원(동, 하복비 포함 금액)
※ 관내 중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고양시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
※ 주민등록 기준일 2019. 3. 1.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문　　의 ·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

연천군

◈ 기초생활수급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동절기 20만원, 하절기 1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 지원
문　　의 · 관할 읍·면사무소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육·교육 » 아이돌봄서비스

Wee클래스 상담지원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습부진 및 학교부적응학생, 일반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285호)」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 학생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교사
지원내용	• 학교폭력, 교우관계 등 개인, 가정, 사회 요인에 의한 학교 적응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상담 등을 통해 학교적응 지원 및 학업중단 예방

구분	내용
Wee클래스 (학교)	· 학교부적응 학생 조기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향상 지원 · 잠재적 위기학생에 대한 개인상담·집단상담·교육프로그램·심리검사·자문 수행 등
Wee센터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학생 및 상담희망 학생에 대해 진단·상담·치유 연계 서비스, 심층심리검사, 정서행동특성검사 후속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 서비스 제공
Wee스쿨	· 정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서비스 · 장기위탁교육, 고위기 학생의 장기간 치유 및 교육,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가정형 Wee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에 따른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돌봄(주거)·상담·교육통합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학교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문의: 학생안전통합시스템 ☎043)5309-182, 184 • Wee홈페이지: www.wee.go.kr
비 고	• 관할부처: 교육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국가장학금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 「장학금 규정(대통령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내대학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구간(분위)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소득인정액을 10개 구간으로 설정한 제도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 1988.1.1.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서 성적기준 충족자(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지역인재장학금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19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신입생 중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입학금 지원 장학금
  -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신입, 편입, 재입학생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액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최대지원금액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195만원	390만원
	5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6구간(분위)	184만원	368만원
	7구간(분위)	60만원	120만원
	8구간(분위)	33.75만원	67.5만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액

구분	소득구간(분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최대지원금액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260만원	520만원
	4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5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6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7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8구간(분위)	225만원	450만원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입학금 지원 장학금 – 입학금 폐지 합의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등록금 내 필수경비(수업료+입학금)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가능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비 고	• 학령기, 성인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교육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다자녀(행복) 장학금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지원내용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대상자 선발 후 다자녀 장학금 지급
문 의 · 수원사랑 장학재단 ☎031-242-1151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 「장학금 규정(대통령령)」,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지원대상	• 국내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으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직전학기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학생
선정기준	• 우선선발 – 1순위: 소득 4구간(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 – 2순위: 소득 5구간(분위) 이상~6구간(분위) 이하 – 3순위: 소득 7구간(분위) 이상~8구간(분위) 이하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지원내용	•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근로장학금 지급 – 시급단가: 교내근로-8,350원, 교외근로-10,500원 –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주당 학기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가능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비 고	• 학령기, 성인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교육부

학자금 대출

학비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받고 취업 후 상환할 수 있게 지원

추진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지원대상	

구분	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으로 대한민국 국민(대출신청일 만 35세 이하) – 신입생군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 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 1~8구간(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첫째, 둘째 포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대출신청일 만 55세 이하) – 신입생군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 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구간 무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신입생군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 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지원내용

구분	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 의무적 상환 · 등록금 전액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 · 등록금 전액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 대출자 고등교육기간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제한 – 대학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전문대학원 9천만원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무이자 대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가능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비 고	• 학령기, 성인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교육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안산시

◈ **다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거주하는 넷째 이상인 자녀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 수업료 및 등록금 전액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 · 의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건·의료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취학 전 아동의 시력검진과 눈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저시력 및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아동시각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건·의료 »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시흥시

◈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6세~만 12세 이하 의료취약계층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타연계기관 추천자

지원내용 · 학령기 시기 다발성 질환(구강, 비만, 시력, 비염, 척추, 근골격)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관리, 치료비 지원
※ 1년, 1인당 누적 30만원 내

문 의 · 시흥시보건소 ☎031-310-5814

어린이 불소도포

치아우식증(충치)에 취약한 아동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건·의료 » 어린이 불소도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건·의료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소아암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건·의료 » 소아암 의료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장 등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건·의료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건·의료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경기도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간관리 서비스를 제공, 평생구강건강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제7조,「보건의기본법」제43조,「학교보건법」제7조 • 「경기도 초등학생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지원대상	• 만 10세 전후의 초등학교 4학년
지원내용	• 구강검진: 문진 및 기본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 • 구강교육: 자가 구강위생관리,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 구강진료: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바니쉬, 진단에 의한 선택적 적용 (단순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치아홈메우기)
신청방법	• 문진표 작성 후 치과의원 진료예약 및 방문 • 문의: 관할 보건소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성남시

◈ 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

지원대상 · 성남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지원내용 · 구강검진: 문진 및 기본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
·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관리, 바른식습관,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 바니쉬 도포
문 의 · 수정구보건소 ☎031-729-4046

부천시

◈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만 6세~만 17세 아동
지원내용 · 구강질환 예방관리 및 구강질환 치료비 지원
※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원
문 의 · 부천시보건소 ☎032-625-4443

광주시

◈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대상 · 광주시 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아동)
지원내용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서비스, 구강질환 치료 연계
문 의 · 광주시보건소 ☎031-760-476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지원대상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연령기준: 만 11세~18세 – 자격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
지원내용	• 월 10,500원씩 바우처 지급 – 지원물품: 일회용생리대, 탐폰, 생리컵
신청방법	•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문의: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비 고	• 관할부처: 여성가족부

문화 · 여가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문화·여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보장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원대상	• 만 12세~만 23세 장애인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장애(아동)수당 수령, 자활근로, 본인부담 경감)
지원내용	• 월 8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시범사업이므로 일부 미시행 지역 존재함.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모두 실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14, 대한장애인체육회 ☎02-3434-4500
비 고	• 학령기, 성인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광명시

◈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운영**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
지원내용 ·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주 1회 전문가의 트레이닝, 장애재활기구 구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체력단련센터(하안동 재활용센터 2층)
문 의 · 교통장애인협회광명시지회 ☎02-891-0887

일상생활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비 고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 4) 장애인 활동지원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장애인 무료이동목욕서비스

지원대상 · 중증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와상상태에 있는 요보호대상자
지원내용 · 상담 및 목욕·간호서비스, 정서지원 및 연계서비스 등
문 의 · 수원시 연무사회복지관 ☎031-245-7576

부천시

희희빨래방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급자
지원내용 · 무료로 대형빨래(이불)을 방문 수거해 당일 원스톱으로 빨래, 건조, 배달하는 서비스
※ 이불(1인당 소형 1~3장, 대형 1~2장), 2개월에 1회 가능
문 의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032-663-9886

시흥시

시흥시 이동복지빨래방

지원대상 · 시흥시 65세 이상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자체 세탁이 어려운 장애인, 이동목욕 대상자 중 세탁이 필요한 세대, 시흥시 노인·장애인·아동 기관 등 지역복지단체 지원
지원내용 · 세탁 및 세탁물 배달
※ 시흥시 동주민센터, 경로당 등 순회 서비스
문 의 ·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031-404-4346

하남시

중증장애인 무료 빨래방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 독거노인
지원내용 · 빨래 수거 및 배부
※ 전화 및 방문 상담 신청 후 서비스 제공 결정
문 의 · 장애인 무료빨래방 ☎031-796-0574

장애인무료미용실

지원대상 · 하남시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컷, 파마, 염색 등 미용서비스 제공 및 정보교환 등 소통의 장소 제공
※ 전화 및 방문 예약 접수/09:00~18:00(월~금)
※ 컷 무료, 염색·파마 재료비 자부담
문 의 ·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031-790-646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경기도

일상생활에 기본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지원과 산후관리,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증진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지원대상	• 생활지원: 만 6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중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급여 판정결과 지급에서 제외된 자 –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긴급지원 대상 장애인 • 산모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선정기준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사회복지사법」제3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신고 또는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 포함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단, 집행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 있음
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48시간 이내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가사·개인활동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이중지원 불가 • 산모지원: 월 160시간 이내 / 월 20일 이내 – 제공기간: 출산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 출산 전 시작하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이나 가족 등에 의한 산후조리를 받기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함 ※ 출산 후 1개월이 지난 후 서비스를 할 경우 육아지원으로 시작 (단, 기관의 도우미 모집으로 서비스 시작이 지연된 경우 논의 후 결정)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타서비스와 산모지원서비스의 합산 시간이 월 16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 육아지원: 월 48시간 이내 – 아동의 연령이 36개월 되는 당월 말일에 서비스 종결 – 육아기(만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서비스 시간 추가 ※ 2인: 48시간×1.5 = 72시간 / 3인: 48시간×2 = 96시간 ※ 만 8세 이하 아동의 연령이 만 9세가 되는 당월 말일에 시간 추가 해지 ※ 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동 시간대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아지원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관에 직접 신청 •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031-299-5046 또는 각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
비 고	• 총괄수행기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수행기관(서비스 대상자 접수 및 도우미 모집 등 전반수행): 각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 • 학령기, 성인기 공통사업

참고하기

맞춤형 도우미

- 참가대상: 만18세 이상자의 근로능력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경증 장애인 중 동 사업 참여 희망자
  - 자원봉사 경험 및 상담·조언 능력자
  - 자원 봉사의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서비스대상 장애인의 가구원, 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는 수혜 대상자 가정의 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음
- 양성교육
  - 신규도우미: 사업제공기관 자체 교육(사업안내 등) 후 투입
  - 연 1회 의무교육 이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제공 교육
- 수당지급
  - 1일 8시간 근무 내에서 서비스 시간 탄력적 운영
    (서비스 제공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그 때부터 30분 단위로 산출)
  - 월~금요일(09:00~18:00) 참여 원칙, 추가 참여활동 불인정
  - 지급단가: 시간당 10,000원

    ※ 근무시간 내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시간당 1.5배 급여 지급

    ※ 교통비: 1일 6,000원 이내(출퇴근거리가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지급)
- 활동내용
  - 생활지원: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
  - 산모지원: 산모위생,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 육아지원: 육아 위생관리, 육아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 관리, 학습(놀이)지도 등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일상생활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일상생활 »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일상생활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의 해체 예방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일상생활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일상생활 » 소년소녀가정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일상생활 »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제15조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 대상자 가족이 중위소득 72% 이하 ※ 단,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지원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금액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간호	연 200만원

지원내용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학업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서비스 지원	–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 – 교과서대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진로상담 비용 (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 직업체험 비용 –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 – 특기활동비 –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임. (단,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만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가능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비 고	• 관할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청소년디딤센터)

정서·행동 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와 치료, 교육,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 청소년 복지시설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32조
지원대상	• 장기과정: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만 9 ~18세 청소년 ※ 정서·행동에 어려움: 우울증, 불안장애, 품행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 단기 치료·재활과정: 중·고교생 중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고교 청소년 등

지원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장·단기 프로그램 제공 – 장기 치료·재활 과정: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및 평가, 가족개입 프로그램 운영 생활공동체 운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반 운영, 개별화관리 운영, 사후관리 및 연계체계운영 – 단기치료·재활 과정: 상담 및 심리검사, 활동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캠프 운영, 멘토육성 및 교육
신청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및 시·군·구 교육청, 위(Wee)센터,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신청 • 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청소년상담전화 ☎1388
비 고	• 관할부처: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지원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9~24세)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및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학업중단 숙려 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지원내용	• 주요 서비스 내용 – 상담지원: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상담지원 실시 – 교육지원: 복교지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대안학교 진학 지원,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 지원 등 –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탐색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등 – 자립지원: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생활기술 지원, 법률교육, 자기계발 지원 등
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 신청 • 문의: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참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www.kdream.or.kr
비 고	• 관할부처: 여성가족부

내일이룸학교

가출 등의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립을 도움

추진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직업훈련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출청소년 등
지원내용	•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급(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 내) • 기숙사, 교통비(기숙사 미제공시 월 10만원) 지원 • 특화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신청방법	• 교육생은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 문의 후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한국생산성본부 내일이룸학교 ☎02-398-4304,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 참고: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비 고	• 관할부처: 여성가족부

성 인 기

19~64세

경제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연금
- 희망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연금
- 노후긴급자금 대부
- 은퇴금융아카데미

고용·직업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장애인 창업지원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 근로장려금
- 자활근로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일모아)
- 내일배움카드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보육·교육
- 평생교육 바우처

보건·의료
- 일반건강검진
- 국가암검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일상생활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내일이룸학교
-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04 성인기(19~64세)

경 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비 고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 3)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에게 경제적 수준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

비 고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 3)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수당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추진근거	• 「국민연금법」 제49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 발생자
선정기준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고,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

초진일 요건	국민연금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아래의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기간 –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장애등급
–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결정

선정기준	–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는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결정 – 이때, 60세*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 지급 가능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은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증의 등급과는 다름
지원내용	• 장애연금 급여지급 –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신청방법	•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급자 본인이 내방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자산형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 희망키움통장 Ⅱ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희망키움통장Ⅰ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내일키움통장: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지원내용

구분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본인저축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월 10만원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정부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 평균 334,000원, 최대 627,000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기타지원	없음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1:1 또는 1:0.5매칭 + 사업단 수익금에서 최대 15만원

지원내용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시)	1,562만원 (최대 2,600만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1,512만원 (최대 1,62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신청방법	• 희망키움통장 Ⅰ·Ⅱ: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내일키움통장: 소속사업단의 지역자활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여성가족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15~39세)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근로·사업활동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41,402원] × 63%(장려율) • 3년 평균 적립액(10만원 저축시): 1,422만원(최대 2,145만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

추진근거	•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6조
지원대상	•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확인)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월/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100%)		1,707,000	2,907,000	3,760,000	4,614,000	5,467,000	6,321,000
건강보험료	직장	55,359	94,808	121,528	150,844	177,419	206,091
	지역	13,557	75,719	115,254	151,910	184,185	219,834
	혼합	56,267	95,962	122,961	152,850	180,259	209,942

※ 지원대상 조건은 청년통장 신청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 –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 목적 지원
비 고	•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account.jobaba.net ※ 모집 공고 후 신청기간 내에 접수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참고하기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복지포인트
  –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청년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등 제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 3개월(90일) 이상 재직,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월 건강보험료 80,750원)
  – 내용: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한도 지원

• 청년 마이스터통장
  – 대상: 경기도 내 중소제조업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도 거주 만 18세~만 34세 청년근로자,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 내용: 2년간 월 30만원 지원

경기도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경기도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추진근거	•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지원대상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비 고	• 온라인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apply.jobaba.net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시·군 청년복지부서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경기도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및 미래 설계 기반 마련 도모

추진근거	• 경기도지사 공약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된 경기도 거주 청년
지원내용	• 만 18세가 되는 달 최초 1개월분 국인연금 가입 보험료 지원(9만원)
비 고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도내 거주하는 대학(원)생의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

추진근거	• 경기도지사 공약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한 미취업자
지원내용	•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에게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비 고	• 공고일 이후 온라인 접수: 경기도청 접수센터 apply.gg.go.kr •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 재(휴)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을 받고,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학생
※ 다자녀가구(3명 이상)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작년 기지원자 재신청 가능
※ 졸업생, 대학원생, 타 지자체 이자지원 중복지원자, 대출완제자 등 지원제외

지원내용 · 연중 2회 반기별로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상반기: 사업연도 1.1.~6.30. 발생한 이자, 하반기: 사업연도 7.1.~12.31. 발생한 이자
·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 온라인 접수(수원시 홈페이지,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 방문접수(수원시청 청년정책관)

문 의 · 수원시 휴먼콜센터 ☎1899-3300, 청년정책관 ☎228-3956

주택연금(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추진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지원대상	•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부부기준의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지원내용	•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3%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지원내용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 가능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 대출한도: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50% 초과 9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 (우대혼합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가능 · 인출한도 용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단,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만 사용 가능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짐 ※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으로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과 동일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노후긴급자금 대부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추진근거	• 「국민연금법」 제25조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내용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대출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은퇴금융아카데미

은퇴준비에 관심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은퇴관련 금융지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료 교육프로그램

추진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지원대상	• 은퇴준비에 관심있는 누구나

지원내용	• 교육기간 – 정규과정: 4주(주 1회 3시간, 총 12시간) – 집중과정: 2주(주 2회 3시간, 총 12시간) – 특화과정: 일대일 상담서비스 제공(세무, 법무, 노후재무설계) 정규과정 또는 집중과정 후 추가적으로 진행 –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 1~2일(1일 1~2시간, 총 1~4시간) • 교육내용 – 1주차: 은퇴준비와 재무설계, 응급처치 교육 – 2주차: 소득과 지출관리, 금융사기 예방 – 3주차: 자산과 부채관리, 가족과 소통하기 – 4주차: 상속과 증여, 명사특강 등 – 특화1: 지역 맞춤형 강좌(부동산 시장 등 관심사항) – 특화2: 세무, 법률, 상담서비스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신청 • 이메일신청: education@hf.go.kr • 온라인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고용 · 직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지원대상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참여형)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 2019년 기준 실습이 가능한 고등학교 3학년, 전공과 재학생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 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 2018년 12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2019년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우선 선발 대상
  - 1순위: 최근 3년간 근무경력이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최근 1년간 근무경력이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참여 신청 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원내용

구분		근무내용	기간	근로시간		월 급여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 전담지원행정도우미 – 장애인일자리사업 업무 ·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지원 · 사회(장애인)복지 전반의 행정 전담 지원 및 직접서비스 지원	12월	1~11월	주 5일 (40시간)	1,745,150
				12월	주 5일 (37.5시간)	1,636,600
	시간제		12월	1~11월	주 20 시간	872,580
				12월	주 19 시간	826,650
복지 일자리	참여형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사무, 도서관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영유아 돌봄, 문서파기,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 등	12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467,600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건강상태 및 질환 등을 사전확인, 유의하여 전신안마 및 신체부위별 안마 서비스 등을 제공	12월	1~11월	주 5일 (25시간)	1,113,740
				12월	주 5일 (23.5시간)	1,045,50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12월	1~11월	주 5일 (25시간)	1,093,850
				12월	주 5일 (23.5시간)	1,027,050

신청방법

- 시·군·구, 민간위탁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중증장애인을 우선 배치하여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

추진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제43조
지원대상	• 훈련생: 구직 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 따른 중증장애인 •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사업체
선정기준	• 훈련생에게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하여 심리적, 기능적으로 향상시키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를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 포기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 훈련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원(6일 이상 출석시 1회 지급) – 훈련일비: 1일 17,000원(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 17,000원 – 숙박비: 1박 10,000원 – 훈련기간: 3~7주 – 훈련시간: 1일 4~8시간 –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 사업주 지원 – 사업주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 수당지급 기준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계좌로 직접 입금함.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지원
선정기준	• 창업교육: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 장애인 창업 사업화 자금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교육 수료자 중 사업성을 평가 후 선정
지원내용	• 장애인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 장애인 창업 사업화 자금: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자부담 20%) ※ 청년장애인 창업자(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는 최대 2,000만원 이내(자부담 20%)
신청방법	• 전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참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틀 마련

추진근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선정기준	• 사업성을 평가해서 선정
지원내용	• 창업 점포 보증금을 최대 5년 이내, 1억 3,0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00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경기도

운전관련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 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46조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장애인
지원내용	•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지원 (운전적성정밀검사료, 시험문제집, 시험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용, 신규교육비) • 택시사업장 취업지원 및 사납금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사업수행기관)에 방문접수 신청 • 문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070-5097-0893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추진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3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4
지원대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조건 등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 가구원: 2018.12.31. 기준 판단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입양자녀 포함(2000.1.2. 이후 출생)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녀의 연령제한 없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의 부양부모(1948.12.31. 이전 출생)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해야 함 • 총 소득요건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재산요건: 2018.6.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지원내용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15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정액
	9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	260만원 정액
	1,4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9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3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00만 원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200분의 300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신청 •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비 고	• 관할부처: 기획재정부

자활근로사업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지원대상	자활사업 대상자 = ① 조건부 수급자 + ② 자활급여 특례자 + ③ 일반수급자 ④ 급여특례가구원 ⑤ 차상위계층 ⑥ 시설수급자 • 의무참여: ① / 희망참여: ②~⑥ / 수급자: ①②③ / 참여우선순위: ①→②→③④⑤⑥
선정기준	• 자활근로 유형

구분	내용
시장진입형	–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
인턴 · 도우미형	–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

선정기준	•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기준(원/인·일) 구분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 53,440/57,440 / 46,790/50,790 / 27,970 실 비 / 4,000 / 4,000 / 4,000 표준소득액(월) / 1,285,440 / 1,112,540 / 623,220 비 고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은 해당 사업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4천원의 추가 급여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Ⅰ : 만 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만 24세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취업성공패키지 Ⅱ : 만 18세~69세이하 ※ 청년층(만 18~34세 이하): 고등학교 비진학 청년, 대졸 이상 미취업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대학교(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중장년층(만 35~69세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영세자영업자 • 장애인 취업성공페키지: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 취업지원내용 1단계 진단·경로 설정: – 집중 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 – 취업역량평가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수립 » 2단계 의욕·능력 증진: – 일경험지원 – 창업지원 – 직업훈련 » 3단계 집중·취업 알선: – 직업정보 제공 – 취업상담 – 동행면접 등 » 4단계 사후관리: – 참여자 관리 – 취업자 직장적응 시 애로사항 등 상담 – 미취업자 구인정보 제공, 조기취업 독려 • 취업지원내용 1단계: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2단계: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3단계: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1년 근속시) ※ 취업성공패키지 Ⅰ 대상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방문신청 ※ 장애인취업패키지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참고: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www.work.go.kr/pkg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새희망일자리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및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주 5일 근무(1일 5시간 이내, 주 25시간 이내 원칙) 통한 급여 지급
※ 65세 이상인 자는 1일 3시간 이내, 주 15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참여자 인건비: 8,350원(시간당),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주차, 월차 지급
※ 사정에 따라 근무 조건 등 변동 가능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중년 디딤돌사업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만 65세 미만 수원시민으로 부부합산 1년 재산세 50만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 주 25시간 근무(1일 5시간, 5일 근무)
· 시급 8,350원, 부대비 5,000원 별도 지급, 주·월차수당 지급
※ 사정에 따라 근무 조건 등 변동 가능

문 의 ·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031-228-3273

◈ 대학생 인턴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지원내용 · 연2회(동·하계 방학기간) 시청, 사업소,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턴 근무
· 주 5일(월~금요일), 1일 7시간 또는 8시간
※ 도서관 등 평일 휴관일이 있는 근무부서는 주말 대체근무할 수 있음
· 기본급, 주휴·연차수당 지급
※ 임금지급시 본인부담 사회보험료 원천 공제
· 수원시 홈페이지 통해 인터넷 신청
(1월 사업: 전년도 12월 초, 7월 사업: 당해년도 6월 초)

문 의 · 수원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관 ☎031-228-2998

◈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만 19세~만 34세 구직활동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취업준비 청년(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원내용 · 대중교통 이용 교통카드(30만원) 지급
· 온라인 접수(수원시 홈페이지,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 방문 접수 (수원시 청년정책과)

문 의 · 수원시 청년정책관 ☎031-228-3961, 3964

◈ 청나래(취업준비청년 정장 대여 사업)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만 19세~만 34세 취업준비청년
※ 미취업청년, 취업 준비 중인 고교졸업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대여품목: 면접 정장(재킷, 바지, 스커트,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등)
· 대여기간: 4일(1인 연 3회)
· 대여 운영시간: 월~금, 10:00~18:00(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대여방법: 전화·방문 사전예약 후 현장 대여(무료)

문 의 · 청년바람지대 ☎031-248-9089
· 슈트갤러리 ☎031-211-0433

성남시

◈ 대학생지방행정체험연수

지원대상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대학생

지원내용 · 행정체험연수(동계, 하계방학)
– 1일 3시간 이내/연수비 3만원(일)

문 의 ·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8503

안산시

◈ 안산시 청년인턴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시거주자 중 만 18세~만 39세 이하의 고졸 이상 미취업 청년층

지원내용 · 청년 미취업자의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기회 제공

문 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3982

◈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안산시민 중 사업에서 정한 자격증 등 요건을 갖춘 자

지원내용 · 업무경험 제공을 통해 민간일자리 진입 촉진

문 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3280

안양시

◈ 청년옷장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세~34세 청년
지원내용 · 면접 정장 무료대여
– 남성: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넥타이
– 여성: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문 의 · 안양시 경제정책과 ☎031-8045-2362

시흥시

◈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29세 이하의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내용 · 평일 주 4일, 1일 4시간 행정 보조 업무 등
※ 일부 사업부서의 경우, 주말 근무
문 의 ·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031-310-6258

화성시

◈ 대학생일자리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재학생)
지원내용 · 주 5일, 1일 5시간 행정업무 보조, 각종 사업 지원
문 의 · 화성시 일자리정책과 ☎031-369-2684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지원대상 · 화성시 거주 만 18세~만 39세 구직 중인 청년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3박 4일, 연 5회)
※ 의류 손상, 분실시 대여자 부담비용 발생
문 의 · 열린옷장 ☎02-6929-1020
· 슈트갤러리 ☎031-211-0433

광명시

◈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대상 ·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대(4년제),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직업전문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 주 5일, 1일 7시간 행정보조 또는 학습보조
문 의 ·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6299

군포시

◈ 청년날개(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지원대상 · 군포시 거주 청년(만 18세~만 34세) 및 한세대 재학생
※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용 가능

지원내용 · 면접정장 대여
– 남자: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타이
– 여자: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문 의 · 군포시일자리센터 ☎031-390-0616

김포시

◈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대상 · 김포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타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지원내용 · 1일 7시간, 환경분야 취약지 청소업무 및 프로그램 참여

문 의 · 김포시 행정과 ☎031-980-2534

◈ 김포청년 내일옷장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 및 고교 졸업예정자

지원내용 · 면접정장 무료대여

문 의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275~7

◈ 김포청년 창업아카데미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 청년 40명

지원내용 ·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본 및 심화교육, 워크숍, 1:1멘토링 실시

문 의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275~7

오산시

◈ 청년인턴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만 34세 이하의 고졸 이상 미취업 청년
※ 신청 후 관내 미거주자로 확인 시 본 사업 및 다음연도 사업 참여배제

지원내용 · 주5일 8시간/행정업무보조 및 각종 사업지원 등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하남시

◈ 도제식 맞춤형 취업지원학교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중인 만 19세~만 49세 취·창업희망자
※ 목공과정은 만 55세까지 모집

지원내용 · 하남시 기술분야 취·창업 전문교수 강의(무료)

문 의 · 하남시청 일자리센터팀 ☎031-790-5237

◈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하남시인 만 18세~만 34세 구직자(졸업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면접정장 대여
※ 1인 연 3회, 1회시 3박 4일
문 의 · 하남시 일자리센터 ☎031-790-6980

의왕시

◈ 의왕시 청년옷장

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 청년(19~39세) 구직자
지원내용 · 면접정장 무료대여, 연 5회, 1회 3박 4일
– 남자: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넥타이
– 여자: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 연 5회, 1회 3박 4일
문 의 · 의왕시 일자리센터 ☎031-345-2463

고양시

◈ 고양청년 희망나래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양시 거주 청년 만 18세~만 34세 구직자(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고양시 소재 대학교 구직 대학생, 덕양구 원흥동 소재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 입주 대학생
※ 워크넷 또는 일자리센터 구직등록 필한 자
지원내용 · 기본정장, 와이셔츠(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 대여, 1인당 연 5회, 1회 3박 4일
문 의 ·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3714

정부지원 일자리제공(일모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 선발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일모아)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지원대상	• 미취업자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노숙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갱생보호대상자
지원내용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 일모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일자리 조회 후 관련기관에 문의, 신청 • 일모아: www.ilmoa.go.kr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3) 학령기(7~18세) » 고용·직업 » 내일배움카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의 근로자 및 사업주 •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액된 경우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원 한도 지원 • 사업주: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가능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 등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5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제35조의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0조의9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선정기준	• 가입제외자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가입 제외 기업 –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공공기업 및 공기업, 학교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청년 ·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과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수령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수령 – 기업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신청방법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참고하기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1인 이상의 기업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제외
– 중소기업 소속 상시근로자 중 해당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
–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 가입제한
– 휴·폐업 기업, 세금 (국세)체납 기업 청년근로자,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예:비영리기업)
– 기업의 대표자, 실경영주 등은 가입 제외

• 가입기간: 5년 만기제(단,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5년 선택가능)

• 납부방법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소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
– [핵심인력:사업주 = 1:2이상]의 비율로 납부

• 가입자혜택
–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핵심인력: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혹은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서작성 제출
– 방문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방문 신청
– 문의: 내일채움공제 ☎1588-6259

• 관할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보육 · 교육

평생교육 바우처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2,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35만원의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이나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을 통해 확인 가능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간은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 공지 • 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콜센터 ☎1600-3005 • 관련 사이트: 평생교육 바우처 https://www.lllcard.kr/
비 고	• 관할부처: 교육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시흥시

◈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대상 · 성인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체육 교육: 체력 증진 및 문화예술 교육
– 자립기반 교육: 자격증 취득 및 취·창업 지원 교육
– 기타: 전문가 특강, 교양 교육 등
문 의 · 시흥시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031-310-2508

동두천시

◈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지원대상 ·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문해교육, 초·중·고 검정고시반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 노래, 음악합주교실 등)
문 의 · 동두천시두드림장애인학교 ☎031-864-7447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지원대상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 흉부방사선 촬영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요검사 (요단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혈액검사 –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체여과율(e-GFR)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간염검사 – B형간염표면항원·항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 B형간염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자동, 피동면역으로 인한 항체 형성자는 제외
• 골밀도 검사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54세, 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생활습관평가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50, 60, 70세
•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20, 30, 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치면세균막 검사)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에 실시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건강검진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장애인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 필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국가암검진

국가 암 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추진근거	• 「암관리법」 제11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호)」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보험료 부과기준: (직장) 93,000원 이하, (지역) 94,000원 이하
지원내용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무료검진 • 암종별 검진대상 및 검진주기
지원내용	암종 / 검진대상 / 검진주기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2년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1년 간암 / 만 40세 이상의 남녀로 간암발생 고위험군* / 6개월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2년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2년 ※ 간암발생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자에게 매년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로 발송 • 문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www.cancer.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추진근거	• 「암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지원대상	구분 / 성인의료급여수급자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성인 폐암 환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계층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 국가암검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 ※ 납부액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 – 2018년까지 국가암검진 통해 확인된 암환자 (건강보험료 기준) ※'18. (직장) 91,000원 이하 (지역) 96,000원 이하 '19. (직장) 91,000원 이하 (지역) 96,000원 이하 /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차상위계층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 – 폐암검진 시범사업, 폐암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진단 받은 원발성 폐암 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직장) 96,000원 이하 (지역) 97,000원 이하



지원내용	<table><tr><th>구분</th><th>성인의료급여수급자</th><th>성인 건강보험가입자</th><th>성인 폐암 환자</th></tr><tr><td>지원암종</td><td>- 전체 암종</td><td>-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전이암, 재발암</td><td>- 원발성 폐암(C34)</td></tr><tr><td>지원금액</td><td>- 급여 120만 원 - 비급여 100만 원</td><td>- 급여 200만 원</td><td>- 의료급여: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건강보험: 급여 200만원</td></tr><tr><td>지원기간</td><td>- 연속 최대 3년</td><td>- 연속 최대 3년</td><td>- 연속 최대 3년</td></tr></table>
신청방법	• 의료비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www.cancer.go.kr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성남시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성인 암 환자, 폐암 환자, 소아암 환자
※ 국가 무료 암검진 수검시기, 소득 및 재산기준 등 해당 사업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 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 지원기간: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3년간

·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 조혈모세포 이식: 연간 최대 3천만원
- 백혈병 이외: 연간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최대 3천만원)
- 지원기간: 만 18세 도래해까지(단, 신규인 경우 생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

문 의 ·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031-729-397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과 예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 및 건강생활습관 실천율, 지속치료율 향상

추진근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지원대상	• 지역주민, 보건소 내소자 • 1차 건강검진을 통해 기준값 이상으로 조기 발견된 환자 •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록자(해당 지역) • 그 외 심뇌혈관질환자(뇌졸중, 심근경색 등)
지원내용	• 사업대상 질환 –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 심뇌혈관질환: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 지원내용 – 지역사회 홍보사업: 캠페인 및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홍보, 건강강좌 개최 등 – 환자 조기발견사업: 캠페인 및 건강검진 홍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 –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관리 사업 : 만성질환관리사업 환자 등록, 환자 대상 교육실시 및 적절한 의료 처방,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 실시 등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사업대상: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참여기관: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 진료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 서비스내용 – 지속 치료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1인당 등록비 1,000원 지원 : 30~64세 고혈압, 당뇨병 환자 1인당 등록비 5,000원 지원 – 환자의 건강행태 개선과 지속치료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 65세 이상 등록 환자 본인부담금(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지원 ※ 65세 이상 환자 월 3,500원 정액지원(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연 42,000원 수준 –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해 치료 일정 및 누락 일정 안내서비스 제공 – 환자의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질환 및 영양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문의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 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건·의료 » 청각장애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지원

일상생활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비 고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 4)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경기도

일상생활에 기본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지원과 산후관리,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증진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3) 학령기(7~18세) » 일상생활 »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2019년 서비스 제공인원: 2,500명
선정기준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장애인 20% 이상 선정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서비스 제공 • 주간활동프로그램 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기타 제반 창작활동

- 본인부담금: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에 매칭하는 본인부담금 없음
- 활동지원 급여 조정: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구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44시간	88시간	120시간
활동지원	-	-40시간	-72시간
총급여량	+44시간	+48시간	+48시간

신청방법	• 시·군·구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법」 제9조
지원대상	• 후견심판청구 지원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혹은 지자체가 긴급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유형의 성인 장애인도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 월 15만원(월 최대 4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방법	• 본인, 가족,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성인기, 노년기 공통사업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공공후견인

- 공공후견지원사업의 공공후견인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인의 법적권한을 부여받은 자
- 후견인의 법적 요건 – 민법에는 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만 규정

>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수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 후견인 선임시 고려 사항
  - 공공후견법인에서 후견인으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
    ※ 사리판단 능력, 시간적 여유, 거주 지역,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직업 및 경험, 사업 참여의지 등
    ※ 후견서비스 내용에 따라 필요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이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 1.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4.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공공후견법인(후견인 모집 및 교육실시)
  -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부터 제26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제외대상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 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해 완납시 대여 가능)
지원내용	단축형 / 대출한도(가구당) / 대출조건 / 상환방법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무보증대출 요건) 기존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 / 5년 거치, 5년 상환 보증대출 / 2,000만원 이하 /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 • 대여이자는 금리최고 연 3%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기관: 국민은행지점 • 대여재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업무상 사고 또는 질환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원대상	•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가족
지원내용	

구분	지원세부내용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환자에게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기타비용 지출
휴업급여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지급(61세 도달시)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은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체계 ※ 1~3급: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 가능 4~7급: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선택 가능 8~14급: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 가능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 연금지급이 원칙(수급자 선택에 의해 50% 일시금 지급 가능), 연금수급자가 없는 경우 예외 ※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정도 및 간병 필요성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 ※ 상시간병급여: 41,170원/일 ※ 수시간병급여: 27,450원/일
상병보상 급여	요양 개시 이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 평균임금 x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 고령자 상병보상연금감액 지급(61세 도달시)
장의비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5,554,290원, 최저고시금액: 11,097,760원
직업재활 급여	제 1~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귀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 1급~12급 산재 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함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내일이룸학교

가출 등의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사회적·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립을 도움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3) 학령기(7~18세) » 일상생활 » 내일이룸학교

장애인 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지원대상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인 중 별도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별도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 면허증에 면허조건이 부과된 별도기준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찾아가는 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 – 운전면허취득 교육과정 – 운전면허취득자 교육과정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 • 문의: 국립재활원 ☎02-901-1700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하남시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일반 장애인 35만원 이내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노 년 기

65세 이상

경제

- 기초연금
-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
- 주택연금
- 노후긴급자금 대부

고용·직업

- 장애인 창업지원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 취업성공패키지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일모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어르신 IT봉사단
- 사회공헌활동 지원
-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보육·교육

- 고령층 정보화교육

보건·의료

- 일반건강검진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국가 암검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노인 실명예방
- 노인 의치(틀니) 지원
- 노인 임플란트 지원
-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 치매 검진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일상생활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 365어르신돌봄센터
- 노인보호전문기관

05 노년기(65세 이상)

경 제

기초연금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도모

추진근거	• 「기초연금법」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70,000원 · 부부가구: 2,192,000원
선정기준	• 제외대상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아래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 자격있음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 매월 25일, 월 최대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저 25,375원~최대 253,750원까지 차등지급 •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려 후 산정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는 기준연금액의 50% 를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감액: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초과하는 경우, 감액하며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기초연금액 결정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급액 ※ 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18.9월 ~ '19.3월: 월 25만원/ '19.4월 ~ '20.3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3,750원

신청방법	• 신청을 희망하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수원시

◈ 효도수당

지원대상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3세대 이상 가구
※ 모든 세대가 함께 수원시에 같은 주소지에서 연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지원내용 · 반기별 5만원
※ 연 2회(6, 12월), 자녀(자부 포함)에게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효사랑지원금

지원대상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 기초연금 비수급자
지원내용 · 월 2만원
※ 연 4회(4, 7, 10, 12월)/분기별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부천시

◈ 장수수당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인 장수노인
지원내용 · 월 2만원 장수수당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용인시

◈ 효도수당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시부모, 장인장모 부양 포함
지원내용 ·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1인당 월 3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안산시

장수수당 및 100세 축하금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1년 이상 만 8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장수수당 월 3만원
· 100세 축하금 50만원(1회)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안양시

장수노인지원

지원대상 ·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 노인
지원내용 · 만 85세 이상 월 2만원, 만 90세 이상 월 3만원 지급
문 의 · 안양시 노인장애인과 ☎031-8045-5577

시흥시

효도수당

지원대상 · 3세대 가정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상자
※ 효도대상자가 70세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월 3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화성시

장수수당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0세 이상 장수노인
※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월 3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효도수당

지원대상 · 효도자와 효도대상자가 화성시에 5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주민등록법에 따라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지원내용 · 분기별 5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광명시

효행장려금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한 4세대 가구
지원내용 · 연 1회 가구당 50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천시

◈ 이천시 장수수당

지원대상 · 이천에 거주한 1년 이상자로 만 90세 이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무료복지시설입소자, 3개월 이상 해외출국자 제외
지원내용 · 월 4만원
문 의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031-645-3554

오산시

◈ 장수수당

지원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장기출타자, 국외거주자 제외
지원내용 · 월 2만원
문 의 · 오산시 노인장애인과 ☎031-8036-7447

하남시

◈ 노인 장수수당

지원대상 · 1926. 12. 31. 이전 출생자 중 2016. 1. 1. 이전부터 하남시에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월 3만원
문 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의왕시

◈ 효행장려수당

지원대상 ·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 포함 4대 가구
지원내용 · 1회 5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과천시

◈ 장수수당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노인 중 과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1인 월 3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효도의료비, 효도교통비

지원대상 ·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대상자
지원내용 · 효도의료비 월 7만원, 효도교통비 월 3만원
※ 지역화폐로 지급
문 의 · 과천시 사회복지과 ☎02-3677-2263

고양시

◈ 효 가정지원(효도수당)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지원내용 · 가구당 월 3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100세인 수당, 장제비, 생일 지원

지원대상 ·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수당: 월 5만원
· 장제비: 10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생일지원: 2만 5천원 상당 생일케이크(100세 생일날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 장수수당

지원대상 · 의정부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만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
지원내용 · 월 2만원(매월)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파주시

◈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대상 · 1926. 12. 31.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월 3만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리시

◈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원대상 · 현재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8세 노인
지원내용 · 1인 10만원
문 의 · 구리시 사회복지과 ☎031-550-2277

양주시

◈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1~4세대가 모두 주민등록상 한 세대 구성 및 실거주자
※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1년 이상 양주시에 거주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1회)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천군

◈ 장수노인지원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연천군 거주자 또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만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월 2만원
·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설 명절)
문 의 · 연천군 복지지원과 ☎031-839-2216

◈ 홀로사는 노인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지원내용 · 홀로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
·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문 의 · 관할 읍·면사무소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운영

경기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노인 방지 및 노인 급식 수준 향상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지원대상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내용	•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 무료로 급식 제공 •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경로식당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보험료 지원

추진근거	•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 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군수가 검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지사에 대상자 확정통보 후 지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동절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지원대상	•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독거노인)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월동난방비 지원 • 사업기간: 1, 2, 3, 11, 12월(연간 5개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 경기도

저소득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폐지줍는 어르신들의 안전도모

추진근거	•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도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내용	• 안전장비 보급, 안전교육, 의료지원, 일자리연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031-8008-2562

주택연금(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경제 » 주택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경제 » 노후긴급자금 대부

고용 · 직업

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고용·직업 » 장애인 창업지원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입대(전세)받아, 예비 장애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장소를 제공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고용·직업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경기도

운전관련 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고용·직업 »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 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고용·직업 » 취업성공패키지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일모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 선발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일모아)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고용·직업 »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일모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참여자격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사업단·인력파견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선정기준	• 참여자 선발기준표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사업 참여 허용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포함)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단 제외) ※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내용	• 사업내용

구분		유형		주요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사회 활동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돌봄시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시장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취창업	인력파견형 사업단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인턴십	만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기업연계형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 활동시간 및 수당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활동비(월)	활동시간	참여기간	부대경비(연)
공익활동	27만원	월 30시간	9개월, 연중	14만원~16만원
사회서비스형	54만원~59.4만원	월 60~66시간	10개월~11개월	48.9만원
시장형사업단	–	1일 8시간 이내	연중	230만원
인력파견형사업단	–	–	연중	15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174.6만원	–	12개월	–

신청방법	•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통합 모집 및 선발 진행 • 사회서비스형은 지자체 주관하여 참여자 통합모집(수행기관별 선발)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사업단은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실시 • 모집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 및 복지로, 국민연금 일자리추천시스템에 연계 공고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와 선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시·군·구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88-169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시니어클럽

- 노인의 생애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주요업무 및 역할
  -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 관리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성남시

◈ 지역복지봉사단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지원대상 · 경로당 급식도우미: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로당 추천자
· 환경정비사업 등: 65세 이상 성남시 거주자

지원내용 · 경로당 급식(청소)도우미: 1일 2~3시간, 월 30시간(월 30만원 이내)
· 환경정비사업 등: 1일 2시간 6일, 월 12시간(월 12만원 이내)

문 의 · 성남시 노인복지과 ☎031-729-2887

부천시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구직자: 구직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우선), 만 60세 이상 노인
· 구인처: 노인 취업 희망 업체 및 기관(단체) 등

지원내용 ·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 알선, 취업, 연계, 조정 및 사후관리
· 지역사회 내 노인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문 의 · 부천시 노인복지과 ☎032-625-2878

이천시

◈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지원대상 · 기업 CEO, 행정가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고학력)은퇴자
지원내용 · 퇴직 전문가에게 구인기업발굴, 동행면접, 기타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상담
문 의 · 이천시 기업지원과 ☎031-644-2587

어르신 IT봉사단

정보활용능력이 우수한 어르신들의 IT봉사활동을 통해 정보화를 통한 활동적 사회참여 및 디지털 역량 나눔의 기회 제공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원대상	• 봉사단원 – 정보화능력 및 봉사활동 욕구를 지닌 만 55세(1963년 출생자까지) 이상 어르신 3~5명으로 팀 구성 • 운영기관: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으로 봉사단원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감동할 수 있는 기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민법32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대 이상의 대학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노인복지 및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 개인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1개 기관별 1개 봉사단만 구성 ※ 팀별 구성 인원은 신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3~5명), 선정과정에서 팀별 인원이 임의 조정 될 수 있음 • 참여제외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단 등 우리원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
지원내용	• 봉사단 활동비: 1인당 월 26만원(봉사단원별 월 2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 기관 운영비: 1인당 월 2만원(봉사단원별 월 20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 정보화교육 표준 교재: 봉사단원 및 교육생 모두 제공(무료)
신청방법	• 개인별 신청은 받지 않으며, 1개 기관별 1개 봉사단만 구성 • 온라인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처: 디지털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 propose.nia.or.kr •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문화본부 디지털격차해소팀 ☎053-230-1398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 ☎053-230-1172
비 고	• 관할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공헌활동 지원

50세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에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퇴직 후 보람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참여기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역량 강화를 하도록 지원

추진근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이며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의 퇴직전문인력으로서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자 •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공공기관 등
지원내용	•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9천원(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 –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3천원(교통비) 지급 • 참여수당 – 활동시간 1시간당 2천원 지원 • 활동시간 – 참여자 1인당 월 120시간 이내, 연 480시간 이내
신청방법	• 참여 신청자가 사회공헌활동 운영기관에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 • 2019년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운영기관

연번	운영기관명	연락처
1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02)6369-8987
2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031)928-5046
3	새롬워크개발원	031)443-2588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통해 퇴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한 시니어 기술창업을 지원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고용·직업 » 시니어기술 창업지원

보육 · 교육

고령층 정보화교육

고령층 정보화 교육 실시로 지식정보화 시대의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 확대 및 고령인력의 생산적 활용을 통한 활력 증진 도모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원대상	• 5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교육비 및 교재: 무료(당해년도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교육장소: 노인단체, 대학 평생교육원 등 고령층 정보화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민간단체 및 기관 • 교육과정
신청방법	•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후 교육신청가능 • 경기도 고령층 정보화 교육기관 •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격차해소팀 ☎053-230-1398 •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itstudy.or.kr
비 고	• 관할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세부내용
기초과정	컴사랑글사랑, 정보생활첫걸음, 한글 기초
실용과정	디지털커뮤니티,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스마트폰활용 등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시니어일대일컴퓨터교실	031)248-97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청솔종합사회복지관	031)714-6333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
은빛둥지	031)438-4088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2길20
안성종합사회복지관	031)671-0631	경기 안성시 산수유길 15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	031)636-0190	경기 이천시 남천로 31 이천시종합복지타운 2층
미디어영상실버아카데미	031)912-4678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57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031)559-5880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01-47
해피누리노인복지관	031)590-3013	경기 남양주시 늘을2로 67

보건 · 의료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보건·의료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4조,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지원내용	• 건강검진

검사항목	대상자
•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키, 몸무게, 비만도, 허리둘레 – 시력, 청력 측정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중증장애인 대상자 (1~3급)
• 골밀도 검사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 KDSQ-C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생활습관평가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 정신건강검사 – PHQ-9 검사 및 상담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 평형성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 연령에 실시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를 안내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 연령 대상자는 당연 대상 ※ 장애인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 필요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국가 암검진

국가 암 검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보건·의료 » 국가 암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보건·의료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

노인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노인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애를 연장하고자 함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접종백신: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 • 접종횟수: 1회 접종
신청방법	• 전국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지소 및 진료소 포함)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 감염 고위험군인 어르신에게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면역력 저하에 의한 치사율 감소 목적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신청방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 ※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비용 지원 불가 • 문의: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 043-719-6848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 http://nip.cdc.go.kr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질병부담 1위 질환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 관리를 통해 중증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 감소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보건·의료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노인 실명예방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정밀 안검진 및 개안수술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 제27조의4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이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노인 안검진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노인 개안수술 –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 질환 평균 약 105만원)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www.kfpb.org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부천시

◈ **EYE편한 안경나눔사업**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아동, 자활시설 노숙인

지원내용 · 검안·시력·동공측정검사, 무료맞춤안경지원, 시력보호 및 눈 건강 적정 관리 교육 등

문 의 · 부천시보건소 ☎032-625-4213

노인 의치(틀니) 지원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트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본인부담: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 • 틀니 급여 주기 및 횟수: 7년에 1회 적용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노인 임플란트 지원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지원내용	• 1인당 평생 2개 적용 • 본인부담: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대상자 등록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잇몸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 세정술을 시행하여 잇몸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불소도포를 하여 치근면 우식 예방 및 시린 이를 방지하기 위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15조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지원내용	•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 전신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 시행 – 사업 실시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장비 및 기구 사용 •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방법 – 치주처치방법: 스케일링 또는 전문가 치면 세정술 · 스케일링: 치아의 이동성이 없는 경우 · 전문가치면세정술: 치아의 이동성이 있는 경우 – 불소도포방법: 치아에 직접 도포, 트레이용 도포, 이온도포기 이용 도포 · 치아 직접 도포: 치아수가 적은 경우(10개 이내)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치매 검진사업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1조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 선별검사 대상자: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대상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선검진절차 및 지원내용

구분	검사내용	지원내용	비고
1단계	선별검사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무료	치매안심센터
2단계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8만원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뇌 영상 촬영 등)	8~11만원	협약병원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증진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치매환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치료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일상생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

비 고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4) 성인기(19~64세) » 일상생활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원대상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지원내용	• 급여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비고
월 한도액 (원)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복지용구 제외

지원내용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분 류		1일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69,150
	장기요양 2등급	64,170
	장기요양 3~5등급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60,590
	장기요양 2등급	56,220
	장기요양 3~5등급	51,820

– 치매전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분류	등급	1일당 금액(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장기요양 2등급	79,140	71,22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72,970	65,67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69,69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64,260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을 지급

•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일반), 7.5%(감경)

–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일반), 10%(감경)

※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하여 저소득계층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 요양급여 이용 시에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를 감경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안산시

◈ 노인복지(목욕) 바우처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내용 · 월 5,000원 목욕권 지급

※ 월별 목욕권 한 장씩을 분기별로 지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추출 및 소요수량 산정하면 안산시 사회복지과에서 제작하여 동별 배포

의왕시

◈ 이동목욕 운영

지원대상 · 의왕시 거주자로서 노화 및 질병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목욕이 불가능한 저소득 재가노인

※ 장기요양(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1인 기준 1일 1시간(월 2~3회)

문 의 · 아름채노인복지관 ☎031-427-0580, 사랑채노인복지관 ☎031-425-3676

여주시

◈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지원대상 ·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

※ 금사면, 대신면, 흥천면 제외

지원내용 · 관내 11개 목욕업소이용 목욕권 지급

※ 연 2회 지급(반기별)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남양주시

◈ 중풍, 치매노인 생활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중 중풍, 치매 등으로 기저귀가 필요한 노인가구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문 의 · 남양주시 노인장애인과 ☎031-590-259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선정기준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외대상(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섬김이 –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사업(바우처) 등 정기적 방문 전화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지원내용	•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의 서비스로 구성 • 안전확인 – 직접확인(가정방문) 주 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 2회 이상 – 기상·재난특보 시 안전확인 • 생활교육 – 독거노인의 사회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생활교육이 필요한 독거노인 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 서비스연계 – 대상자의 수시적인 서비스 사정에 따라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 이용료: 무료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하남시

◈ **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 동장 추천자

지원내용 · 일 960원 상당의 건강음료(요구르트) 직접 배달

문 의 · 하남시 사회복지과 ☎031-790-5719

과천시

◈ 독거노인 간병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지원내용 · 입원 3일 후부터 최대 27일까지 간병비 지원
※ 1일 6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파주시

◈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 및 행려자
지원내용 · 7일간 24시간 간병인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 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에 속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시·군·구청장 인정자: 차상위계층 이하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 • 단기가사서비스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가 돌봄이 필요한 자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방문서비스: 월 27시간, 36시간 ·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주간보호서비스: 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청소, 세탁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월

서비스 유형 및 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140% 미만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160% 이하
방문·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41,000원	57,000원	73,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54,000원	77,000원	97,000원
단기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6,000원	51,000원	65,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72,000원	102,000원	130,000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노인돌보미
- 대상: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 수당지급: 시간당 서비스 단가(12,960원) 중 9,720원 이상을 노인돌보미 임금으로 사용

※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지급(1일 최대 3시간 적용)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친구관계 형성 지원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지원대상	•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지원
선정기준	• 다음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지원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공식적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 능력(ADL) 제한으로 인하여 외부 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독거노인 –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지원내용	•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방문·전화·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http://cafe.daum.net/makefriends0 •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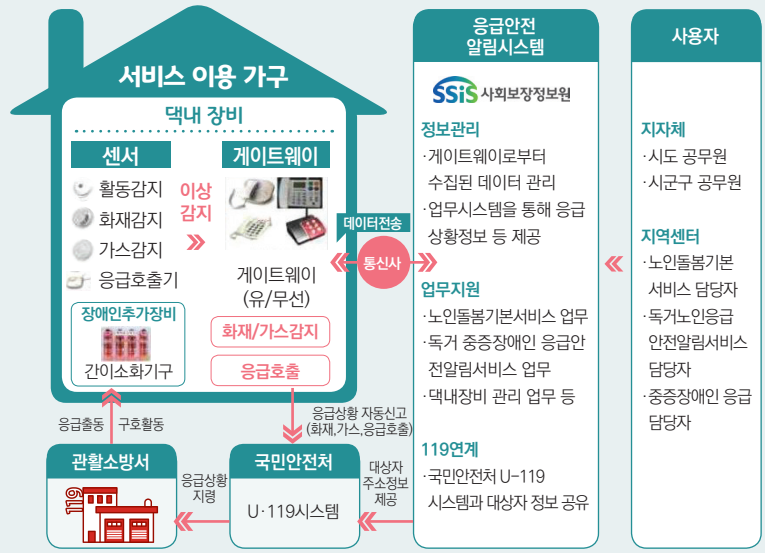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지원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의 거주자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진단검사 의뢰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활동지원등급 13등급(105점) 으로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2순위: 장애인활동지원 13등급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및 장애인 활동지원 14등급(75점 이상 ~ 105점 미만) 이하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3순위: 1, 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 선정제외: 정부(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 댁내 장비 –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 • 소방서: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 • 지역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자 관리 – 독거노인·장애인의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 대상자 가구 실태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전화 상담 및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02-6360-6170, 6171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흐름도



※ 중증 장애인 추가 장비: 간이 소화기구 등

- 댁내장비
  - (게이트웨이→소방서) 응급상황 자동 신고
    : 댁내 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게이트웨이→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
    : 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
- 소방서
  -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
- 지역센터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 대상자 관리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지원, 정보관리, 119연계의 역할 수행
    : (업무지원)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이 대상자관리, 사업실적관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
    : (정보관리) 중앙수집 서버에서 댁내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관리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경기도

생활곤란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친목도모 공간 제공과 노인 소일거리 연계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근거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경기도지사가 선정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그 밖에 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추천하는 노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시·군 소유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 건강프로그램: 웃음치료, 건강체조, 방문간호, 요가, 우울증 검사 등 – 여가프로그램: 한글교실, 노래교실, 라인댄스, 공예, 원예교실 등 – 소일거리: 쇼핑백접기, 마스크팩 포장, 옷걸이 조립, 볼펜조립, 마늘꼭지따기 등 •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법 – 생활근거지는 개인 거주 주택에 있고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소일거리작업, 점심식사 등만 카네이션 하우스에서 공동으로 이용 – 운영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식사 제공, 소일거리 재료비, 냉난방비 등 공과금 지원 – 사후관리: 시·군, 읍·면·동 및 관리 지정기관과의 협조 및 응급구조체제 구축
신청방법	• 문의: 지역 내 카네이션하우스

365어르신돌봄센터

경기도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요보호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365일 상시보호 체계 구축 도모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내·외자
지원내용	• 프로그램: 치매예방·심신치료 등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급식, 송영 등 • 이용료: 저소득층 무료, 일반인은 자부담(15%) ※ 저소득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경감대상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 이용시간: 주중 08:00~22:00, 주말 09:00~18:00
신청방법	• 문의: 지역 내 365어르신돌봄센터
비 고	• 지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시설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을 도지사가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사례 관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노인권익 보호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지원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 지원
지원내용	•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 예방 홍보와 교육실시를 통한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지원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구분	주소	연락처	홈페이지
경기도노인 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3층	031-268-1389	gepa.co.kr
경기남부노인 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68번길 28, 2층	031-736-1389	kg1389.or.kr
경기북부노인 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7	031-821-1461	www.gnnoin.kr
경기서부노인 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중로 68, 2층	032-683-1389	www.ggw1389.or.kr

신청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전화하여 신청 • 신청 및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전(全)생애

경제

-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체계
- 차상위 지원
- 긴급지원사업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 보훈대상자 지원
-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 미소금융
- 햇살론
- 바꿔드림론
- 새희망홀씨
- 소상공인 정책자금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 양곡할인

보육·교육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지원
- 장애인 정보화교육

보건·의료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등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장애인보장구(의료급여)
- 장애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중증장애인 치과 사업
- 의료급여제도
-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 구강보건
- 방문건강관리
- 아토피·천식예방관리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 권역재활병원

문화·여가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각장애인용 TV)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주거

- 장애인 주택특별(우선)공급
- 중증 장애인 주택 개조
-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 임대주택-행복주택
- 장기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매입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 신혼부부전세임대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긴급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자금
- 슬레이트 처리지원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그린홈)
-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 에너지바우처
-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 보금자리론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버팀목대출보증
- 주거안정월세대출
- 월세자금보증
- 전세자금보증

일상생활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경기여행누림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 무료법률구조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홈방범서비스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장애인 365쉼터 운영

06 전(全)생애

경 제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중증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생활의 안정 도모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1~2급, 3급 중복) –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여부 및 연령 구분 없이 지급 – 단,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개시: 냉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결정일은 수급자 책정일, 장애정도 결정일 기준 • 지급종료: 냉난방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지급정지: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3개월 이상)시 • 초과 지급된 냉난방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향후 지급할 냉난방비 또는 도비장애수당에서 상계처리 가능 • 기타 지급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연금과 동일 적용
비 고	• 시·군에서 자동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맞춤형 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4.12.30.)의 별칭
법률용어는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 방식

비 고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차상위 지원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국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비 고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 2) 차상위지원

긴급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 단전된 때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80천원, 4인기준 3,460천원)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5,900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3,000,000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00원 (4인기준)	6회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00원 - 중 352,700원 - 고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000원/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 (50만원 이내): 각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제한 없음

※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및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안성시

◈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으로 위기사항에 해당되고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의료비(보철비) 지원, 월세보증금 지원, 집수리비 지원, 장제비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등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사업) 경기도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 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 지원과 긴급지원 등 타법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정의 위기 해소를 위한 경기도 복지사업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서 –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의료비의 경우 지원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의료비에 한해 지원 – 노숙인(부랑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기사유**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사.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15,000만원,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 대도시(16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오산, 구리, 의왕, 하남, 과천 – 중소도시(15시군):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 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117만 400원 (월/4인기준)	6개월
주급여	의료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치료에 소요된 비급여 항목	1회 500만원 이내	-
주급여	주거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643,200원(월/대도시, 3~4인 기준) 422,900원 (월/중소도시, 3~4인 기준) 보증금 500만원 이내	12개월
부가급여	교육	고등학생 수업료 및 초·중·고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비용	초등: 214,000원 중등: 340,000원 고등: 417,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2회
부가급여	사례관리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정에게 필요한 물품·서비스 등 지원	1,450,500원(4인기준)	1회
부가급여	그 밖의 지원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를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3월): 월 92,000원 - 해산비: 1회 100만원 - 장제비: 1회 100만원		-

신청방법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이웃주민이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
- 지원요청을 하면 시·군·구, 읍·면·동 무한돌봄 담당 공무원이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게 되며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

추진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 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지원내용

- 지원종류

급여종류		내용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지원대상에 따라 매월 310,000원~5,714,000원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유족 (또는 친족) 중 상속인 - 대상에 따라 1,127,000원~3,26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0만 6,768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21만원~27만원, 4인 이상 가족 26만원~32만원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상시 간호수당 2,306,000원, 수시 간호수당 1,537,000원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무공영예수당,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영주귀국 정착금, 재해보상금, 재해위로금, 참전명예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지원내용	생활 안정 지원	재가 복지 지원	-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양로 지원	-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자녀는 제외) · 고엽제후유증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의료서비스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 안장 지원
		양육 지원	-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자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보훈 병원 진료	-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비진료 대상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은 감면진료 대상자 - 국비진료: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 감면진료: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위탁 병원 진료	-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비진료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는 감면진료 대상자 - 국비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 ※ 일부 대상자 본인부담(10%) 있을 수 있음 - 감면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약제비 제외)
		대부 지원	-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비진료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녀는 감면진료 대상자 - 국비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 ※ 일부 대상자 본인부담(10%) 있을 수 있음 - 감면진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약제비 제외)
		국가 유공자 등 취업지원	-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및 비상이자의 자녀, 부모 제외 -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5%를 의무채용 -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9%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10%) -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점수에 10% 또는 5%의 가점 부여
		요양지원,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 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교통시설 이용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지원내용	교육지원	국가보훈 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면제
		국가보훈 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중학교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186,000원, 대학교 236,000원, 특수학교 534,000원~718,000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대상: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일정 생활수준(4인 기준 461만원)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제대군인 본인은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고교취학 자녀는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국가보훈 대상자 등 보훈장학금 지급	- 대상: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6·25전몰군경 자녀의 대학교 재학 자녀 - 대학원 학기별 최대 1,150,000원까지 장학금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0,000원 장학금 지급, 6·25전몰군경 유가족은 학기별로 학사과정은 최대 90만 원, 전문학사 과정은 최대 70만 원까지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비 고	• 국가보훈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임금을 받지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재직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도모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지원대상	•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537만원 이하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청 조건: 융자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고, 노임단가 5일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 만큼 연리 2.5%(보증료 연 1% 선공제)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저소득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20조
지원대상	구분 / 내용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고,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 소득이 176만원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 소득이 17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구분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 요양비 / 자녀 학자금 / 임금감소 생계비 / 소액 생계비 한도 / 1,000만원 / 1,250만원 / 1,000만원 / 1인당 500만원 (최대 1천만원) / 1인당 500만원 (최대 1천만원) / 1,000만원 / 200만원 조건: 연리 2.5%/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취약계층(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9조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 중 3주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전직 실업자 지원
선정기준	•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동일 – 연간소득액(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이 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인 자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5,362,432원 ※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가능 – 월별대부한도액: 50~200만원 이내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택1 – 융자금리: 연 1%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비 고	• 관할부처: 고용노동부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창업, 운영자금, 생계자금, 주거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

추진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조건 / 금리 연 4.5%, 5년 이내 상환 / 금리 연 4.5%, 4년 이내 상환 ※ 긴급생계자금은 미소금융대출을 1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자에게 지원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에 신청 •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비 고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햇살론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소득자 중 연소득 3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신용등급 미적용
지원내용	구분 / 생계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환자금 한도 / 1천5백만원 / 5백만원 / 3천만원 조건 / 금리 연 1%, 3년 또는 5년 이내 원금균등불할 상환
신청방법	• 서민금융회사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전국지점에 신청 •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비 고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 제도

추진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근로자는 4천5백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5천만원 이하인 자 • 채무상환기관이 6개월 이상인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3천만원 • 금리 연 6.5%~10.5% • 대출기간 최장 5년(자영업자 6년)
신청방법	• 국민행복기금에 신청 ☎1588-3570 • 문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비 고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새희망홀씨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

추진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및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연 10.5% 이하(은행별로 상이) •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 운영기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기타: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우대 • 긴급생계자금: 새희망홀씨 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5백만원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취급은행 콜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 • 문의: 금융감독원콜센터 ☎1332, www.fss.or.kr
비 고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망을 구축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선정기준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선정기준	•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고용안정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사회적기업전용자금: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 조합 – 청년고용특별자금: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사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인 이상시 50%이상 청년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은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대리대출)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직접대출)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신청방법	•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비 고	• 관할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조정 등 지원

추진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 ※ 지원대상자 여부는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 문의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조정 – 일반감면: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6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율 산정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 (10·20·30%) 감면 가능 ※ 채무조정 약정 취소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 취소
신청방법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 또는 홈페이지 신청 • 문의: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www.happyfund.or.kr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비 고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추진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 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 개인워크아웃

구분	채무감면	상환기간	변제유예
무담보 채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 (최대 70% 까지) –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담보 채무	– 연체이자만 감면	–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table>
<tr><td>지원내용</td><td>• 프리워크아웃
<table>
<tr><th>구분</th><th>채무감면</th><th>상환기간</th><th>변제유예</th></tr>
<tr><td>무담보 채무</td><td>–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함
–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td><td>–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td><td rowspan="2">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연2%)</td></tr>
<tr><td>담보 채무</td><td>– 연체이자만 감면</td><td>–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기존 채무의 잔존상 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td></tr>
</table></td></tr>
<tr><td>신청방법</td><td>•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대표전화 ☎1600-5500, www.ccrs.or.kr</td></tr>
<tr><td>비 고</td><td>• 관할부처: 금융감독원</td></tr>
</table>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 지원

추진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지원
선정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대상 • 소외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가구수 결정)
지원내용	• LPG가스 호스가 설치된 주택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지원 (가구당 21만 7,000원 상당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개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기초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비 고	•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안산시

◈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보급사업

지원대상 ·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내용 ·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안양시

◈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세대,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세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가스안전 자동차단기(타이머콕) 무상지원
문 의 · 안양시 경제정책과 ☎031-8045-2948

고양시

◈ 재난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콕 보급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우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지원내용 · 가스안전 자동차단기(타이머콕) 예산 내 무상지원
문 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 ☎031-927-2700

동두천시

◈ 동두천시 타이머콕(가스안전잠금장치) 보급사업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내용 · 타이머콕 설치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거주시설 입소이용료를 지원하여 시설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지원대상	• 입소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85% 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시설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선정 • 소득 확인 대상자는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 확인 방법 – 근로 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 확인 – 사업 소득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 확인 – 기타 소득자: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를 준용하여 소득 추계
지원내용	• 입소 장애인에 대하여 월 29만원의 입소료를 해당 시설로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서비스 신청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성남시

◈ **장애인 일시보호비 지원**

지원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장애인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자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장애인

지원내용 · 일시보호비용: 1일 8만원(최대 90일까지)
※ 일시보호시설: 18세 이상 장애인(무지개동산 예가원), 18세 미만 장애인(소망재활원)

문 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3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추진근거	• 「양곡관리법」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지원
선정기준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님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신청하는 사람 선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장애인수당이나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지원내용	•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 가능 • 양곡대금 (단위: 원)

구분		개인부담	납부방법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960	– 생계급여 수급자: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공제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읍·면·동에 계좌이체 또는 현금 납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800	
2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88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9,410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보육 · 교육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을 가진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지원대상	• 등록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주요 사업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상담 및 사례관리 / ·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 · 사례관리 종결평가: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 사후관리: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후 문제해결 등 지원 · 평가: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을 평가 역량강화 교육 /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구, 복지부 교육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장애여성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기획하여 연중 개설·운영 자조모임 / ·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신청방법	• 각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지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교사를 위해 교수·학습지원 콘텐츠를 개발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 지원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원대상	•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시각·청각·지체·지적·자폐성·정서행동·의사소통·학습·건강·발달 지체 장애인
지원내용	•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사이트 운영 • 에듀에이블: www.eduable.net
신청방법	• 국립특수교육원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수집제공활용동의서에 동의 및 신청 • 문의: 국립특수교육원 ☎041-537-1485
비 고	• 관할부처: 교육부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IT에 소질이 있는 장애인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원대상	• 모든 장애인 – 집합교육: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직계가족 – 방문교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보화도우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집합교육 – 교육장소: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경기도 19개) – 표육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	교육과정
기초교육	PC운용	윈도우 및 인터넷의 이용법과 H/W 및 S/W 관리 분야
	OA운용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업무용 S/W 기초 및 활용 관련분야
	생활활용	역기능 예방 및 특정활동 수행을 위한 인터넷의 생활분야별 교육분야
실용교육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제작, 디지털 사진 및 음악 등 홈멀티미디어 활용 및 그래픽S/W
	자격증 취득	각종 자격증 취득 대비분야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기술 및 관련 언어교육
	실무활용	단일 S/W 관련 교육이 아니라 특정 업무수행을 위한 제반 소양 교육분야

지원내용	• 방문교육 – 교육과정: 컴퓨터 기초, 한글기초 및 활용, 인터넷 기초 및 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홈페이지 제작 등 – 교육시간: 1일 3시간씩 주3회, 총20회(1년 3회 재교육 가능) •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교육비: 무료 • 정보화도우미 – 정보기기 수리 및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통신기기 활용법 및 정보화교육 수혜방법 안내 등 정보화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 및 방문 서비스 지원 – 정보화상담에 대한 전화상담 진행 ☎1588-2670 – 방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 도우미를 연결시켜 최단 시간 내에 방문 처리 ※ 1인 반기 2회, 연 4회의 서비스 제한
신청방법	• 집합교육은 교육기관 문의 후 신청 • 방문교육은 전화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 www.itstudy.or.kr •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02-3660-2552, 1588-2670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용인시

◈ **사랑의 PC 보급사업**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시민으로서 수혜자격이 있는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 수혜자격: 장애인, 수급권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 및 기타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 및 단체

지원내용 · 업무용 중고PC를 수리, 정비하여 필요한 소모품과 함께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PC 무료 보급

문 의 · 민원안내콜센터 ☎1577-1122

안양시

◈ **장애인정보화교육**

지원대상 · 컴퓨터 기초 및 전문 교육과정 희망 장애인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지원내용 · 기본 교육과정(3개월 이내): PC기초, 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등
· 전문 교육과정(6개월 이내): 워드프로세서, PC정비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검색사 등
※ 생활권 내 학원에서 교육(방문교육 포함) 제공, 구청에서 수강료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구리시

◈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대상 · 컴퓨터 기초 및 전문 교육과정 희망 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전문 교육과정으로 분리하여 교육 실시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보건 · 의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등

장애인 등록 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진단비용을 지급해주거나,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등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비 고 | Ⅲ. 부록 » 장애등록·심사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등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비 고	Ⅱ. 장애인·가족대상 복지서비스 » 2. 주요제도 및 서비스 »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기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장애인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 제한 · 2018년도에 동 사업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을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8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 단체 등으로부터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다만,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장애유형별 지원 품목 및 지원 기준

연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심장 장애인	35만원	3년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장애인	2만원	2년
4	음성시계	시각장애인	2만원	2년
5	시각신호표시기	청각장애인	15만원	2년
6	진동시계	청각장애인	3만원	2년
7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20만원	5년
8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5년
9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5년

지원내용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5만원	1년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150만원	3년
	16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장애인	12만원	2년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장애인	60만원	5년
	20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장애인	50만원	3년
	21	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30만원	8년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60만원	5년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35만원	4년
	24	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15만원	2년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10만원	5년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장애인	25만원	5년
	27	환경조정장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40만원	3년
	28	대화용장치	뇌병변·발달·청각·언어 장애인	60만원	4년
	29	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장애인	10만원	5년
	30	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120만원	10년
	※ 1, 2번 품목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해당사업 (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3번 품목 :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사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 유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 7, 8, 9번 품목(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3개 품목 중 한 품목만 신청 가능,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 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신청 • 문의: 장애인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 경기도 보조기기센터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남부) ☎031-295-7363 -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북부) ☎031-852-7363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장구(의료급여)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항목의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을 적용하여 구입비 지원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급여법」 제13조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대상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 지급기준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 가능
  -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유형 및 내구연한

연번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연번	유형	구분	기준액	내구연한
1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720,000	4	29	목뼈보조기	-	380,000	3
		기능형	1,400,000	4	30	척추보조기	-	150,000	3
2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790,000	4	31	허리·엉치뼈 보조기	-	190,000	3
		기능형	1,470,000	4	32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400,000	3
3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	570,000	4	33	코르셋	-	80,000	3
		기능형	1,250,000	4	34	골반 보조기	-	120,000	2
4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	570,000	4	35	긴 다리 보조기	-	540,000	3
		기능형	1,250,000	4	36	긴 다리 보조기	-	410,000	3
5	팔꿈치 관절 의지	미관형	560,000	3	37	양쪽 긴 다리 보조기	-	790,000	3
		기능형	1,240,000	3	38	무릎관절 보조기	-	190,000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형	560,000	3	39	무릎관절 보조기	-	160,000	3
		기능형	860,000	3	40	무릎관절 보조기	-	80,000	3
7	짧은 아래 팔 의지	미관형	450,000	3	41	짧은다리 보조기	-	370,000	3
		기능형	750,000	3	42	짧은다리 보조기 (플라스틱)	일체형	120,000	3
8	표준 아래 팔 의지	미관형	450,000	3			고정형	310,000	3
		기능형	750,000	3			크렌자크	360,000	3
9	손목 관절 의지	미관형	450,000	3	43	짧은다리 보조기(금속형)	고정형	300,000	3
		기능형	750,000	3			크렌자크	350,000	3

지원내용

10	손 의지	미관형	250,000	1	44	맞춤형 교정용 신발	–	250,000	1~2
		기능형	590,000	2	45	수동휠체어	일반형	480,000	5
11	손가락 의지	미관형	120,000	1			활동형	1,000,000	5
12	한쪽 골반 의지	–	1,740,000	4			틸팅형	800,000	5
13	엉덩이 관절 의지	–	1,740,000	4	46	지팡이	–	20,000	2
14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560,000	3	47	목발	–	15,000	2
		실리콘형	2,270,000	5	48	의안	–	620,000	5
15	넓적다리 체중 부하 의지	일반형	1,560,000	3	49	저시력 보조안경	–	100,000	5
		실리콘형	2,270,000	5	50	콘택트렌즈	–	80,000	3
16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1,490,000	3	51	돋보기	–	100,000	4
		실리콘형	2,010,000	5	52	망원경	–	100,000	4
17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1,290,000	3	53	흰지팡이	–	14,000	0.5
		실리콘형	1,810,000	3	54	보청기	–	1,310,000	5
18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860,000	3	55	체외용 인공후두	–	500,000	5
		실리콘형	1,520,000	3	56	전동휠체어	–	2,090,000	6
19	종아리 의지	일반형	740,000	3	57	전동스쿠터	–	1,670,000	6
		실리콘형	1,480,000	3	58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몸통, 골반	880,000	3
20	사임식 발목 관절 의지	일반형	530,000	2			머리, 목	210,000	3
		실리콘형	1,040,000	3			팔	170,000	3
21	의족	일반형	220,000	1			다리, 발	240,000	3
		실리콘형	720,000	2	59	욕창예방방석	–	250,000	3
22	어깨뼈 외전 보조기	–	290,000	3	60	욕창예방 매트리스	–	400,000	3
23	긴 팔 보조기 (일반)	–	240,000	3	61	이동식전동 리프트	본체	1,700,000	5
24	긴 팔 보조기 (각도 조절)	–	260,000	3			베이스	800,000	5
25	짧은 팔 보조기	–	90,000	3	62	보행보조차 (지지워커)	전방	50,000	3
26	손가락 관절 보조기	–	50,000	3			후방	300,000	3
27	목뼈 보조기	–	70,000	3	63	전지(소모품)	–	160,000	1.5
28	목뼈 보조기	–	60,000	3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장애인보장구 처방(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 인정) ⇒ 신청(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수급자격 판단 및 통보(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장구 구입(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 확인) ⇒ 보장구 검수(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함,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지급청구(시·군·구에 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부천시

◈ 저소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소득 및 장애유형 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유형: 지체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 장애인

※ 단, 심장,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 보장구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수동휠체어: 100,000원/연
·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200,000원/연

※ 중복(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 시 최고 1인당 연 200,000원 한도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용인시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리비용 전액(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 10만원 이내)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흥시

◈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 소모품 교체, 보장구 무료대여 등

문 의 · 시흥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070-7008-9030

광명시

◈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광명시 등록장애인으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광명시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연 20만원 이내)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50%(연 10만원 이내)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광주시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지원대상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휠체어(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에 장착된 부분 및 충전기 수리비 연간 20만원 지원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천시

◈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이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 중 이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자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그 외 장애인: 연 20만원 이내 지원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부품 및 충전기 지원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하남시

◈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사업

지원대상 · 하남시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품 교체 및 수리서비스 제공

※ 부품비 자부담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 이용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 20만원
· 일반장애인: 연 10만원(수리비의 1/2)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구리시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 수급자 외 장애인: 수리비 50%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문 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장애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함

추진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장애인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 장애인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시 등록장애인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1~4구간중 1구간으로 적용하여 산정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함 •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검강보험료에 대해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다시 경감함 –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비 고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장애인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하남시

◈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5천원 미만인 한부모세대, 장애인세대, 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자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 의 ·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008

여주시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여주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지역가입자 중 장애인, 한부모가족세대
지원내용 · 같은 지역 월 15,000원 미만, 읍·면지역 월 12,000원 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문 의 · 여주시 복지정책과 ☎031-887-2731

양평군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월 15,000원 미만 개별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 월 15,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문 의 · 양평군청 복지정책과 ☎031-770-227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치과) 병원, 보건소 등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위탁·운영지원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2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치과치료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 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 장애인 치과진료와 구강질환 예방사업 · 전문적인 장애인 치과 진료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구비 – 인접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등)과 협력·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구축 · 지역 보건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 해당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치과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 – 장애인 전문 친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 체계 역할 ·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 및 개발 – 비급여진료비 지원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신청방법	•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전화 예약 ☎031-8005-2936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치과 사업

경기도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구강질환관리 및 예방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15조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치과치료가 필요한자
지원내용	• 수행기관: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 사업내용 –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한 치과 진료소 운영 – 치아 활용가능 여부판단 적용하여 의사의 계획에 의한 모든 진료 (단, 임플란트, 교정, 틀니 및 심미치료는 지원불가) • 지원금액 –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자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80% 지원 · 수급자(1, 2종), 차상위, 중위소득 하위 50%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정신·지적·지체장애(1, 2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1~3급) 자폐성장애 – 장애 1~4급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에 한해 20% 지원 ※ 1인 연 150만원 한도 내 매년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162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108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0-4200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000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 1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종류: 의료급여

– 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 본인부담금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외래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입원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외래	10%	10%	10%	–	10%
	입원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종류: 요양비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자녀당 250,000원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 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 실구입가 지급

– 당뇨성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소모성 재료: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 지원(900원~2,500원)

·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주 70,000원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1일 9천원(1일당 최대 6개 이내의 범위)

– 산소치료: 의사 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임차한 경우)

· 가정용(12만원/월), 휴대용(20만원/월)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치료 서비스 등 기준 금액 지원

종류: 임신 · 출산 진료비

– Ⅱ. 장애인·가족대상 복지서비스 ⇒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1) 임신기(태아기) ⇒ '경제' 참조

종류: 장애인 보장구

– Ⅱ. 장애인·가족대상 복지서비스 ⇒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6) 전(全)생애 ⇒ '보건·의료' 참조

· 이외에 노인틀니,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치석제거 등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보훈지청(국가유공자) ☎1577-0606
• 문화재청(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1600-0064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경기도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및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심사, 등록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비 지불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추진근거	•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중위소득 하위 50% 이하)
선정기준	• 제외대상 –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영양제, 수면내시경 검사비 차액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원외처방된 약제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 긴급지원, 무한돌봄, 공동모금회 등 외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음 –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지원되지 않음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제증명 발급 관련 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병원별 운영 중인 공동간병인료 지원) – 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지원내용	• 경기도 의료원 '공공의료사업'임 • 지원내용 – 외래: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 면제(연간 지원횟수의 제한 없음) – 입원: 1회당 최초 20일 ※ 연간 입원 지원횟수 3회(60일)로 제한 – 가정간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난청센터: 등록대상자에 한하여 난청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지원 시 청각장애 여부 관계없이 수급자 종별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환급차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취약계층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자, 만성적으로 통증이 심하여 오랫동안 걷기가 불편한 자에게 정밀진단 후, 수술이 필요한 자에게 '인공관절치환술'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병원별 지원내용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 추천

구분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지원내용	외래 입원 가정간호 취약계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	외래 입원 가정간호 난청센터	외래 입원 가정간호	외래 입원 가정간호	외래 입원 가정간호	외래 입원 가정간호 난청센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진단 및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

추진근거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지원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재산 지원기준 만족자
  -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선정기준

- 재산기준: 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 자동차기준: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
- 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지원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진료비	951개 질환자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처방전에 의해 복막 관류액 및 자동복막 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보장구구입비	91개 질환자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94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95개 질환자	월 30만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등록자**
특수식이 구입비		7개 질환자	· 특수조제분유구입비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구입비 (연간 168만원 이내)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19세 미만의 경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업사업에서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질환: 보건복지부 「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붙임3 참조

신청방법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관계인이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의료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 단, 중증질환자(등록 암·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시 추가적으로 식대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등록기간 동안 근로능력평가 유예	· 산정특례 등록기간 만료 이후에도 질환이 계속되어 재등록한 경우에는 질환종료가 아니므로 기존대로 가구원 전원에게 1종 부여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5년, 중증화상환자: 1년(6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절차 예외 (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 산정특례 결핵, 중증(중증암, 중증화상)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단계별 (제1차 → 제2차 → 제3차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가능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로 인한 조건부연장승인 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기관 중에 한 곳 지정(제1선택) 가능하며,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추가지정 (제2선택)가능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각 질환별 산정

• 등록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지원대상	• 지역사회주민
지원내용	• 사업영역

지원내용	지원조건
금연	흡연예방, 흡연자 금연촉진,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조성
절주	음주조장환경 개선, 교육 및 홍보, 조기선별 및 상담
신체활동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교육, 개인별 신체활동 증진서비스, 홍보 및 캠페인,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영양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나트륨 저감화 홍보 및 캠페인, 식품 및 음식 영양정보 확인·환경조성,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노인, 다문화가족)
비만예방관리	비만예방 교육·상담·홍보·캠페인·환경조성, 비만자 관리(조기발견, 교육, 상담 등)
구강보건	구강보건 교육·홍보(바른양치실천), 불소도포,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영, 구강보건센터 등 운영·인프라구축

지원내용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심뇌혈관질환 교육·홍보, 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 프로그램 보급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취약계층 아토피·천식환자 지원(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등), 아토피·천식교육, 홍보 - Ⅱ. 장애인·가족대상 복지서비스 ⇒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6) 전생애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참조
	여성어린이특화 (모자보건)	임산부등록관리, 산모건강관리,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다문화가정 여성·어린이 건강증진, 영유아 건강증진
	치매관리	치매검진사업(무료검진 등)
	지역사회중심재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사회참여사업, 장애발생 예방사업
	방문건강관리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관리, 노인 허약예방,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관리, 장애인 재활관리 - Ⅱ. 장애인·가족대상 복지서비스 ⇒ 3.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6) 전생애 ⇒ '방문건강관리' 참조
신청방법	•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하남시

◈ 하남건강버스 운영

지원대상 · 일반 성인

지원내용 · 혈압·혈당검사
· 체성분검사, 골밀도 검사 및 모세혈관 검사
·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배부 및 산전검사
· 1:1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
· 기타 보건사업 안내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제공은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사전예약 필요

문 의 · 하남시 건강증진과 ☎031-790-6564

구강보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 홍보 등의 인식 제고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을 독려하고 위험행태를 개선하고자 함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지원대상	• 각 지역별 주민
지원내용	

사업	세부내용
구강보건교육	- 대상: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전체주민 - 내용: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질환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구강건강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및 예방법 습득 교육
구강보건홍보	- 내용: 구강보건의 날 의의, 구강관리 정보, 구강보건 서비스 참여 등
불소용액양치	- 대상: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생 - 내용: 학기 중 점심시간에 불소용액양치를 통해 치아우식증 예방 및 자조적 구강건강관리 능력 배양
어린이 불소도포	- 대상: 15세 이하 아동 - 내용: 대상자 구강건강 상태 확인 후 불소 겔 도포, 불소 바니쉬 도포, 불소 이온도입을 통해 불소도포 II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2) 영유아기(0~6세) → 보건의료 → 어린이 불소도포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 내용: 대상자 구강건강상태, 전신상태 확인 후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II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영역별 서비스 → 5) 노년기(65세~) → 보건의료 →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대상: 시·군·구 보건소 - 내용: 구강보건센터 설치비 지원, 생애주기별 업무, 구강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치아홈메우기·구강진료사업 활성화 등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 대상: 초등 및 특수학교 학생, 지역아동센터 학생 - 내용: 양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양치시설 운영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	- 대상: 초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 - 내용: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 지원, 구강보건실 운영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 대상: 정수장 - 내용: 불소첨가기 설치, 수돗물 불소농도를 적정농도로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음용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함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지원사업	- 대상: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보건소, 읍·면지역 보건지소 - 내용: 이동진료장비가 갖추어진 차량과 진료인력이 해당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구강건강관리를 중심으로 기타 보건의료관리 실시

신청방법	•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방문건강관리

지역주민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원대상	•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선정기준	•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외 의뢰자 등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 우선순위 기준에 적용되는 대상 중 특시 독거노인(6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75세 이상)를 우선 선정 (지역여건 등에 따라 0세(0~12개월)인 자도 포함)
지원내용	• 운영과정

구분	주요 내용	대상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 요인 파악	대상자 모두
	건강관리 모니터링	대상자 모두
자원 연계 스크리닝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필요도 조사	대상자 모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본 건강관리	대상자 모두
	건강행태개선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 '정상B'인 대상자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결과 건강문제(질환의심, 유질환자)가 있는 대상자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암, 심·뇌혈관진환 등)
	생애주기별 건강문제관리	신생아·영유아
		임부
		산부
		성인
		노인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재활관리	재가장애인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모두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건강스크리닝	- 집중관리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경우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통증, 재가암, 허약노인,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관리계획에 의해 6~8회 방문 - 정기관리군건강 : 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이 있으나 조절(위험군)이 되는 경우 : 관리계획에 의해 3~4회 방문 - 자기역량지원군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 관리계획에 의해 1~2회 방문
기본 건강관리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검진 안내 - 환절기 황사 대비 건강관리 - 여름철 폭염·호우 대비 건강관리 - 겨울철 한파 대비 건강관리 - 지진 등 재난 대비 건강관리 등 ※ 폭염 및 한파, 재난 시에는 미리 확보한 주요 건강관리대상자에게 우선 전화를 통해 상태 확인 후 필요 시 방문
건강관리 모니터링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보호자(가족, 동거인 등) 상담 등
건강행태개선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 결과확인 및 직접방문상담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 실천 동기 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정보 제공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스크리닝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결과 확인 및 직접방문상담 실시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복용 약물에 대한 점검 및 상담 - 암으로 인한 증상 및 통증 조절을 위한 정보 제공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임산부·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관리	- 고위험임부 및 정상임부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 모유수유 정보제공 및 상담 - 신생아·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노인 허약예방 관리	-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 허약노인 판정평가 실시 - 신체활동, 영양, 구강관리, 요실금, 우울 예방, 인지강화, 낙상예방을 위한 허약노인 중재프로그램 제공 - 저작, 연하, 발음, 타액 분비 등의 구강기능 향상을 위한 입체조 실시 - 치매 관련 건강관리 - 취미, 종교 활동 등 사회적 참여 지지 및 독려 - 가정 내·외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다문화가족 지지체계 확인 및 가족 내 의사소통 장애요인 파악 - 다문화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중재와 상담 - 북한이탈주민 중 결핵, B형간염 등 감염성 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건강위험군 발굴 및 등록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지원내용	장애인 재활 관리	- 기능증진을 위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관절구축 예방신체 활동 교육 - 기본 건강관리: 위생, 영양, 피부관리(욕창관리, 체위변경), 구강위생관리 등 - 연하장애·호흡장애 관리, 배변·배뇨관리 교육 및 훈련, 저작능력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교육 - 장애심화 위험요인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교육 - 2차 장애예방을 위한 낙상 및 안전관리 교육 -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보건서비스 · 보건소 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 보건소 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광역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 전문기관, 무료 수술 및 의료비 지원 등 -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사업(희망복지지원단 등) 의뢰 및 연계 등
신청방법	•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수준 향상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등
지원내용	• 수행기관: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및 25개 보건소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지정 운영 -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및 지식보급,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지원 알레르기질환 위험요인 모니터링 •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

서비스	대상	내용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관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및 안심어린이집	· 학교 중심의 아토피·천식관리를 통해 환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 알레르기 질환 환아 선별을 위한 설문조사 및 유병률 산출 (통합관리시스템이용) - 환아 지속관리 및 지원: 환아관리카드,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교육홍보자료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취약아동 진단 및 치료비 지원
취약계층 아토피·천식환자 지원	지역사회 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알레르기 질환 환자	·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통해 건강수준향상과 형평성 제고 -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보습제, 교육자료, 환경개선 등 지원
아토피·천식교육	환자 및 보호자, 노인, 임산부 등	· 알레르기 질환 교육을 통해 질환 인지도향상 및 관리수준 향상 - 알레르기분야 전문가 강의 및 과학적 근거기반의 자조모임 프로그램 실시

지원내용	아토피·천식홍보	지역사회 주민	· 알레르기 질환 홍보활동을 통해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 – 자료제작 및 배포(리플릿, 포스터, CD 등) –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관심유발(TV·라디오 공익광고, 신문, 옥외매체, 인터넷 등)
신청방법	• 지역 내 보건소에 신청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 1577-9642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경기도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수원, 가평)
  : 환경성 아토피 맞춤형 관리, 아토피캠프, 체험 놀이터, 아토피 예방관리교육, 아토피 질환자 전문가 상담 등
-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시군)
  –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
  : 어린이·노인·장애인이용시설(보육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 한의약 기술을 사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한의약육성법」
지원대상	• 각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 건강위험요인 또는 건강관련 문제가 있는 지역주민
지원내용	• 프로그램

구분	대상	주제	수행방법
영유아	만 5세 이하	육아, 양생, 아토피 천식 등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상담,향기치료 등), 기타(한방마사지 등) – 운영장소: 보건소, 어린이집 등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월경통, 정신건강, 이동/방문진료, 아토피·천식 등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뜸, 한약제제, 상담, 향기치료 등) 등 – 운영장소: 보건소,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임산부	임산부	정신건강, 육아, 임산부양생, 아토피·천식 등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상담, 향기치료, 의료비지원 등) 등 – 운영장소: 보건소, 복지관, 산후조리원 등
성인	20~64세	중풍, 골관절염, 대사성질환, 갱년기, 정신건강, 금연 등	–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침, 뜸, 부항, 한약제제 등), 기타(요가, 타이치) 등 – 운영장소: 보건소, 복지관, 공원, 건강생활 지원센터 등

<table>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d>노인</td><td>65세 이상</td><td>중풍, 골관절염,
대사성질환,
정신건강, 치매 등</td><td>–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침, 뜸, 부항, 한약제제 등), 기타(요가, 타이치) 등
– 운영장소: 보건소, 복지관, 경로당, 공원, 건강
생활지원센터 등</td></tr>
<tr><td>취약
계층</td><td>생애주기별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
주민</td><td>중풍, 골관절염,
대사성질환,
정신건강, 치매,
이동/방문진료 등</td><td>– 사상체질, 기공체조, 한방양생, 한의과진료
(침, 뜸, 부항, 한약제제, 의료비지원 등),
기타(물리치료, 재활요법, 요가) 등
– 운영장소: 보건소, 복지관, 경로당, 지역한의원 등</td></tr>
<tr><td>장애인</td><td>재가장애인</td><td>일반 건강관리,
근골격계, 소화기계,
정신건강관리</td><td>– 한의검진 및 상담, 한의약중재(침, 부항요법,
지압/마사지, 보험한양제제), 식생활/운동지도,
욕창/낙상방지 등
– 운영장소: 가정,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 등</td></tr>
</table>
</td></tr>
<tr><td>신청방법</td><td>• 지역 내 보건소에 문의 및 신청</td></tr>
<tr><td>비 고</td><td>• 관할부처: 보건복지부</td></tr>
</table>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스스로 영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table>
<tr><td>추진근거</td><td>•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td></tr>
<tr><td>지원대상</td><td>• 장애인 및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td></tr>
<tr><td>지원내용</td><td>
• 수행주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중앙: 국립재활원
– 지역: (서울)보라매병원, 서울재활병원 (대전)충남대학교병원, (강원)강원도재활병원, (경남)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북)원광대학교병원
• 사업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지역사회 기반의
의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td><td>대상자, 보건·의료·복지 자원 DB구축으로 보건의료정보플랫폼 운영
의료기관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CBR사업 지원
관할 지도의 지역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지원</td></tr>
<tr><td>보건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보장</td><td>의료기관 이용시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편의제공, 방문진료 등
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연계 및 응급의료 연계서비스 지원(권고)</td></tr>
<tr><td>자기결정권 보장</td><td>장애인의 자조모임 운영 밍 장애인 건강리더와 자원봉사자 양성</td></tr>
</table>
</td></tr>
</table>

지원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 –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국립재활원 ☎02-901-1700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구분	대상	내용
임신 여성장애인 등록관리	임신한 여성장애인으로 임신진단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보건소 모성보건실, 지역 내 산부인과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임신 여성장애인을 등록하여 건강관리 수행
여성건강 클리닉	임신한 여성장애인으로 임신 진단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임신 여성장애인 산전·산후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산모교실	지역 내 산전·산후 임산부 장애인과 가족	장애유형별 산전관리 및 육아 프로그램 운영
참여형 동아리 사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의뢰된 지역 내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건강증진, 자조모임 운영, 각종 자율 활동 등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이 거주지역에서 1인의 의사에게 지속적·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관리율 제고를 통해 장애인 건강지표를 개선하고자 함

추진근거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일반건강관리: 모든 중증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관리 – 만성질환 관리, 일상적 질환 예방 및 관리 –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 연계 및 조정 – 서비스제공 주치의(의사):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의원) • 주장애관리: 중증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의 전문적 장애 관리 – 장애상태 개선 및 유지, 합병증 예방 등 –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치료 – 서비스 제공 주치의(의사):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해당 전문과목 의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 • 통합관리 – 일반 건강 관리, 주장애관리 함께 제공 – 서비스 제공 주치의(의사): 주장애관리 및 일반건강관리 건강 주치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해당 전문과목 의사(의원)

지원내용	※ 해당전문과목 – 지체장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안과 **건강 주치의 서비스 정보 제공** – 제공내용: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건강 주치의 정보(성명, 전문과목, 진료시간, 서비스유형),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제공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s.or.kr/): 건강정보-병(의)원 정보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진료비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접등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 및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추진근거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원대상	•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지원내용	•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운영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 요청 범위에 따라 건강검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 제공 –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안내문 비치 –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 설치 운영 –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인력(장애친화 건강검진 매니저) 배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탈의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비 구비 •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8개 기관) –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대전광역시) 대청병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도)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신청방법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방문하여 검진(건강검진표, 장애인등록증 지참)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권역재활병원

국립재활원과 현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 등과의 연계로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의 공공의료재활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지원대상	•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지원내용	• 진료 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척수손상재활, 뇌손상재활,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기타재활(암재활, 절단장애 재활, 장애인 성재활 등) • 기능분야별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운동 및 기능 재활치료: 열전기치료, 수치료 –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치료, 연하훈련 – 언어치료 – 임상심리치료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일반 진료서비스(선택사항): 장애인 치과, 장애여성 지원 산부인과, 저시력 진료 안과, 청각재활과, 한방진료과, 내과 • 공공재활 프로그램 제공 • 권역재활병원 – (경인)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충청) 재천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 제주권역재활병원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문화 · 여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 제공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선정기준	• 참여자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 차상위 계층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양부모 참여가정(부모 + 자녀) –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 신규 참여 가정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기타요건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구분 / 당일 / 1박 2일 / 2박 3일 침여자 1인당 캠프(여행) 비용 / 75,000원 / 150,000원 / 240,000원 ※ 1인당 최대 지원금액: 240,000원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프로그램 내용 구분 / 참가대상 / 발달장애인 참여 / 특징 휴식지원 – 힐링캠프 – 가족캠프(기본) / 발달장애 가족 / 참여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휴식지원 – 힐링캠프 – 인식개선 캠프(선택) /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 참여 / 부모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휴식지원 – 힐링캠프 – 동료상담 캠프(선택) / 발달장애인 및 부모 / 선택 / 휴식 제공 프로그램/ 동료상담 프로그램 휴식지원 – 테마여행(선택) / 발달장애 가족 / 참여 / 수행기관 여행 계획 및 모집/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 모든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함께 제공(부모교육은 필요시) ※ 휴식지원은 2개 프로그램 이상 실시: 기본(가족캠프)외 선택 프로그램(인식개선, 동료상담, 테마여행) 1개 이상 • 총 지원인원: 발달장애인 가족(발달장애인 포함), 돌보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캠프(여행)도우미(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등 ※ 지자체 판단 하에 발달장애인 당사자 1인당 1~2명의 돌보미가 필요한 상황 시 추가배정 가능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시·청각장애인용 TV)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방송(시각)수신기 및 자막방송 (청각)수신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을 보장

추진근거	• 「방송법」 제33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
지원대상	• 시·청각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지원)
지원내용	• 방송의 자막과 화면해설을 지원하는 TV지원(전용리모콘, 자막조정, 음성안내 기능 등)
신청방법	•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전용 홈페이지 http://tv.kcmf.or.kr 에서 신청 ※ 신청 공지(5~6월), 신청기간 및 대상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자에게 지원하는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등이 이용 가능한 카드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6세(2013.12.31. 이전 출생자)부터 발급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1카드, 1인당 연간 8만원 지원 • 카드 발급 및 이용기간 – 발급기간: 2019.2.1. ~ 2019.11.30. – 카드사용기간: 카드 발급일 ~ 2019.12.31. • 이용범위: 문화예술, 여행, 체육(스포츠) 분야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구분	문화누리카드 가맹 업종
문화	영화관, 서점, 공연장, 미술관, 전시장, 음반판매점, 사진관
체육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권 및 응원용품 운동관련 용품: 수영장, 탁구장, 빙상장, 운동관련 용품
여행	숙박, 철도/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렌터카/항공, 놀이공원(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스키장, 온천

지원내용	• 기타사항 – 지원금액 소진 이후에도 카드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할 시에는 개인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 가능 – 2015년~2018년에 발급 받았던 카드가 있는 경우 동일 카드에 2019년 지원금 재충전 사용 가능 – 같은 세대 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였을 경우 하나의 카드로 합산 사용 가능 ※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 이월 또는 현금 교환 불가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문화누리(www.mnuri.kr) • 문의: 문화누리카드 ☎1544-3412
비 고	• 관할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참고하기

나눔티켓

- 저소득층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문화감수성,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받아 회원들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좋은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제도
- 대상: 문화누리카드소지자,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 이용방법
  - 나눔티켓은 미판매 예정 좌석을 기부받아 50~80% 할인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전시 관람을 지원
  -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가 진행되며, 관람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좌석지정
  - 본인 회원 외 티켓양도가 불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 차액 부과

주 거

장애인 주택특별(우선) 공급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전 지원

추진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9조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중증 장애인 주택 개조

경기도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 등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지원대상	• 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2019년 상반기 지원 기준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비 고	• 사업수행기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지원대상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순위	입주자격
우선 공급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⑪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보증금 + 임대료) • 임대기간: 50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신청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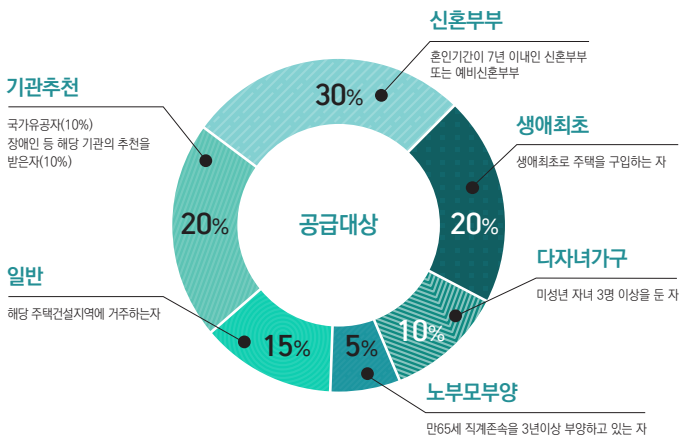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 자산가액: 28,000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2,499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합산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 제외
지원내용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 임대의무기간: 3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신청방법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 10년)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원대상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100% 기준 적용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토지·건물: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99만원 이하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 (보증금 + 임대료)/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실시 – 공급대상: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5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10년) 감정가격
신청방법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참고하기

무주택자란?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 해당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인 경우, 해당기관에서 공지한 신청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주자 모집공고 상 기관특별공급 기간에 신청해야 함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임대주택-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추진근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계층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총자산 7,5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취업 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 총자산 23,2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사회 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이거나 예술인 또는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부부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예비부부	· 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고령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지원내용	• 전용면적 45㎡이하 주택을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보증금 + 임대료)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신청방법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장기전세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table>
<tr><td>추진근거</td><td>• 「공공주택특별법」</td></tr>
<tr><td>지원대상</td><td>•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격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비닐간이건물 거주자 등</td></tr>
<tr><td>선정기준</td><td>• 소득기준
<table>
<tr><th>구분</th><th>대상주택</th></tr>
<tr><td>전용면적
60m² 이하</td><td>–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50m² 미만)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 (50~60m² 이하)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td></tr>
<tr><td>전용면적
60m²~85m² 이하</td><td>–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td></tr>
</table>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99만원 이하</td></tr>
<tr><td>지원내용</td><td>•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 임대기간: 20년</td></tr>
<tr><td>신청방법</td><td>• 사업주체의 홈페이지(LH)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신청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td></tr>
<tr><td>비 고</td><td>• 관할부처: 국토교통부</td></tr>
</table>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매입임대)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지원대상	구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주택·다중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 제공 •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20년 거주)
신청방법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LH, 마이홈포털)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기존주택전세임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추진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054호)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77호)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85호)

지원대상

구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 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선정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 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지원내용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 60㎡)] 이하
- 전세금지원 한도액
  - 수도권 8천5백만원, 광역시 6천5백만원, 기타 지역 5천5백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엣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신청방법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LH, 마이홈포털) 등을 확인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문의: 시·군·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신혼부부전세임대

도심 저소득계층 (예비)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추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원대상	구분 / 내용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2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3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기 타: 당해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예비신혼부부 ※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외
지원내용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1인가구 60m²)] 이하 • 전세금지원 한도액 – 수도권 8천5백만원, 광역시 6천5백만원, 기타 지역 5천5백만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하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대상 세제 감면 지원

추진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부부(재혼 포함, 만 2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부부합산 소득 외벌이 5천만원, 맞벌이 7천만원 이하 – 주책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지원내용	• 주택 취득세 50% 감면(2019.1.1.~2019.12.31.)
신청방법	•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시·군·구청 세무과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안산시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시흥시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가구
※ 혼인신고 기준년도: 2012년~2019년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전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
· 가구유형별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유(有)자녀 가구: 자녀 1인당 0.5% 가산
– 장애인 포함 가구, 다문화가구: 0.5% 가산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과천시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과천시 거주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자
※ 혼인신고일 2014년~2019년 신혼부부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1년간 최대 100만원 한도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055호)
지원대상	• 무주택가구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시·군·구에서 지정, 읍·면·동에서 관리)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친인척 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세대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가 있는 세대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관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퇴소자

지원내용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1인가구 60m²)]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최고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조건 – 해당 아동·청소년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에는 이자(연1~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이자 지원 ※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 임대료 50% 감면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자활기반 지원 및 주거상향 이동 도모

추진근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054호)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컨테이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한 범죄피해자

선정기준

- 소득 등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에 한함)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소득·토지·자동차보유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토지	자동차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2,499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지역: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 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주거지원 유형

유형	사업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이 선정)를 통하여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60㎡ 이하 규모)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만 해당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

구분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임대보증금	50만원(고정)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월임대료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 등 주거 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9,000만원 지원
※ 최초 계약 2년(연장 1회 가능)
· 도배, 장판비 지원: 100만원 이내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 생계자금(과도한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발생시)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파주시

파주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지원대상 · 파주 관내 거주자 및 파주시 소재 직장인(0~7세 미취학 아동 가정)

지원내용 · 관내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문 의 · 파주시 주택과 ☎031-940-4774

긴급주거지원

경제위기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지원대상자)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8,800	11,800	10,100

• 금융재산기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가구가성원수 / 지역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대도시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중소도시	290,300원	422,900원	557,400원
농어촌	183,400원	243,200원	320,300원

※ 임시거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급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사용비용을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지급

• 지원기간: 원칙 1개월, 연장지원 2개월 범위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사항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지원 가능, 재계약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신청방법	• 위기상황 발생시 본인,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주거환경개선자금

노후한 불량주택을 개량할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지원대상	•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구성한 조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건축 및 개량하고자 하는 자 • 시장, 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외 지역의 노후한 불량주택 소유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불량 주택 개선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아 주택을 개축, 증축, 대수선하고자 하는 개인
선정기준	• 대상주택 – 단독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단독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 아파트·연립주택(임대주택 포함):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75㎡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및 대출이율

구분	대출한도	대출이율
단독	호당 6,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연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다가구는 1년 일시상환)
다가구	1억8,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다세대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한도의 1/2)	
아파트·연립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라 다름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중 우리은행에서 신청 •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부천시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제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파손된 도배·장판 등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안산시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가구 중 주택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장애인 가구
· 저소득층가구: 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지원기준 내 집수리
※ 장애인가구 200만원 내, 저소득층 가구 150만원 내
문 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031-481-3982

이천시

◈ 희망하우징 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긴급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령자(65세 이상) 등 주거약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해당 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 리모델링 지원
· 화장실, 부엌, 거실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보수, 싱크대 높낮이 조절, 경사로, 조명설치 등
문 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하남시

◈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일정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개보수 등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등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구리시

◈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애인 중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 가구당 150만원 이내 지원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지원내용	•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가구당 최대 288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건출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비 고	• 관할부처: 환경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및 시설 개선

추진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제8조
지원대상	•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및 50년 임대주택)
지원내용	•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 (저층 승강기공사, 외부 창호, 발코니 새시,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 지원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선정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고효율 조명기기(LED)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여 전기요금을 줄이고 전력수요 절감에 기여

추진근거	• 「전기사업법」 제47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4조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용	• 백열등, 형광등 등의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성 높은 LED 조명기기로 무료 교체
신청방법	•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337
비 고	•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 지원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본일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선정기준	• 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하절기	5,000원	8,000원	11,500원
동절기	86,000원	120,000원	145,000원
계	91,000원	128,000원	156,5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참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비 고	•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사업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개선, 환경성질환자(어린이) 진료지원 서비스를 제공

추진근거	• 「환경보건법」 제20조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
지원내용	• 생활환경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실내주거개선(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을 지원 ※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유발인자의 농도를 측정·점검하여, 실내 공기 오염이 심한 가구에 대하여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하고, 환경성질환 어린이의 경우 병원 무료진료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선정가구 환경부에 추천 • 문의: 환경부 ☎044-201-67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306
비 고	• 관할부처: 환경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 에너지 공급기반 마련

추진근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등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수급가구(자가가구)는 제외
지원내용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곰팡이제거 및 공기정화: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하여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내용	• 냉방기기 보급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추천 • 거주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한국에너지 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비 고	• 관할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추진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5억인 이하주택 대상 –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m^2 이하, 3억 이하 주택
선정기준	•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 대출이율: 만기별, 소득별 연 2.25~3.15% – 한부모가구: 0.5%p 우대 –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우대 –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및 12회차 이상 납입자 0.1%p, 3년 및 36회차 이상 납입자 0.2%p 우대 • 상환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식)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기업, 농협중앙회, 신한, 우리은행)에 방문신청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보금자리론

무주택자 등이 소형주택 구입 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

추진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지원대상

- 보금자리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혼가구의 경우 맞벌이면 최대 8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억원 이하
  - 신용: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 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특수기록정보(더나은 보금자리론 한정)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더나은 보금자리론: 아래의 기존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상환용도로 신청 가능
  - 제2금융권이 취급 후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
  - 기존 대출이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17.12.31일 이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일 것
  - 신청일 현재 기존 대출이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4개월 이내일 것

지원내용

- 상품설명

구분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사전예약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사람이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60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 · 사전예약 u-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		
유의사항	· t-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경우 모기지 신용보증(MCG)을 이용불가 ·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 - 대출신청 후~대출승인: 최장 40일 - 대출승인 후~대출실행: 최장 30일		

- 이용조건

구분	내용
대상주택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 ※ 단,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평가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제외
대출한도	· 최대 3억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 더나은 보금자리론: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약정(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 최대 LTV 70%(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최대 80%) ·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대출금리	·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신혼가구 0.2% 우대가능, 사회적 배려층 0.4% 우대가능 ※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 기존주택 보유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 가산금리 부과 – 추가주택 보유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 가산금리 부과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중 한가지를 선택 · 거치기간 없음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괄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2015.2.27.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괄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일시상환(최대 50%) 가능
	취급금융기관	· u-보금자리론 : 국민, 기업, KEB하나, 농협, 수협, 신한, 우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 삼성생명, 저축은행중앙회, 국제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THE·K, DB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아주저축은행, OSB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한국투자 저축은행 · 아낌e보금자리론: 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부산은행 · t-보금자리론: 스텐다드차타드, 대구, 제주은행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어플신청, 은행방문 신청 가능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비 고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추진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²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m²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table>
<tr><td>지원내용</td><td>
• 대출금리
<table>
<tr><th rowspan="2">연소득
(부부합산)</th><th colspan="3">임차보증금</th></tr>
<tr><th>5천만원 이하</th><th>5천만 초과~1억원 이하</th><th>1억원 초과</th></tr>
<tr><td>~2천만원 이하</td><td>연 2.3%</td><td>연 2.4%</td><td>연 2.5%</td></tr>
<tr><td>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td><td>연 2.5%</td><td>연 2.6%</td><td>연 2.7%</td></tr>
<tr><td>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td><td>연 2.7%</td><td>연 2.8%</td><td>연 2.9%</td></tr>
</table>
• 대출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대출한도는 신청인이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일반가구 최대 1억2천만원
· 그 외 지역: 일반가구 최대 8천만원
• 대출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기한연장조건: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
• 대출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td></tr>
<tr><td>신청방법</td><td>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참고: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td></tr>
<tr><td>비 고</td><td>• 관할부처: 국토교통부</td></tr>
</table>

버팀목대출보증

제도권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지원

추진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지원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자 •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 지원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 지원 ※ 단,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위탁금융기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신청방법	• 위탁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비 고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추진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지원대상	•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 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연 2.5%[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m^2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 •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2%(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신청방법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참고: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비 고	• 관할부처: 국토교통부

월세자금보증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추진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지원대상	• 일반월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청년월세: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지원내용	구분 / 일반월세 / 청년월세 보증대상자금 /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보증한도 / · 최대 864만원 / · 최대 1200만원 보증기한 / · 2년(최장 10년) / · 13년 이내 – 거치기간: 최대 9년(연단위) –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고정)

지원내용	보증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총 월세대상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공부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대출실행	· 2년간 매월 분할대출 실행	· 월세금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 (신청금액 기준)로 매월 분할대출 실행
	보증료	· 연 0.05%	· 연 0.05%
	유의사항	· 전(월)세계약서상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료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신용보증을 받지 못함 ·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에 문의 필요	· 월세계약서상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허위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료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신용보증을 받지 못함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증한도조회 이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문의: 우리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비 고	• 관할부처: 금융위원회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 담보로 지원

추진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지원내용	• 전세자금보증 대상 및 신청시기

구분	대상	신청시기
일반전세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집단전세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집단취급승인 : 입주예정일까지(금융기관 신청) 건별승인 : 입주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임차인 신청)
	인터넷 전세		· 대한민국 국민 중 인터넷 및 모바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이용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례조치	청년전세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제한없음
		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제한없음
		징검다리 전세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 중이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제한없음
		정책서민 금융 이용자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제한없음
		목돈 안드는 전세 III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내용	특례조치	주택도시기금 대출 대환자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구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를 은행재원 전세대출로 갈아 타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임대주택 입주자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하는 주택 또는 준주택에 입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재개발 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로서 다음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임차권 등기 세입자	·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 후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 후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임차권등기 완료 후 2개월 이후
		다자녀 가구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주택연금	·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공사기간 동안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 계약을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이주기간 내

<table>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 colspan="3">
<table>
<tr><td>특례조치</td><td>청년 전용</td><td>·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td><td>–</td></tr>
</table>
• 전세자금 보증한도 및 취급 금융기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보증한도</th><th>취급 금융기관</th></tr>
<tr><td colspan="2">일반전세</td><td>최대 2억원</td><td>– 은행지원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씨티, KEB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은행
– 기금재원(버팀목대출)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td></tr>
<tr><td colspan="2">집단전세</td><td>최대 2억원</td><td>–</td></tr>
<tr><td colspan="2">인터넷 전세대출</td><td>최대 2억원</td><td>–</td></tr>
<tr><td rowspan="14">특례조치</td><td>청년전세</td><td>최대 7천만원</td><td>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경남, 광주, 전북, 카카오은행</td></tr>
<tr><td>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td><td>최대 30백만원
(단,채권보전조치시45백만원)</td><td>–</td></tr>
<tr><td>신용회복 지원자 전세</td><td>최대 30백만원
(단,채권보전조치시45백만원)</td><td>–</td></tr>
<tr><td>징검다리 전세</td><td>최대 1억5천만원
(보증대상자금: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자금)</td><td>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수협, 광주, 경남, 대구은행</td></tr>
<tr><td>정책서민 금융 이용자</td><td>최대 40백만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50백만원)</td><td>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제주, KEB하나</td></tr>
<tr><td>목돈안드는 전세 III</td><td>최대 2억4천만원</td><td>국민, 신한, 우리, 농협, KEB하나, 기업은행</td></tr>
<tr><td>주택도시 기금대출 대환자</td><td>임차보증금의 80%와 주택도시 기금대출 잔액의 90% 중 적은 금액</td><td>국민, 우리, 농협, 기업, KEB하나</td></tr>
<tr><td>임대주택 입주자</td><td>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90%)</td><td>–</td></tr>
<tr><td>재개발 재건축단지 이주세입자</td><td>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td><td>–</td></tr>
<tr><td>임차권 등기 세입자</td><td>최대 2억원</td><td>–</td></tr>
<tr><td>다자녀가구</td><td>최대 2억원</td><td>–</td></tr>
<tr><td>주택연금</td><td>최대 3억원</td><td>–</td></tr>
<tr><td>청년 전용</td><td>최대 7천만원</td><td>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경남, 광주, 전북은행, 카카오은행</td></tr>
</table>
※ 취급 금융기관이 기입되지 않은 전세의 경우, 1금융권의 모든 은행에서 취급. 하지만 기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방문 전 방문예정 은행에 확인 필요
</td></tr>
<tr><td>신청방법</td><td colspan="3">•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증한도조회 이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전세자금에 따라 취급하는 은행이 다르므로 해당 은행에 연락 후 방문 신청 필요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td></tr>
<tr><td>비 고</td><td colspan="3">• 관할부처: 금융위원회</td></tr>
</table>

일상생활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경기도

경기도 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가 친절하고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

추진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및 보호자 ※ 각 시군별 이용 대상자의 장애등급, 연령, 임산부 지원 등이 상이함
지원내용	• 시군별 이용요금 및 운행일, 운영시간, 운행지역, 예약시간에 차이가 존재함 – 인터넷예약, 전화예약, 스마트폰 앱 예약 가능
신청방법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콜센터 ☎1666-0420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접수 http://ggsts.gg.go.kr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경기도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81조
지원대상	• 센터 관할 지역 등록 장애인 ※ 도내 각 시군에 따라 이용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제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민원업무, 직장 출퇴근, 외출, 장보기 등 • 운행시간 및 이용료 지회마다 상이함
신청방법	• 경기도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577-6668 또는 시·군별 생활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비 고	• 운영주체: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군지부 31개소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오산시

◈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오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3급 중복)
※ 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내용 · 오산시 택시이용시 월 이용요금 60% 지원
※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

문 의 · NH농협은행 오산시청지점

경기여행누림(누림버스, 누림카, 溫동네버스)

경기도

도내 장애인 여행의 이동·편의제공을 통한 「문턱 없는 경기관광」 실현 목적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 「경기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2조

지원대상

차량	이용대상
누림카	· 도내 등록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누림버스	·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溫동네버스	· 전국 등록 장애인 및 동반자,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선정절차

- 우선순위
  - 1순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동반하는 시설(단체)
  - 2순위: 지체·뇌병변장애인 및 지체·뇌병변장애인과 동반한 시설(단체)
  - 3순위: 1, 2순위를 제외한 선착순 접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순위 인정
(장애인보장구 수동휠체어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

지원내용

- 도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단체)에 누림카, 누림버스 대여
- 이용방법

구분	최소 이용인원	이용기간 및 이용시간	제공내용
누림카	1대당 1명	· 1회 최대 3박 4일/연간 10일 · 상설 운영(주중·주말) · 차량 입·출고는 평일 09:00~18:00 원칙	탁송서비스 선택 가능 자동차보험
누림버스	1대당 15명	· 1회 최대 2박 3일/연간 10일 · 상설 운영(주중·주말) · 1일 08:00~20:00 원칙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자동차보험 등 운행비용 제공
溫동네버스	1대당 4명	· 월 2회, 격주 토요일 09:00~18:00 운행 · 운행구간은 도내 여행지를 중심으로 월별 여행코스선정 및 홈페이지 공지	운전자,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자동차보험 제공

- 이용신청은 여행 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 취소는 여행 시작일 기준으로 3일전까지 하여야 함

신청방법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nurim1@ggwf.or.kr), 팩스(031-601-8724) 신청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www.ggnurim.or.kr
-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644-2599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가족의 기능 향상 도모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선정기준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가 부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 여유아의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 지원 가능 •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구분 / 개별상담지원 /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 1대 1명 / 1대 2~5명 제공시간 / 회당 50분 /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 월 4회 이상 /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해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집단 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 지원기간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 – 서비스 이용 종료시점에서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 연장 시,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경기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경제·문화활동 정보 획득 기회 제공

추진근거	•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가구
지원내용	• 복지 관련 신문 무료 보급(가구당 매월 4,200원 이내)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비 고	• 시·군별 복지신문사 계약 현황

신 문 명	전화번호	계약 시 · 군	비고
한국복지뉴스	031)454-3966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광주, 군포, 김포, 이천, 안성, 오산, 하남, 여주, 과천,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가평, 연천	경기
경기복지신문	032)656-6770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오산,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 고양, 파주,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
e장애인신문	031)759-7663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과천, 양평,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
복지21신문	032)656-8874	용인, 안산, 안양, 평택, 화성, 광명, 김포, 광주, 이천, 오산, 하남, 양평,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
대한사회복지신문	031)511-3030	수원, 성남, 용인,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광주, 이천, 하남, 양평,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가평, 연천	경기
장애인신문	02)502-3352	용인, 광주, 과천, 양평, 양주	전국
시사복지타임즈	031)964-1511	광주, 고양, 의정부, 파주	경기
환경장애인신문	1544-2131	수원, 용인, 김포, 광주, 이천, 오산, 양평,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경기
수원복지신문	031)254-4221	수원	수원
장애인문화복지신문	070-4217-2567	부천, 고양, 남양주, 동두천	부천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부천시

◈ **복지소식지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도비대상)를 제외한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월 4회 장애인복지신문 무료 보급
문 의 · 관할 동 주민센터

시흥시

◈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월 4천원 이내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
문 의 · 시흥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31-310-3027

무료법률구조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 및 도시영세민에 대하여 무료로 민·가사, 형사 사건의 소송대리 진행

추진근거	• 「법률구조법」 제21조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공단 홈페이지 예약, 전화예약, 방문 예약을 통해 예약이 가능 –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50분(점심시간제외) – 인터넷상담: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 • 소송대리

대상자	유·무료여부	비용부담 범위	대상 사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부 무료	이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모든 사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부 무료	–	모든 사건

※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구조타당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법률구조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비 고	• 관할부처: 법무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안산시

◈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지원대상 ·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지원내용 ·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법률사항
※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변호사/수요일: 변리사
문 의 · 예산법무과 ☎031-481-2699

양평군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지원대상 · 양평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금전거래, 상거래, 가사문제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세무, 부동산거래, 건축법 등 전문분야 상담
· 기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법률문제 상담
※ 양평군청 2층 기획예산담당관 법률상담실
문 의 · 양평군청 법무혁신팀 ☎031-770-2071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단,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선정기준	• 제외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위의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지원내용	• 대상자 선정: 신청자의 건강·욕구상태 및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바우처 지원기간: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 서비스 제공시간 – 기존 대상자: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40시간(3개월) • 서비스가격 및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36,000원	월 336,0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15,840원	월 20,160원

지원내용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78,000원	월 366,660원	월 11,34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55,320원	월 22,68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55,000원	월 555,000원	면제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참고하기

가사·간병 방문지원 제공인력
- 참가대상: 만 18세 이상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양성교육: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제공인력 재직자에게 연 8시간 이상의 교육 진행
  - 교육내용: 신체활동지원, 인지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건강지원, 가족관계지원, 일상생활 위험관리, 일상생활 서비스 기록관리, 가사관리 컨설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 수당지급: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 원칙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경기도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결정
선정기준	• 일반(욕구)기준: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적용 – 장애인·노인대상사업: 중위소득 140% 이하 – 노인대상사업: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 가능 • 연령기준: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 서비스 이용 제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table>
<tr><td>선정기준</td><td>–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중복수혜 불가
·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사업 중복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비만)아동 건강 관리사업 중복 불가</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사업: 18개 사업
<table>
<tr><th>구분</th><th>사업명</th></tr>
<tr><td>도 개발(1)</td><td>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td></tr>
<tr><td>시·군 공동개발(15)</td><td>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우리가족융합프로그램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정신건강도탈케어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아동주의집중력향상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수중)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유산소)
유아동신체정서통합서비스
성인(청년)심리지원서비스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한시적 시범사업)</td></tr>
<tr><td>시·군 개발(2)</td><td>보완대체의사소통(AAC)기기활용중재서비스(성남)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성남)</td></tr>
</table>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 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각 사업별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결정: 사업별 최소 10% 이상의 본인부담금 책정 권고
※ 지자체별 본인부담률 상이 적용 가능</td></tr>
<tr><td>신청방법</td><td>•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 참고: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ggss.or.kr</td></tr>
<tr><td>비 고</td><td>• 관할부처: 보건복지부</td></tr>
</table>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자활하고자 하는 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지지하고 빈곤을 예방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고, 자활을 도울 수 있는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구
선정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선정 – 접수된 대상자는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와의 개입 기간을 결정

지원내용	• 대상가구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서비스 전반을 지원 – 공공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발굴한 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민간서비스: 대상가구의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전화·인터넷 등으로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비 고	• 관할부처: 보건복지부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남양주시

◈ **희망케어센터**

지원대상 · 남양주시 거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내용 · 복지상담, 위기가정 등 통합사례, 가족기능 강화 지원, 지역사회 보호 지원
문 의 · 희망케어센터 ☎1577-4343

홈방범 서비스 지원 경기도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 여성세대원(여아 포함)이 있는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청소년한부모 모자가족, 청소년 한부모 부자가족,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설치비만 지원, 이용료는 자부담)
지원내용	• 지원내용: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 설치, 침입 시 경보음 발생, 보안요원 출동서비스 • 지원비용 – 최초 설치비(100,000원) 지원 – 월 이용료 9,900원 2년간 지원 – 출동요금(회당 11,000원 연 6회 이내) 지원 – 해지 위약금(남은 개월 수 × 3,300원) 지원 ※ 주민등록상 1인 여성세대주 또는 여성만 있는 가구는 설치비만 지원(이용료는 자부담)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도움

<table>
<tr><td>추진근거</td><td>•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td></tr>
<tr><td>지원대상</td><td>• 성폭력 피해자</td></tr>
<tr><td>지원내용</td><td>•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
– 성폭력상담소(전국 170개소)에서 상담 지원
– 보호시설(전국 31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전국 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
–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 지원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table>
<tr><th>사업</th><th>내용</th></tr>
<tr><td>의료 지원</td><td>– 성폭력 피해의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성병 감염 여부 검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
– 병원 간병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병비 지원
– 사업 기관: 전담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td></tr>
<tr><td>법률 지원</td><td>–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 형사사건의 대리 및 변호를 무료로 제공
– 사업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연계)</td></tr>
<tr><td>돌봄 비용 지원</td><td>–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사업수행기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지방자치단체</td></tr>
<tr><td>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td><td>– 성폭력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관: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td></tr>
<tr><td>주거지원</td><td>–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 물량으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가에 임대</td></tr>
<tr><td>보호 지원</td><td>– 일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친족성폭력피해미성년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 사업기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계)</td></tr>
</table></td></tr>
<tr><td>신청방법</td><td>•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신청
•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td></tr>
<tr><td>비 고</td><td>• 관할부처: 여성가족부</td></tr>
</table>

장애인 365쉼터 운영

경기도

유휴공간이 있는 거주시설 및 단기거주시설을 365쉼터로 지정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81조

지원대상

- 재가 중증장애인
  - 긴급입소: 재가 중증장애인 중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사유로 긴급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증빙자료 필요)
  - 일반입소: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입반입소

지원내용

- 정원 및 입소대상: 일반입소 2명, 긴급입소 2명
  ※ 일반입소 정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긴급입소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입소 가능
  ※ 긴급입소의 경우 우선 입소
- 운영: 주7일, 24시간 운영
- 입소기간

유형	내용		
병원입원	검사 및 입원 증빙가능 서류에 기재된 기간		
경조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입원 및 경조사 장소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에서 최대 2일까지 추가 입소 가능
※ 추가입소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30일 이상을 넘지 못함

- 장애인 365쉼터 현황

권역	시설명	시설주소	연락처
서남부권역	가온누리 단기보호센터	군포시 군포로 444 서일빌딩 4층	031-398-0124
동남부권역	엘리엘동산 단기보호센터	이천시 마장면 이장로 256	031-8011-2114
동북부권역	신망애재활원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972번길 17	031-594-6644
서북부권역	행복한 복지원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397번길 21 나동 3층	031-877-3334

신청방법	• 장애인 365쉼터에 이용 신청 • 문의: 장애인 365쉼터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성남시

◈ 장애인 응급 365쉼터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가 성남시인 자로, 보호자가 있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2급, 3급 중복)자녀

지원내용 · 긴급입소: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사유로 입소가 필요한 경우/연간 최대 30일
· 일반입소: 보호자의 여행 등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연간 최대 15일

문 의 · 소망재활원 ☎031-741-3001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www.gnurim.or.kr

Ⅲ

부 록

PART 01

복지용어 이해하기

01 복지용어 이해하기

복지용어

용어	개념 설명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총 15개) – 신체적 장애(12개):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 정신적 장애(3개):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
장애구분	•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급~3급 해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4급~6급 해당) • 장애정도 미해당(등급제 폐지 전 등급외 해당)
보행상 장애인	•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 – 다리(팔)나 척추부위의 장애, 시각 및 평형기능 장애로 인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정신 및 인지행동장애로 인해 도로교통 이용시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 내부기관 장애로 인해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 수급자격 및 급여량 결정을 위해,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조사' ※ 활동지원급여, 주간활동,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시 적용 ※ 수행기관: 국민연금공단
최저보장수준	•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 '선정기준'과 동일한 의미이나, 문맥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용어를 달리 사용함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포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
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총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용어	개념 설명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월소득과 합산한 금액 •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활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 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 환산율: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월 평균 가구소득	•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지난 1년간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특별시, 광역시나 동에 거주하면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전년도 월평균 소득 금액 (가구주, 가구원 소득 모두 포함)
복지급여	• 법령에 의해 소득·재산 기준 또는 연령 등 일정기준에 부합되는 개인 또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 및 현물
맞춤형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4.12.30.)의 별칭 • 맞춤형 급여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차등하는 현 제도 운영방식
보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위
보장단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본단위 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기본 단위(개인 또는 가구)
보장기관	• 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자)바우처	• 이용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 •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지불, 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 수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사람

용어	개념 설명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한부모 가족	• 한부모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청소년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조손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인정액(다만, 일반재산 중 토지 및 실거주용 주택 포함하지 않음)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자활참여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참여대상 – 의무참여: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치료 등)를 제공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함 –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특수교육 대상자	•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총 11개 범주)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

PART 02

장 애 유 형

02 장애유형

장애분류 및 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 — 일생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PART 03

장애등록 · 심사

03 장애등록·심사

01. 장애등록 · 심사

장애등록심사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 시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

※ 장애등록심사 수행기관: 국민연금공단

신청대상	• 장애인등록 신청인 전체 • 장애인수당 지급 신청 장애인 ※ 장애수당 신청 시, 장애 정도의 심사대상이 됨 •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록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
진행절차	
추가 심사사항 (신설)	• 보행상 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3장 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제2조 1호 별표1 의학적 기준 해당 여부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 신청권자: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자, 법정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정도 판정기준	• 중복장애의 합산 – 두 가지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합산 및 최종 장애정도를 결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해 주장애와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중복장애 합산판정하며, 그 외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유효장애로 인정하되 장애정도 합산판정은 하지 않음 – 중복 장애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 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보행상 장애 판정 – 도로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지원을 목적으로 장애 판정 –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봄 ※ 장애정도 판정기준 고시 제4장

참고하기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시각장애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 장애		△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장애등록 신청유형 구분

신규	• 장애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장애정도 미해당,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를 통보 받은 후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재판정 (예정자)	• 재진단 기한일 이내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정 (경과자)	• 재판정 시기가 경과한 경우 ※ 예) 재진단 기한일 '18.12.15., 재판정 신청일 '19.1.5.
직권재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 심사사유가 기타(감사 등, 허위·부정 등록 확인)인 경우
조정	• 등록장애인이 동일 장애유형의 장애정도를 조정신청 하는 경우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지체장애가 동일부위(같은 측의 팔·다리)에 있는 경우 그 유형과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조정
예) 우측 다리에 지체관절장애 등록자가 같은 다리에 지체기능장애를 신청한 경우

※ 장애원인이 뇌병변(뇌성마비, 뇌출혈 등)으로 인해 지체장애로 등록된 자가
① 장애정도의 상향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조정
②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로 신청·심사하는 경우: 서비스재판정
(2000.1.부터 뇌병변장애 유형 신설)

장애심사 사유 구분

신규 및 재판정	• 신규,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심사
서비스재판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의 신청을 위한 심사
외국인 및 재외동포	•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난민인정자의 장애등록 관련 심사
기타	• 감사 등 : 감사원 감사, 부정수급 신고, 시각장애인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과자 재판정, 장기이식 재진단 등에 의거 관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 허위부정등록확인 :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부정 장애등록 사건 등 관련자에 대해 허위·부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장애유형별 진단·재판정 시기

유형	장애진단시기	재판정시기
지체장애	•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등 고착이 명백한 경우 예외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 변형장애: 2년 후 재판정 ※ 왜소증 (만 18~20세 미만 진단받은 남성, 만 16~18세 미만 진단받은 여성), 연골무형성증의 경우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 파킨슨병은 1년 이상 치료한 후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 받은 경우 만 6~12세 미만 재판정, 만 1~12세 미만 최초 판정 후 장애상태 변화 예상시 만 12~18세 재판정
시각장애	•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 안구적출 등의 경우 예외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 각막이식술 1년 후 ※ 각막이식 받지 못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 백내장 수술 불가 시 2년마다 재판정
청각장애	•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 청력기관 결손의 경우 예외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 평형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언어장애	•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 후두전적출술 등의 경우 예외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 받은 경우, 만 6~12세 미만 재판정 • 만 6~12세 미만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 받은 경우, 만 12~18세 미만 재판정
안면장애	•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 3개월 이상 • 신장을 이식받았을 시	• 2년마다 재판정(혈액투석, 복막투석)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심장장애	• 1년 이상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시 • 심장을 이식받았을 시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간장애	• 현재 상태 관련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시 • 간을 이식받았을 시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호흡기장애	• 현재 상태 관련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시 • 폐를 이식받았을 시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재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장루·요루 장애	• 복원수술 불가능시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 가능) • 그 외 장루·요루 조성술 1년 후	• 복원수술 불가능 시 재판정 제외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뇌전증장애	• 성인: 2년 이상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시 • 소아·청소년: 최초 진단 이후 1년 내지 2년 이상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시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만 2세 이상 진단) • 선천적 지적장애의 경우 예외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 받은 경우 만 6~12세 미만 재판정 •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판정일의 2년 이후 일정한 시기 정하여 재판정
정신장애	• 1년 이상 치료 후 호전의 기미가 없을 시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기간 정하여 재판정
자폐성장애	• 확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 받은 경우 만 6~12세 미만 재판정 • 만 6~12세 장애 최초·재판정 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시, 만 12~18세 미만 재판정

참고하기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황 확인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 » 장애등록심사 등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02.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등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신청 장애인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 서비스재판정과 직권재판정은 지원 불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기타장애: 1만 5천원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신청방법	• 의료기관 청구: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에 청구 • 수급자 직접청구: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

검사비 지원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직권 등 장애상태 확인에 필요한 검사비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포함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검사비 지원 불가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장애인 당사자가 먼저 지급한 후 추후 진료비 영수증 청구청

장애심사 비용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정도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추가진단비, 진료기록 직접확보서비스 소요비용(수수료, 접수비, 착불 수신료 등) ※ 심사 종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 존재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청

PART 04

경 기 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01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소개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 '누림센터'는?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반자적 역할 수행**과
경기도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허브기능을 담당합니다.

01. 전략체계

미션	경기도 53만 4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비전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		
핵심가치	변화를 선도하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협력하는 복지
전략목표	신뢰받는 광역기능 수행	원클릭·원스톱 서비스	민·관이 함께 하는 서비스

02. 연혁

- 2004.4. 경기도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 2014.11. 경기복지재단 수탁운영 ※기능전환 업무 수행
- 2015.7. 道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및 역할전환 연구 공청회
- 2016.3. 경기도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개관
- 2017.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 서브명칭 '누림센터' 상표 등록
- 2018.3. 누림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 ※ 2018.10. 완료

03. 시설현황

시설규모 | 지상 3층, 지하 1층 ※ 부대시설: 히딩크 드림필드

연 면 적 | 7,298㎡ / 2,207평

주차구역 | 총 111대(장애인전용 19대)
※ 지상 73개(장애인전용 13대), 지하 38대(장애인전용 6대)

04. 주요사업

2019년 중점 추진사항

-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 자립생활주택 운영(2개소)을 통한 경기도형 자립 전환지원체계 마련
- 무장애여행 「문턱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지원
-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추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컨설팅 지원사업

현장중심의 광역기능 역할 수행

-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제도개선(제안)
- 현장 및 관련 단체를 기반으로 사업 수립·연계
- 道장애인복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활성화
- 중앙, 도, 시·군의 장애인 복지 정책 정보 제공
-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 권역별 단위 사업추진

원스톱 전문상담 및 맞춤형 정보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종합상담 (내방 및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 등)
-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똑똑누림」발간, 복지서비스 및 관련 기관 정보 제공 등)

종사자 전문 교육 및 돌봄인력양성사업

- 수요· 종사자 현장맞춤형 교육
- 신규 공직자 교육(장애인복지 이해 및 체험)
- 돌봄인력 양성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인 양성 등)제공 등)

문화·체육을 통한 사회참여(활동의 장) 기회 확대

-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도 단위 대회 개최 및 찾아가는 공연 진행 등)
- 문화·스포츠 민간자원 연계 (공연 입장권 및 스포츠 경기 관람권 배부 등)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체계 구축사업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경기도 누림하우스」시범운영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성화

공공·민간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사업

-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 지원 (장애인 여행 지원 차량 운영, 관광 약자 시범 투어 장애인 여행)
- 제2차 장애인복지 국제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경기도-베트남 장애인복지 종사자 네트워크 및 국제교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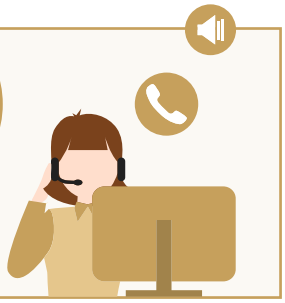
05. 입주기관

사)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운영법인** ·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대표전화** · ☎ 031-244-7015 **호 수** · 205호
사)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운영법인** · 사)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대표전화** · ☎ 031-244-7014 **호 수** · 203, 206호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법인** ·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표전화** · ☎ 031-548-1393 **호 수** · 304호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법인**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대표전화** · ☎ 031-239-6393 **호 수** · 305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법인** · 사)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대표전화** · ☎ 031-268-9844 **호 수** · B03호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법인**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표전화** · ☎ 1644-8595, 1522-0031 **호 수** · 208호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법인** · 사)행복한동행 **대표전화** · ☎ 031-295-7363 **호 수** · 204호

02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안내

1522-0420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가족의
원스톱(One-stop) 민원상담을 제공합니다.



01. 내방상담

장애인복지 분야별 상담

생활·공공 | 건강·의료 | 직업·진로 | 안전·권익 | 공적 서비스 | 등급제 폐지 | 여성 장애인 | 자립지원

전문기관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매월 넷째주 월요일 10:00~15:00
- **한국토지주택공사** — 매월 넷째주 금요일 14:00~18:00
- **심리상담**
- **재무설계상담**

02. 온라인상담

대표번호
☎1522-0420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www.ggnurim.or.kr) 내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http://pf.kakao.com/_xbXlFj/chat ※ 검색용아이디: 누림센터

03. 찾아가는 상담 「일사천리 누림상담」

●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상담

참여기관	상담내용
국민연금공단	· 장애등록 심사 및 판정상담, 연금 관련 상담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 장애인·가족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상담
한림대 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금융감독원	· 맞춤대출, 서민우대금융, 신용·재무관리 등 금융정보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파산면책, 소송 등 법률정보 제공 및 상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취업알선,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안내 등 취업상담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거복지(매입·전세·건설 임대 등) 관련 상담 및 선정지원
경기도의료원(수원·의정부병원)	· 의료복지 정보 제공 및 무료진료 ※한의과, 치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보조기기 지원사업 및 정보제공 안내, 수리, 세척 등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공적서비스 등 상담

04. 상담진행 절차 안내



05. 장애인 복지정보 제공

「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제작

- 중앙·도·시·군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시설안내
-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이드

홈페이지 내 복지서비스 · 시설 정보 등 제공

- 「장애인복지ONE」, 「우리동네복지시설」 메뉴 통해 정보 제공 중 (약 3,000여건)
- 우리동네복지시설

장애인복지 누림상담 사례집 제작

- 상담실 이용 현황 분석, 우수사례 등 상담실 연차 보고서 형태 발간물 제작
- 경기도 장애인 상담 기초 데이터 및 상담실 우수사례 유관기관 공유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www.ggnuri.or.kr

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똑똑누림

2019년도 개정판

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똑똑누림

발간번호 2019-28
발　　행 2019년 8월
발 행 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편　　집 스마트종합민원상담팀
주　　소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전　　화 1522-0420, 031-299-5034
팩　　스 031-299-5099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2019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